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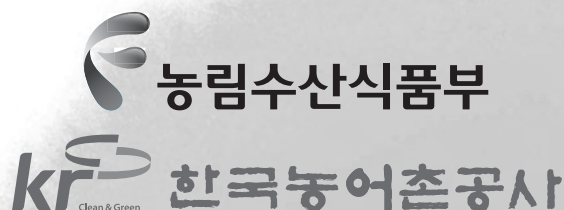
11-1541000-001621-01

<http://rri.ekr.or.kr>

농어촌 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gnation Criteria
for Agricultural Heritage and Management System

2012. 12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촌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윤희

연구원 이 영

공동연구기관 : (사)도시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윤원근

연구원 최식인

연구원 황길식

연구원 유학열

연구원 김진경

연구원 이영옥

요 약 문

1. 연구과제명 : 농어촌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2. 연구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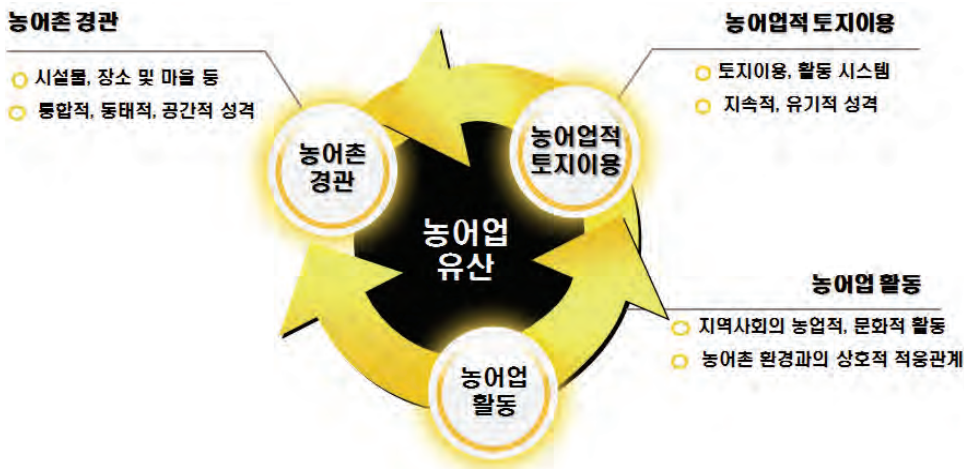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업유산은 지금까지 보존·규제 중심의 문화재와는 차별화하여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고유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정립과 관리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사라져 가는 농어업·농어촌자원을 발굴해 보존·전수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통 농어업 기술이나 농어업문화를 발굴해 농어업·농어촌 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농촌관광과 연계시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방안과 정책 시행 및 지원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또한, 국제적으로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와 연계하여 국내 농어업유산의 세계적인 인지도 향상과 관광 촉진, 해당 유산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농어업유산제도 도입에 따라 보존·전수·활용이 필요한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지정하기 위한 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 마련,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방안과 정책 시행 및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4. 연구의 내용 및 결론

1) 농어업유산의 개념정립과 의의

-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은 ‘농림어업인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농업적, 또는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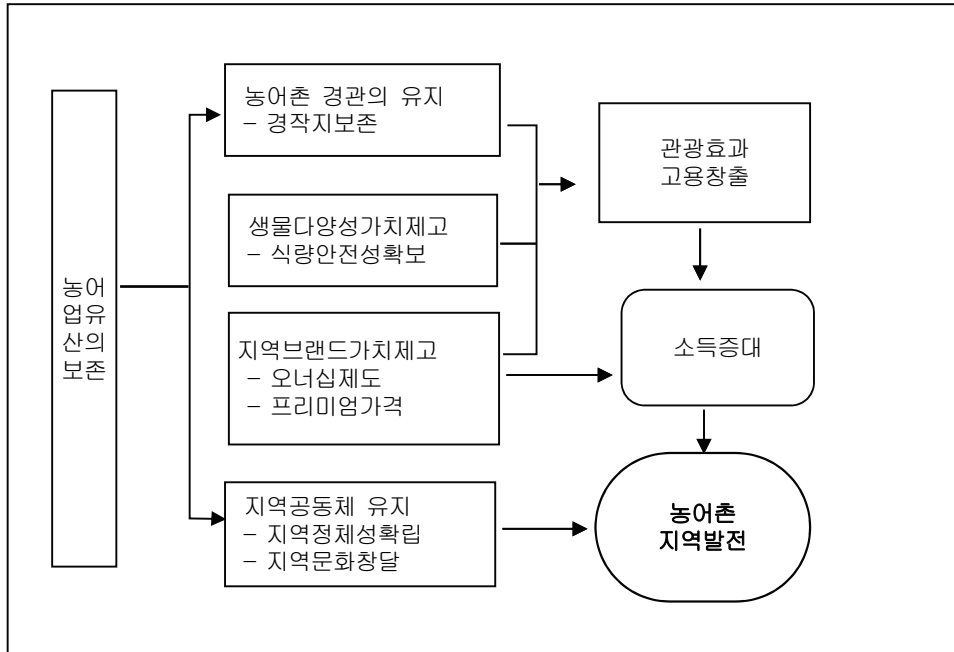
<그림 1> 농어업유산 개념도

- 농어업유산의 개념은 농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토지 및 수자원 이용시스템, 생태시스템, 공동체의 지식 및 기술체계 등)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이에 의해서 형성된 하드웨어로서의 경관이라는 두 가지 개념요소가 복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표) 농어업유산개념의 구성요소

시스템(소프트웨어)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토지, 수자원 관리 체계 - 공동체의 지식 및 기술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 축산활동 및 물이용과 관련된 경관

- 농어업유산의 의의는 첫째, 농어촌경관의 유지기능. 둘째, 생물다양성의 증진 기능. 셋째, 브랜드가치의 제고 기능. 넷째, 고용창출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다섯째, 지역공동체의 유지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농어업유산의 보존과 농어촌지역발전

2) 농어업유산의 실태조사 분석

- 농어업유산과 관련한 주요 부처의 법·제도 및 추진정책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환경부, 농식품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법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는 유산(자원)의 범위 및 관리에 있어 농어업유산과 일부 중복을 보이고 있으나 통합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주요 농어업 유산자원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문화재에 속한 농어업 유산자원은 점적, 평면적 규제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산활용에 한계를 보인다. 둘째, 농어업 유산자원의 대상 및 범위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기화 되어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 셋째, 농어업 유산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농업·환경·생활이 어우러진 새로운 농어업 유산자원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3)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설정

- 한국 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국제적 기준인 FAO의 GIAHS 기준을 한국적인 정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현실적합성과 국내 유산의 파악과 기준정립이라는 정책적 상황에 적합하게 일부 기준을 조정하여 유산의 가치성, 파트너쉽, 효과성의 세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유산의 가치성	현저한 특징	○ 고유의 전통적 농림어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에 있어 독특한 특징을 현저하게 나타낼 것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토지 및 수자원이용 -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 공동체의 농림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역사성	○ 과거로부터 농어촌주민의 농림어업활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 ○ 미래의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 지역별·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농업, 임업, 어업, 축산 등의 분야별 대표성
파트 너쉽	협력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
	주민참여성	○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활동이 있을 것
효과성	지역브랜드 가치향상	○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
	주민의 소득향상	○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생물다양성 향상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친환경농업의 시행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을 곳

- 유산의 가치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세계농업유산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되, 정확성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성을 유산의 가치성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농어업유산

제도의 도입은 세계농업유산제도에 우리나라의 유산을 등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유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적인 관점에서 유산으로서 적합하고 보전·활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중요성은 별도의 대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즉, 세계적인 중요성이라는 세부기준은 대표성이라는 항목에 포함하였다.

- 정확성에 대한 내용은 국내적인 제도의 운용의 측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책의 수행을 위한 파트너쉽과 효과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파트너쉽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해당 지역의 NPO등의 단체의 중요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 효과성을 새로운 기준의 항목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존의 유사관련 제도가 보전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유산은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농촌개발의 방향성인 생물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농촌개발의 방향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4) 유산 지정기준의 적용 및 발굴

- 유산의 발굴과정은 기존의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지정되어 있는 유산의 정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신청 결과, 연구진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71개의 유산이 발굴되었다.
- 농어업유산은 농림어업활동과 이로 인한 경관(시설물, 장소, 마을)을 통합적으로 지정하므로, 농림어업활동만 있거나 또는 경관만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농어업유산 중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한 유산은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농업유산의 등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국제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에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의 유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나아가서는 지역의 유산을 주민스스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특징과 차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과거의 개발중심적인 사고에서 보전을 통한 활용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5)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방안

- 지역 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농어업유산의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주민, 전문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유산의 차별성, 역사성 등 맥락적(context) 접근방법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농어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 가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업유산의 보전을 기반으로 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어업유산은 농업자원 뿐 아니라, 농업기술(농법), 농업역사, 생물다양성, 농업문화 등 농어촌 지역의 다원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준과 원칙이 요구된다. 둘째, 농어업유산의 활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 추진된 문화유산과 관련된 타 부처 정책사업 및 지원체도의 운영을 살펴보면 보존 및 관리활동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키고 보존하는 관리뿐 아니라 관광, 체험, 교류, 홍보마케팅 분야의 농어업유산 활용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농어업유산 관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로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은 유희공간의 증가, 생산농가의 감소,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다소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농어업유산 지정과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활력과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이후 활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등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농어업활동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 농어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고시 단계에서 나아가 농어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포함한 농어촌지역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중 FAO의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유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와 연구가 필요하며 2013년 세계농업유산 선정을 위한 월드포럼에 대비해서 세계농업유산 후보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가 시급하다. 농어업유산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학회 및 NPO 단체 등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5. 연구결과의 실용화방안

- 2012년 새롭게 도입된 농어업유산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의 개발시대의 정책에서 변화해서 농어촌 지역 자원의 보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 농어업유산제도 도입을 위한 농어업유산 지정기준과 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고유의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러한 농어업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경관의 유지 및 보전에 기여할 것이고, 농어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농어업유산 지정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농어업유산 지정에 대한 체계적 지정기준 제공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신규제도인 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농어업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정립하여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농어촌자원의 보전, 관리사업 추진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부의 농어업유산제도 도입에 활용하여 제도 시행 및 지원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Summary

1. Title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gnation Criteria for Agricultural Heritage and Management System

2. Research Period : February, 2012 ~ December, 2012

3.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3.1. Background of the research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 cultural heritage and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aspect differentiated from the cultural heritage mainly for preservation and regulation.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FAFF) introduced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system' in order to conserve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resources which are getting disappearing and utilize them as core resources for rural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lobal recognition of Korean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promote tourism and enlarge the support for the heritage concerned, internationally in connection with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GIAHS)' by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3.2 Purpose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solution to establish a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s, which need to be manag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 solution to manage and utilize such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s systematically and a solution to improve the system for its execution of policies.

4. Content of the research and its result

4.1 Content of the research

- Concept and significanc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 Fact-finding survey and analysi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 Criteria for recogni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 Surveying and Identify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s through the evaluation
-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4.2 Research result

○ **Concept and significanc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 Korean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can be defined as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and fishery activity systems which deserves to be conserved, maintained and handed down and has been evolving through the process of deep involvement and adapt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activity systems to cultural, agricultural or biological environment, and the landscape formed by its activities
- The significanc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is in the function of; first, maintaining agricultural and fishery landscape; second, increasing the biodiversity; third, improving the brand value; fourth, creating jobs and utilizing as rural tourism resource; fifth, maintaining local community.

○ **Fact-finding survey and analysi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laws, regulations and relevant policies of major ministrie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showed that each ministries such a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ere driving various laws and strategies for the heritage management. Some scope of heritage resource and management were overlapped with thos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and the reality was that there was certain limit in comprehensive management.

○ **Criteria for recogni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 Three categories of criteria were established for designation of the Korean agricultural and fisheries heritage by adjusting the criteria of GIAHS. Effectiveness, value of heritage and partnership.

○ **Surveying and Identify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s through the evaluation**

- 71 heritages were investigated through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analysis on the existing heritages recognized or registered in other departments and the applied heritages by a local governments. Among them, the heritages that can be possibly designated as the World agricultural heritages should be taken care of by the government at the national level.

○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 Three basic principle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are as follows;

First, management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is necessary. Second, management based on the ut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is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through ut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5. Utilization of the research result

○ Changing from the conventional policy of the rural development epoch in the past, the MIFAFF introduced policies that put more weight on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in rural area.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system, newly introduced in 2012, will be recorded as an important policy in Korean rural development history. Hence,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as measures for the government to utilize in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system as well as its execution.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농어업유산의 개념정립	9
제1절 개관	11
제2절 유산관련 개념의 검토	15
제3절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정의 및 범위	40
제4절 농어업유산과 농어촌지역개발	49
제3장 농어업유산의 실태조사 분석	61
제1절 관련정책 및 제도 분석	63
제2절 기존 농어업 유산관련 자원의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90
제4장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설정 및 적용	113
제1절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정립	115
제2절 농어업유산 지정기준의 적용	121
제3절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정립 및 적용에 따른 시사점	127
제5장 세계중요농업유산 해외사례 분석	131
제1절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요	133
제2절 일본 사도시 사례 분석	142
제3절 일본 노토반도의 사례 분석	155
제4절 시사점	162
제6장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 방안	163
제1절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 기본개요	165

제2절 농어업유산의 관리·활용방안	170
제3절 농어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18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7
참고문헌	193
부 록	195
<부록1> 일본의 문화적경관	197
<부록2>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례	200
<부록3> 농어업유산 지정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285호)	231

< 표 차례 >


(표 2-1) 유네스코의 문화적 경관 영역	28
(표 2-2) 일본의 문화적 경관분류	32
(표 2-3) 유산의 지정 대상구분	37
(표 2-4) 농어업유산개념의 구성요소	44
(표 2-5) 농어업유산의 지정대상 분류(예시)	44
(표 3-1) 2012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66
(표 3-2) 2010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 대상 현황	68
(표 3-3) 문화재 지정범위	69
(표 3-4) 문화재 지정절차	72
(표 3-5) 2012년 환경부 주요업무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76
(표 3-6) 환경부 2012년 생물자원 보존 및 이용 확대 관련 지원사업	77
(표 3-7)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80
(표 3-8)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지원(동강유역 프로그램)	81
(표 3-9) 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 상의 관리현황	82
(표 3-10) 농어업 유산 관련 법률 현황	85
(표 3-11) 201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86
(표 3-12) 농식품부 농어업 유산 관련 추진사업 현황	87
(표 3-13) 농식품부와 타 부처와의 자원(유산) 지정목적 및 대상 비교	89
(표 3-14) 국가지정문화재 중 농어업·농어촌 유산자원 관련 현황	91
(표 3-15) 예천 회룡포 현황	92
(표 3-16) 회룡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93
(표 3-17) 회룡포 현상변경허가변경 현황	94
(표 3-18) 제천 의림지 현황	96
(표 3-19) 제천 의림지 지원 및 규제 현황	98
(표 3-20) 의림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99
(표 3-21) 예산군 황새마을 관련 사업추진 현황	108

(표 4-1) FAO의 세계농업유산 세부 지정기준	116
(표 4-2)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119
(표 4-3) 세부 지정기준	120
(표 4-4) 농어업 유산 종별 유형	122
(표 4-5) 농어업 유산 특징별 유형	123
(표 4-6) 발굴된 유산에 대한 지정기준의 적용과 유형화	124
(표 4-7) 농어업 유산의 종별 빈도	126
(표 4-8) 농어업 유산의 지역별 빈도	126
(표 4-9) 5개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 유산의 빈도	126
(표 4-10) 각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 유산의 빈도	127
(표 4-11) 농어업유산과 농어촌유산의 지정 구분 방향	129
(표 5-1)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의 인정 대상과 절차	134
(표 5-2)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의 인정지역과 후보등록지역	135
(표 5-3)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인정사례(일부지역)	138
(표 5-4)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인정사례 비교	141
(표 5-5) 사도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 전후의 주요 경위	147
(표 5-6)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 추진 현황	150
(표 5-7) GIAHS 인정기준에 의한 사도 사례의 특징 요약	152
(표 5-8) 노토반도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 전후의 주요 경위	157
(표 6-1)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의 주요항목 도출	169
(표 6-2) 농어업유산 관리운영주체 구성 및 주요기능	174
(표 6-3) 청산도의 관광자원화 활용사례	179
(표 6-4) 구들장논 기초 자료구축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례	180
(표 6-5) 청산도의 교류네트워크 구축 사례	181
(표 6-6) 청산도의 유희자원 연계·활용 사례	182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표	7
<그림 2-1> FAO의 경관	18
<그림 2-2>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유형별 관계	29
<그림 2-3> 제 개념간의 관계	39
<그림 2-4> 농어업 유산 개념도	40
<그림 2-5> 지정영역의 분류(예시)	45
<그림 2-6> 농어업유산의 보존과 농어촌지역발전	56
<그림 3-1> 신안 태평염전 사례	68
<그림 3-2> 하동 소나무배우기 사례	68
<그림 3-3> 남해가천마을 다랑이논 문화재 지정범위	69
<그림 3-4> 예천 회룡포 문화재 지정범위	69
<그림 3-5> 회룡포 전경	92
<그림 3-6> 회룡포 농경지	92
<그림 3-7> 회룡포 현상변경기준안 도면	94
<그림 3-8> 의림지(좌), 원형 석축(우)	96
<그림 3-9> 제림(좌), 소나무(우)	97
<그림 3-10> 의림지 현상변경기준안 도면	99
<그림 3-11> 제천시 도시계획결정 현황	100
<그림 3-12> 제천시 문화관광과 주변 활용계획	100
<그림 3-13> 구들장 논	102
<그림 3-14> 구들장 논 의 구조	103
<그림 3-15> 황새	105
<그림 3-16> 인간, 황새, 농업의 상관성	106
<그림 3-17> 예산군 황새마을 현황도	107
<그림 3-18> 안내관·친환경농업지역·황새생태농법(어도)	109
<그림 3-19> 어도·둠병·무논	109

<그림 3-20> 황새마을조성 및 하천 평탄화 사업·예당저수지변 경작 현황 ...	109
<그림 3-21> 프랑스 위나비르 황새복원센터·황새마을 전경	110
<그림 3-22> 독일 로부르크 주변 새 먹이 서식지(초지와 밀밭)	111
<그림 3-23> 일본 사도(세계농업유산등재) 따오기 관련상품 및 이미지	111
<그림 4-1> 종별 빈도	126
<그림 4-2> 지역별 빈도	126
<그림 4-3> 농어업 유산의 빈도(5개기준)	127
<그림 4-4> 농어업 유산의 빈도	127
<그림 5-1> 사도시 위치	142
<그림 5-2> 사도시 생물다양성 지리정보시스템 모식도	148
<그림 5-3>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	149
<그림 5-4> 사도시의 전통예능	150
<그림 5-5> 사도의 구루마모내기(車田植)	151
<그림 5-6> 따오기 브랜드 도시락	152
<그림 5-7> 따오기 브랜드 인증 쌀	152
<그림 5-8> 노토반도 위치	155
<그림 6-1> 관리·활용의 개념	165
<그림 6-2> 농어업유산의 활용 기본방향	177
<그림 6-3> 농어업유산의 활용전략	178
<그림 6-4> (예비)농어업유산 사전활동 지원	183
<그림 7-1> 농어업유산 제1호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190
<그림 7-2> 농어업유산 제2호 『제주 흑룡만리 밭돌담』	19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은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화 이후의 도시 집중과 농어촌의 난개발 등으로 소중한 자원이 방치 또는 훼손되고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산어촌에는 농어업활동과 관련한 오랜 전통과 유산이 존재한다. 농어업활동은 생물다양성 증가, 토지 보전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시설물뿐만 아니라 문화, 공동체 유지 시스템 등의 H/W와 S/W를 포괄하는 유산(遺産)이 존재한다.
- 최근 도시민들의 여가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 체험, 농어촌 경관 감상을 목적으로 농어촌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잠재된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농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유산’의 개념으로, 그 성격에 따라 역사·문화유산, 자연유산, 농어업유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그러나 역사·문화유산, 자연유산의 경우, 관련부처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하는데 반해 농어업유산은 체계적인 관리기준 뿐 아니라 명확한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농어업유산은 지금까지 보존·규제 중심의 문화재와 차별화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고유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재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정립과 관리시스템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 한편, 외국의 경우 농어업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세계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세계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 : GIAHS)는 2002년에 유엔식량 농업기구(FAO)가 창설한 제도로써,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어업적 토지이용, 전통적인 농어업과 관련되어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통적 농업제도, 생물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등이 부적절한 개발 전략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하에 발의하였다.
 - 현재 인정지역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19개 지역이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12.12월)
- 일본은 2011년 6월 세계농업유산제도에 자국의 농어업유산을 지정요청 하였으며, “따오기와 공생하는 마을 조성 인증제도”에 의한 생물을 키우는 농업을 농업생산시스템에 추가시킨 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와의 연계로부터 생물다양성 보전형 농업과 농업경제가 연계하여 지속적인 환경과 농업의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최근 사라져 가는 농어업·농어촌자원을 발굴해 보전·전수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농어업 유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들장논·다랑이논·장류 등 전통 농어업 기술이나 농어업문화를 발굴해 농어업·농어촌 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관광과 연계시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의 농촌공간에 현존하고 있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농촌공간의 선진화와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보전·전수·활용이 필요한 농어업·농어촌 자원, 즉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방안과 정책 시행 및 지원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계농업유산’에 등록하여 세계적인 인지도 향상과 관광촉진, 해당 유산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업유산제도 도입에 따라 보전·전수·활용이 필요한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방안과 정책 시행 및 지원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농어업유산의 개념 및 의의
 -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농어업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
 - 농어촌 지역개발에서의 농어업유산의 의의와 활용방향
- 농어업유산의 실태 조사 분석
 - 농어업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부처(농식품부, 문화재청, 환경부, 국토부 등)의 정책 및 법제도 검토
 - 농어촌 자원의 실태 조사 및 관리 현황 검토
- 해외 농어업유산제도 사례 분석
 - FAO 세계농업유산 제도 사례 분석
 - 해외 농어업 유산 선진 사례 검토
-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방법 및 기준 설정
 - 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정립
 - 기준 항목의 적절성 검토, 세분화, 체계화
 - 지정 기준에 따른 유형화
 - 농어업유산 자원의 발굴과 지정기준의 적용 분석

-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제시
 -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의 주요항목 도출
 - 농어업유산의 관리체계 및 관리지침, 관리 지원체계 마련
 - 농어업유산의 활용방안 및 활용전략 제시
- 농어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농어업유산제도 방침 및 농어업유산제도 고시(안) 마련
 - 농어업유산제도 근거법 제정 방안 검토

제3절 연구의 방법

1.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정책방향 검토를 통한 연구방향 설정

-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농어업유산의 정책대상을 분석하고 농어업 유산의 개념을 구체화
 - 선행연구 자료(서적, 논문, 연구보고서 등) 검토 및 분석
- 세계문화유산, 명승 등 농어업유산과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정책방향 검토를 통해 농어업 유산제도의 도입방향을 설정

2. 실태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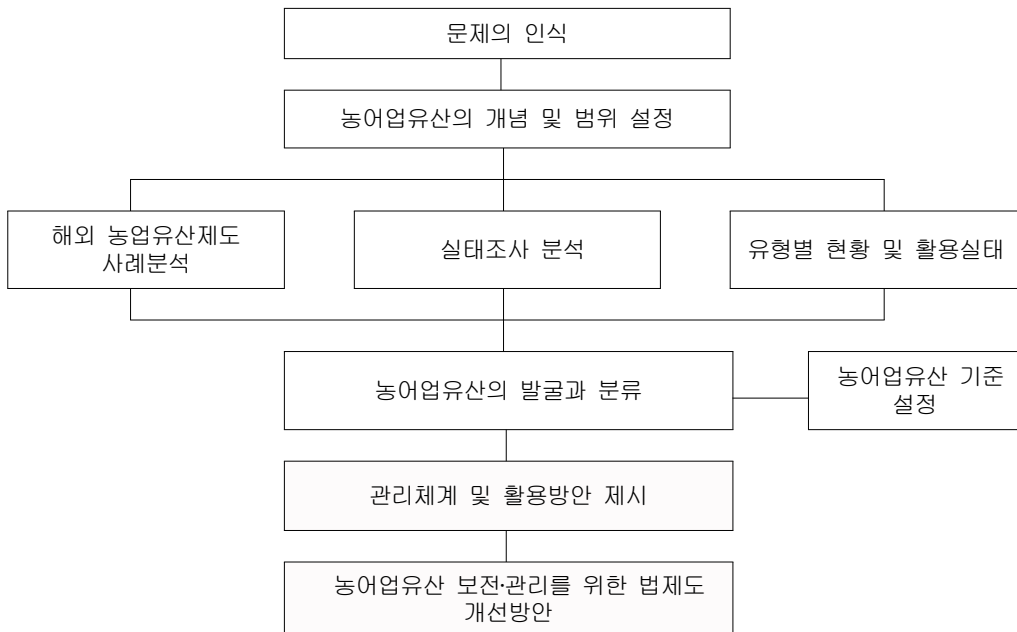
- 선행연구 결과 및 지자체의 농어업 유산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업 유산의 실태를 분석
 - 농어업유산 후보군에 해당되는 주요 유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유산 후보군의 관리실태 및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 기 선정된 세계농업유산을 분석하고, 최근 선정된 일본의 사례조사를 통해 농어업유산제도의 도입 방안과 제도도입 시 고려사항을 분석한다.

3. 농어업 유산의 유형화 및 농어업 유산의 지정기준 설정과 유산 자원의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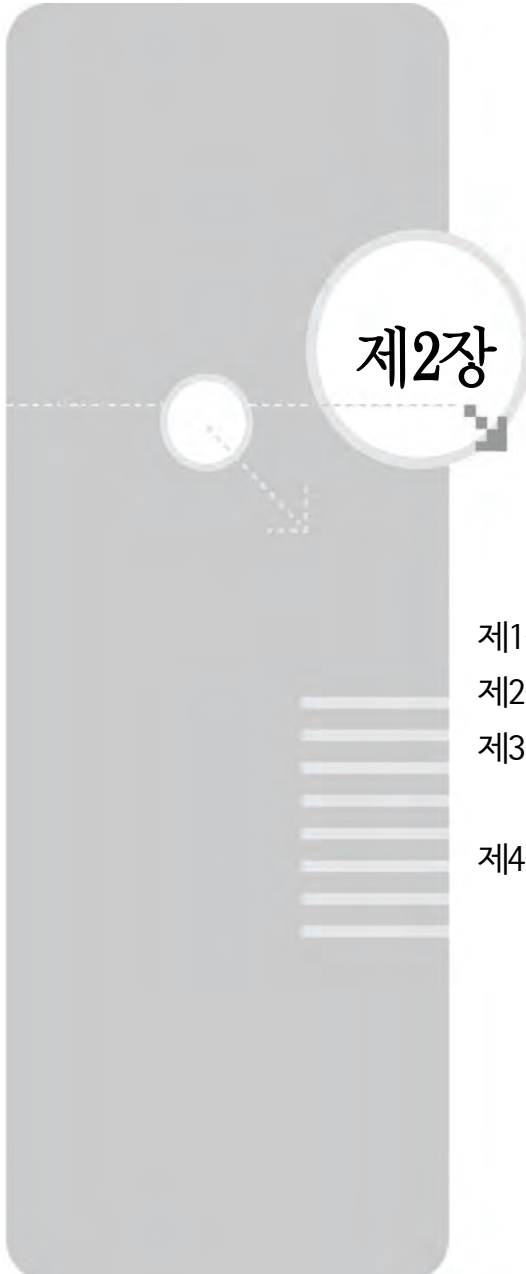
- 전문가 토론회 개최, 연구진의 내부 토론 등을 통해 농어업 유산의 유형화와 유산의 지정기준을 정립한다.
- 선행연구 및 타 부처 문화재 지정 등 문헌 연구 및 연구진 내부 토론과 지자체 신청자료 분석 등을 통해 농어업유산 자원의 발굴

4. 농어업 유산의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마련

- 선행연구와 현장조사, 주민조사와 국내외 관리실태 분석 등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어업 유산의 관리체계와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농어업유산 후보군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주체별 의견조사 등을 통해 역할분담 방안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제2장

농어업유산의 개념정립

제1절 개관

제2절 유산관련 개념의 검토

제3절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정의
및 범위

제4절 농어업유산과 농어촌지역개발

제2장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정립

제1절 개관

1. 개념정립의 필요성

-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존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유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찍이 아담 스미스(A. Smith)는 분업에 의한 생산 활동에는 인간의 지식이나 숙련 등과 같은 과거의 문화적 요소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측면이 들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의 말대로 사실 오늘날 모든 생산 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기술의 결정체이다.
- 특히 현재의 전통적 농업활동은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되어온 조상들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의 결정체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몇 년, 또는 길어야 수십 년이지만 전통적 농업활동은 수천 년에 걸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현재까지 존속되어 온 전통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은 조상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축적된 지식, 기술, 경험 등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귀중한 문화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농업유산은 다른 것과 달리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
- 유산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와 관련하여, 마셜(A. Marshall)은 유형의 유산은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것으로 실제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척도도 없고 경쟁상대도 없다.’고 지적하여 유산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¹⁾
- 농어업유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농어업유산으로부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는 도시소비자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당연히 증가한다. 그러나 공급측면의 생산성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농어업유산에 대한 가치는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통적 농업시스템에 의한 친환경적인

1) 池上淳 외(1999), 문화경제학(황현탁 역), p.26.

농산물은 그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오늘날 비료와 농약 등의 과다사용으로 생물의 종이 멸종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농법에 의해 유지되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농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18세기 후반의 중농주의 사조에서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바탕이 바로 농업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중농주의에서는 본질적 가치가 농업에서만 창출된다고 보았다. 농업에서만 가치가 창출된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지나친 비약일지라도 농업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치보다 중요시하였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 러스킨(J, Lusk)은 ‘고유 가치(intrinsic value)는 농작물,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가치란 건강·삶의 보람과 같은 생활의 질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²⁾ 그의 생각은 가치가 농업에서 창출된다고 본 중농주의 사상과 일치한다. 그가 식량생산과 토지 등에 고유 가치를 부여한 것은 농업 생산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우리의 생활과 특히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 농어업유산은 이상과 같이 특별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을 선별하여 보존하고 계승할 필요성이 있다. 농어업유산을 전승한다는 것은 농촌사회의 문화, 정체성, 소속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농어업유산이 다른 산업유산과 다른 점은 농촌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민들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여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 그리고 농어업유산은 공유자산(common property)으로서 모든 사람의 책임 하에 놓여있다는 특징이 있다. 농어업유산은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농어업유산은 국가의 자산으로서 모든 사람에 의해 인식되고 모든 사람에 의해 이용되며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池上淳 외, 위의 책, p.86.

-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촌에 있는 일부 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유산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농촌에 있는 잠재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농어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개념정립을 위한 기본관점

- 이상에서는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유산이 왜 가치를 갖는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 선현들의 생각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유산에 대한 가치인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관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는 전통성의 관점이다. 전통성은 역사성과 시대적 고유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흔히 유산을 말할 때 그 앞에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역사적 유산’이라고 부른다. 아마도 그 이유는 유산이 가치를 갖는 밑바탕에는 역사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역사성은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역사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한 현상이나 형상이 현재 또는 한 시점의 이전에 발생할 경우 역사성을 가지며 그 길이의 정도에 따라 역사성이 길다 또는 짧다고 말한다. 유산의 가치는 당연히 역사성이 길수록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역사는 길어지므로 유산의 역사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역사성은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길모퉁이에서 발견된 돌조각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돌조각이 전통적인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역사성 이외에 시대적 고유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역사성은 고유성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유산이라는 의미를 보다 쉽게 말하자면 ‘역사적 고유성을 가진 유산’이라고 풀어써 쓸 수 있을 것이다. 고유성이란 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역사적 고유성을 가진 유산’이라고 말할 때는 역사가 오래되고 시대적 특징을 잘 간직한 유산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가 오래되고 시대적 특징을 가진 유산은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희소하다. 따라서 전통성이란 의미 속에서는 역사성, 고유성, 희소성이란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위의 예에서 돌조각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구조물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시대적 고유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희소성을 가질 때 유산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 둘째는 지역성의 관점이다. 유산의 가치는 지역성 또는 풍토성을 가질 때 올라간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유산이 다른 나라에 가 있다면 유산의 가치는 상당부분 저감될 것이다. 길거리 돌조각이라도 달나라에서 온 것은 가치를 더 가진다. 다른 예로 역사적 가치를 갖는 유산을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전시할 경우 그것이 원래의 자리에 있을 때에 비하여 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유산의 가치는 그것이 처해 있는 지역적 토착성 및 풍토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 셋째는 유익성의 관점이다. 유산의 가치는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하는 유익성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예컨대 다랑이 논외의 경우와 같이 인간에게 식량의 공급, 생물다양성의 보존, 아름다운 경관의 창출 등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이외에도 유산은 정신적 위안이나 안정, 기쁨, 자부심, 휴식 등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이 있을 때 유산은 그 가치를 더하게 되며 이 때문에 오늘날 유산을 우리의 생활 안에서 살려나가고 이용하는, 즉 유산의 활용이 중시되는 것이다.
- 이상과 같은 기본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음의 제2절에서는 먼저 농업과 관련된 제 유산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어서 제3절에서는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제2절 유산관련 개념의 검토

- 역사적 유산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내려 온 것으로 미래 세대의 편익을 위하여 물려주어야 하는 자산이다. 유산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농업유산, 농촌유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지정에서, 그리고 농촌유산은 EU의 농촌유산 가이드에서, 그리고 농업유산의 개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세계농업유산시스템의 제도에서 그 개념을 찾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관점에서 FAO의 농업유산개념을 검토한 후 이를 표준으로 삼아서 다른 제도상의 유산개념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를 비교분석한다. 그리하여 FAO의 세계농업유산시스템이 어떤 특징 때문에 유네스코 등 다른 유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 그 이유를 구명한다. 여기서 얻은 지식들은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³⁾

1. FAO의 GIAHS

- FAO에서는 2002년에 세계농업유산시스템(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제도를 창설하였다. 농업유산 (agricultural heritage)이란 용어는 이때에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GIAHS의 개념은 2002년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상회의 행사에서 파트너쉽 사업의 일환으로 FAO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이때에 이 개념의 형성에 지구환경기구(GEF)의 사업개발기구(PDF)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⁴⁾
- 그 외에도 FAO가 GIAHS의 제도를 마련할 때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의 지정에서 얻은 경험이 유용하게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네스코의 유산의 개념 중에 다음 절에서 설명할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s: organically evolving landscapes)’의

3) 다음은 윤원근, 최석인(2012), 한국농어업유산제도의 정립방향(한국농촌지도학회), pp.468-476을 참고하였다.

4) <http://www.giahs.org/>

카테고리는 매우 유용한 지침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⁵⁾
 GIAHS의 개념에는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적 경관의 개념에다가
 농업활동으로 형성된 토지이용 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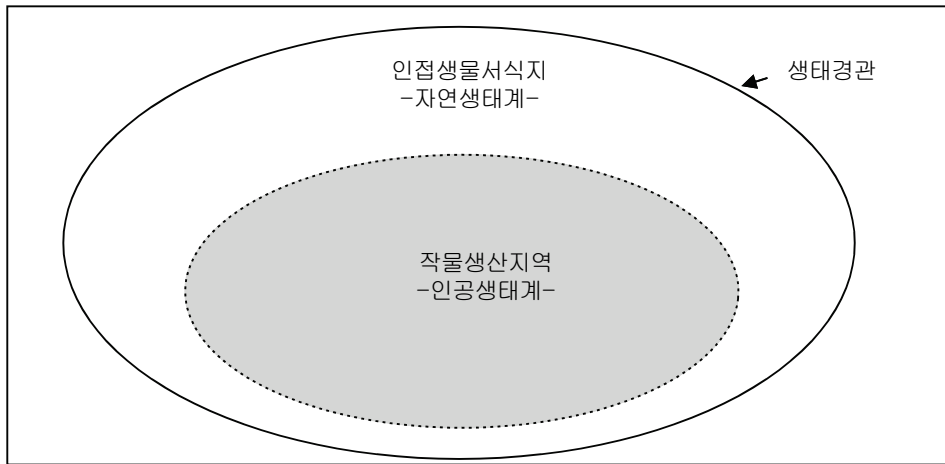
- 이 제도는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기술과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농업유산을 보전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 제도는 세계적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여기에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생물다양성의 관리와 보존을 증진시킴으로서 인류의 삶과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제도의 목적 속에는 농업유산이 자연과 인간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점, 농업유산과 관련된 생물다양성과 문화 및 지식체계 등의 보존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GIAHS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GIAHS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와 경관(Remarkable land use systems and landscapes which are rich in globally significant biological diversity evolving from the co-adaptation of a community with its environment and its needs and aspir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정의되었다.
- GIAHS란 다시 말하면 지역공동체가 그 지역의 사회적·문화적·자연적 환경과 관계를 맺고 적응하면서 형성한 농업과 관련된 유산 중에서 특히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동감이 넘치며 진화하는 농업시스템을 가진 경관을 말한다. 이 정의 속에는 인간이 환경의 혜택과 제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응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관과 생물적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5) 유네스코는 제1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화적 경관을 세계문화유산의 일종으로 추가하였다.

6)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문화적 경관 카테고리 내에 농업유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창조된 농업유산에는 인류가 여러 세대에 걸쳐 얻은 경험과 지식체계가 축적되어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이는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이렇게 정의된 GIAHS의 개념은 인간의 농업활동으로 진화해온 토지 및 물의 이용과 같은 농업생태시스템과 이것에 의해 이루어진 경관이라는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즉, GIAHS는 경관이라는 하드웨어적 요소와 경관을 만들어낸 농업시스템 및 생물다양성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 FAO의 GIAHAS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의는 우리의 농어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GIAHS의 정의 속에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농촌유산 등과 같은 유사한 다른 개념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개념요소들 그러니까 생물다양성, 농업시스템(토지 및 물 이용체계), 경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 환경과의 동반적응성 등과 같은 개념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농업유산을 다른 종류의 유산개념과 구별하는 주요한 특징이므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 먼저, 이 정의 속에서 ‘경관’이란 인공과 자연의 복합체란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 농업생산은 일반적으로 작물생산지역과 그 인접의 서식지가 하나의 농업생태계로 통합되어 있는 인공 및 자연적 생태계를 동시에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때에 전통적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는 인공 및 자연적 생태계의 복합적 공간을 FAO의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 비료, 농약, 기계 등과 같은 현대적 투입요소를 가능한 적게 사용하는 전통적 농업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이채로운 경관을 만들어 낸다. 이런 경관은 자연 상태로서의 풍경보다도 오히려 더 이채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때에 농업활동과 관련된 경관이란 인공적으로 형성된 작물생산 지역과 인접의 생물서식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경관이란 작물의 생산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서식지를 포함하는 연속성 (continuum)을 가진 복합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림 2-1> FAO의 경관

- 다음으로, 이 정의 속에서 ‘토지이용시스템’이란 개념은 인간의 농업 활동으로 진화해온 토지 및 물의 이용과 같은 농업시스템을 통칭한다. 한 지역의 농업시스템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리고 여러 품종에 대하여 그 지역에 고유한 관리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농업시스템은 그 지역의 오래된 지식과 실천, 그리고 시행착오적인 수많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인류의 진보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반영한다. 이와 같은 농업시스템은 특별한 미적 가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그리고 문화유산의 유지를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물의 제공과 식품 및 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인간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 독창적인 토지이용 시스템은 인구밀집지역에서 특히 발견된다. 인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즉 지리적 불리함, 불리한 환경, 정치적 역경, 부족한 자원, 열악한 기후 등으로 인하여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자원 이용 및 관리방식을 확립해 왔다. 그러므로 GIAHS에 등재된 대상지역은 대부분 후진국에 있으며 후진국 중에서도 환경이 특히 불리한 산간지대나 사막지대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 다음으로, ‘생물다양성’이란 개량된 다수확품종의 획일적 재배 또는 개량된 동물의 획일적 사육과 상치되는 개념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전승되어온 다양한 생물의 품종들을 말한다. GIAHS가 다른 제도와 다른 가장 현저한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생물다양성이 증시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보자. 농부들이 여러 품종들을 나누어 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개량된 하나의 품종을 심어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품종을 나누어 심었을 때에는 이러한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기에 걸쳐서 수확을 안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식생활의 다양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한편 토종의 품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해 보자. 농촌에서 경작되는 원시품종은 수세기에 걸쳐서 대대로 전승되면서 좋은 특성을 갖도록 선별된 것이다. 토종 품종은 유전자 변형품종과 같은 현대의 품종에 비해 유전적으로 고유하고 강하며 유익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고유품종의 보존은 현대품종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성과 식품의 취약성에 대비하는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 오래 동안 사육되고 개량된 토종의 동물 역시 지역의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내성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이외에도 생물다양성이 존재하는 농업시스템은 풍부한 영양소를 가진 작물, 해충의 천적, 유익한 곤충 및 박테리아, 그리고 유익한 생태적 기능을 가진 유기체들의 서식처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농업생태계(agro-ecosystem)는 위협에 처해 있는 야생종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으로 GIAHS의 정의에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개념 속에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자연의 제약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고 생존하려는 의지와 발전에 대한 노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다랑이 논들이 세계농업유산에 지정된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산악지대라는 어려운 자연환경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고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였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 또한 지역주민이 발전을 바라지만 그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용량 내에서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환경을 창조하는 형태로의 발전을 바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환경과의 동반적응’이란 지역주민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를 삶에 유용하도록 활용하여 생산 활동을 영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이상과 같은 FAO의 농업유산 개념이 다른 유산의 개념과 다른 점은 첫째는 이것은 농업과 관련된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는 다른 제도들이 하드웨어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FAO는 농업 생태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 셋째는 농업 유산은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중시한다는 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 그러면 이상과 같이 정의된 FAO의 농업유산 개념은 우리의 농어업유산 개념정립을 위하여 처음에 상정했던 세 가지 기본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먼저 전통성의 관점에서 보면 GIAHS의 정의 속에는 ‘역사적’, ‘전통적’이라든가 또는 ‘고유한’ 등의 표현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이 개념 속의 대상이 지역사회의 환경과의 동반적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는 농업활동의 결과물이라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 활동은 전통적 농업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즉 이 정의 속에는 역사성이 기간으로 명시되어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대상이 되는 농업활동이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환경을 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시키는 농법은 대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현대의 농법과 다른 것으로 예전에 조상들의 생산방식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는 바로 전통적인 농법을 주로 지칭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그러므로 FAO에서는 유산의 전통성을 농업활동의 특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 지역이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전통적 농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환경과의 동반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GIAHS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특별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생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토와 노토지역이 GIAHS에 등재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GIAHS는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역사가 오래된 가치 있는 농업유산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현재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치 있는 농업시스템이라면 이 역시 미래세대에 전승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농업유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 다음으로 지역성의 관점에서 볼 때 FAO의 정의에는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GIAHS의 대상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그리고 낙후되어 있어서 발전에 대한 열망이 지대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대상이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라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 마지막으로 유용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GIAHS의 정의 속에 들어 있는 진화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토지이용시스템, 경관 등의 표현 가운데 ‘진화하고 있는’의 의미로부터 유산의 유용성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진화한다는 것은 현재 농업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다시 말하면 농업유산이 지역사회에 식량 등의 생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집어 말하면 농어업유산이 지역사회에 유익함을 제공할 때 그 기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활동이 멈춘 것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진화하고 있는’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2. UNESCO의 세계유산제도

- 유네스코 총회는 1972년에 세계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결한 바 있고, 이 협약의 서문에서 이 제도도입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즉 이 협약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7) <http://www.fao.org/nr/giahs/>

유산이 국내적 차원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유산보호를 위한 지식의 공유, 증진, 보급을 통하여 유산을 보호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의 내용 속에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정의가 포함되게 되었다.

- 그 후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의 일종으로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화적 경관의 개념은 기존의 문화유산개념에 자연의 개념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 이외에도 유네스코는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크게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⁸⁾으로 분류되지만, 이외에 인류의 무형유산(2003), 세계의 기록유산(1997)이 추가된다.

가. 자연유산

-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이란 UNESCO의 정의에 의하면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자연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그리고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 이와 같은 UNESCO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전승할 만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의 기념물,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등을 말한다.

8) 복합유산은 자연유산의 등재조건과 문화유산의 등재조건을 동시에 하나씩 만족시키는 유산이다.

- 자연유산의 정의에서 보면 그 대상은 자연지역이거나 자연유적지이다. 이와 같은 대상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며, 또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특성을 나타낼 때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 정의에서는 유산의 과학적, 미관적인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유산의 인류에 대한 유익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UNESCO의 자연유산에 대한 정의에는 특히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은 FAO에서 정의한 GIAHS의 개념요소 중에 생물다양성과 연관된다. 그러나 FAO에서 말하는 생물다양성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이 아니라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토지이용체계 속에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에서는 생물다양성이 존재하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는 자연 상태의 것이라면 FAO에서 말하는 생물다양성은 인간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업시스템 속에서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나. 문화유산

- Wikipedia(2011)에 의하면 문화유산이란 사람들이 세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의 자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가면서 서서히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키며 그 발전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또 후대에 계승·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예전시대의 문화적 소산 전부를 문화유산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주에 관련된 유물 및 식량이나 산업제품생산에 관한 유물 또는 민속신앙·윤리·예술·학술·정치 등에 걸친 생활형성의 양식과 내용이 모두 문화유산의 대상이 된다.
- UNESCO는 이상과 같은 문화유산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 기념물에는 건축물, 기념적인 의의를 갖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하게 세계적 가치를 갖는 유산이 포함된다. 건조물군에는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입지성으로부터 역사적, 미술적으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이 포함된다. 그리고 유적지에는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들이 포함된다.⁹⁾ 이상과 같은 UNESCO의 정의에서 보면 문화유산 속에는 인간의 문화생활과 관련된 가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 그런데 문화유산이 자연유산과 다른 점은 자연유산이 자연의 소산이라면 문화유산은 인공의 소산이거나,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특히 문화유산을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유산의 정의 속에 농업과 관련된 구조물, 유적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농업유산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그런데 문화유산에서 말하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이란 유적지로서 FAO에서 말하는 경관과는 다른 의미이다. 유적지란 조상이 남긴 주거지 같은 건축물이나 무덤 따위가 있거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FAO의 경관이란 인간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물생산지역과 주변의 자연생태지역을 아울러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개념으로는 FAO의 농업유산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개의 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9) Wikipedia에 의하면 문화유산의 유형을 식량유산(food heritage), 산업유산, 그리고 전통·관습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 둘은 논외로 하면 이 중에서 식량유산은 동식물의 기원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의 분포, 사람이 처음으로 경작하고 동물을 길들였던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식량을 가공하고, 저장하며 소비했던 최초의 장소 등이 포함된다. 장소의 예로는 농장, 제분·정미소, 방앗간, 낙농장, 과수원, 포도밭, 양조장, 식당, 시장, 여관 등을 말한다.

- 다시 말하면 FAO의 농업유산은 농업과 관련된 인공과 자연의 결합으로 초래된 결과로서의 유적지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문화유산제도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고정된 농업 구조물, 또는 농업유적지로서의 개체를 지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FAO에서의 농업유산은 이 같은 유적지에 현재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시스템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보존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하여 식량을 제공하는 기능 등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즉 단순한 농업유적지는 문화유산의 지정대상은 될지언정 FAO에서 말하는 농업유산은 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개념으로는 FAO의 농업유산을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성 때문에 문화유산제도와 GIAHS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고려하여 1994년에 문화유산의 개념 속에 들어 있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이라는 부분을 더욱 강조하여 문화유산의 카테고리에 문화적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 이 개념은 FAO의 농업유산과 더욱 근사하다.

다. 복합유산

-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유산을 복합유산이라고 한다. 세계유산 중 복합유산은 하나의 공간 안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조건을 적어도 한가지씩은 부합하는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에는 등재조건이 총 10개 항목¹⁰⁾이 있는데, 이 중 1번~6번은 문화유산의

10) (1)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2)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정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3)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4)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5) 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6)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7) 최상의 자연

조건이고 7번~10번은 자연유산의 조건이다. 10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세계유산이 되지만 복합유산의 경우는 1번~6번 중 1가지 이상, 그리고 7번~10번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¹¹⁾

라. 문화적 경관

-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이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문화유산은 대부분 인류가 쌓아온 기념적인 건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연유산은 인간의 관리에서 벗어난 자연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세계유산목록이 이와 같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양극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경관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¹²⁾
- 즉 문화적 경관은 문화유산의 지정이 점(點)적인 보존에 치우쳤다는 점에 대한 반성으로 면(面)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난 지역을 의미하며, 종래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사이를 메우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¹³⁾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9)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10)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

(http://www.cha.go.kr/korea/heritage/world_heritage/world_culture_02.jsp)

- 11) 복합유산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등재된 건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29건밖에 없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합유산으로 등재를 검토하고 있는 유산은 지리산이나 염전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자료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복합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만으로 등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문화재청의 질의에 대한 응답(2012,712)].
- 12) 유네스코는 문화적 경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화적 경관은 문화적 자산이고, 조약 제1조에서 말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동작품>에 상당하는 것이다. 인간사회 또는 인간의 거주지가 자연환경에 의한 물리적인 제약 가운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내외적 힘에 의해 계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어떠한 진화를 해왔는지를 예증하는 것이다.’(金田章裕, 문화적 경관, 2012, p,25)
- 13) 문화적 경관은 복합유산과 유사하나 다른 종류의 유산이다. 복합유산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화, 자연 모두를 충족시키는 유산인 반면에 문화적 경관은 문화유산의 한 종류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산을 문화적 경관이라

- 1992년에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회의는 결과물로서 ‘cultural landscapes of universal value’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94에 문화적 경관의 개념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5년에는 필리핀의 콜디레라(Cordilleras)산맥의 계단식 논이 세계의 문화적 경관으로 처음 등록되었다.¹⁴⁾
- 문화적 경관이란 인간의 행위와 자연과의 결합의 소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적 경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정원 및 공원 등과 같이 인간의 설계의도에 의하여 창조된 경관으로 이를 의장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이라고 한다. 둘째는 현재까지 남아 있으면서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으로, 여기에는 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관이 포함된다. 이 영역에 우리가 말하는 농업유산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는 관련된 경관(associative landscape)으로 여기에는 신앙 및 종교, 문학 등 예술 활동과 관련된 경관이 포함된다.¹⁵⁾

고 한다. 문화경관은 말하자면 유산의 형태를 규명하는 분류이다. 마치 문화유산 내에 고고학적 유적이 있을 수 있고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오벨리스크와 같은 기념물이 있을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선상에서 건축물, 유적, 기념물, 문화적 경관 이와 같이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문화적 경관은 문화유산일수도 있고 복합유산일수도 있다. 즉 문화적 경관은 세계유산의 등재조건 중 문화유산의 조건인 1번~6번 중에서 최소한 하나(특히 4번)만 충족시켜도 등재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적 경관이면서 복합유산이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7번~10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더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경관으로 등재된 것은 아직 없다[문화재청의 질의에 대한 답변(2012, 7. 12)에 기초함]

14) 김관기(2005), 문화유산보호에 있어서 문화적 경관의 새로운 전개, 건축역사연구, pp.14-4.

오만근(2005),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체제, 국토논단.

15) 오만근, 위의 글, pp.98-99.

(표 2-1) 유네스코의 문화적 경관 영역

영역	내용
제1영역 의장(意匠)된 경관 (designed landscape)	정원 및 공원 등과 같이 인간의 설계의도로 창조된 경관
제2영역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1)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 (2)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관(유적주위의 화석경관 등)
제3영역 관련된 경관 (associative landscape)	인간의 제 활동 특히 신앙 및 종교, 문학 등 예술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관

자료: 오만근(2005),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체제, 국토논단, p.98.

- 이상의 정의에서 보듯이 문화적 경관의 제2영역인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속에는 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이 포함되어 있다.¹⁶⁾ 이와 같이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의 개념을 보완하여 면적인 요소로서의 경관으로까지 지정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이 개념 속에 FAO의 농업유산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는 개연성이 증가하였다.
- 그러나 문화적 경관 역시 FAO의 농업유산 개념 중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농업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으로 농업유산의 개념을 포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두 개의 국제적 제도가 별도로 운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 다시 말해서 FAO의 농업유산 개념은 농업과 관련된 인공과 자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경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FAO의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업시스템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이 보존되며, 이에 의해 식량의 안전한 공급이 확보되며, 지역사회를

16) 문화적 경관의 제2영역은 대상지역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유산보다 넓다. 즉 대상범위에서 문화적 경관의 외연이 농업유산보다 넓다. 여기에는 농림수산업 관련 경관은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산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4년에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재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경관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 일본의 문화적 경관에 대한 개념은 2003년도 발간한 위의 보고서에서 정의되었고 2004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나타났다.¹⁸⁾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하여 알아본다.
- 먼저 2003년에 발간한 위의 보고서의 문화적 경관이란 ‘농산어촌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전통적 산업 및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하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토지이용 형태 및 고유의 풍토를 나타내는 경관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 정의된 일본의 문화적 경관 개념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전통적 산업 및 생활과 관련하여’, 그리고 ‘토지이용 형태 및 경관’이라는 두 가지 개념요소가 들어있다. 전자는 대상의 범위를, 그리고 후자는 대상을 정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첫째로 ‘전통적 산업 및 생활과 관련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일본의 문화적 경관이 대상의 범위를 농어업뿐만 아니라 그 외에 광업, 제조업과 같은 산업도 전통적이며 농산어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면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전통적 산업이외에 전통적 생활에 관련된 도로, 광장, 담장과 같은 것도 역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 둘째로 일본의 문화적 경관은 그 대상을 ‘토지이용형태 및 경관’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유형적인 것으로 한정하여 무형적인 것을 제외하였다. 이 점은 FAO의 농업유산이 그 대상을 ‘land use systems and landscapes’라고 정의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17) 김란기, 위의 글, p. 291.

18) 일본은 이렇게 개정된 문화재보호법(2004년 공포, 2005년 시행)에서 문화재의 종별에 ‘문화적 경관’을 추가하였다(金田章裕, 문화적 경관, 2012, p.28).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신청을 토대로 하여 국가가 ‘중요 문화적 경관’을 선정한다(문화재 보호법 제8장)

- 다음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일본의 중요 문화적 경관¹⁹⁾이란 경관계획지구 또는 경관지구 내에 있는 문화적 경관으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보존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문부과학성 대신)가 선정한 문화재를 말한다.²⁰⁾
-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선정기준은 첫째,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생활, 생업 및 해당지역의 고유한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표 2-2)의 경관지 가운데 전형적 또는 독특한 일본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및 생업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상기의 제시한 경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형적 또는 독특한 일본 국민의 기반적 생활 및 생업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기준에서 일본의 문화적 경관은 경관을 문화재로 파악함과 동시에 생활의 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본은 문화적 경관제도의 도입에 따라 농촌에 있는 농어업관련 유산들을 이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화적 경관제도는 문부과학성에서 그 관리를 주관함에 따라 농촌의 농어업 관련 유산들 역시 문부과학성의 관리소관으로 되었다.

19)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적 경관의 개념은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생업, 그리고 해당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경관지로서 우리 국민의 생활과 생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金田章裕, 문화적 경관, 2012, p.29).

20) 일본은 이와 같이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고 문화적 경관을 문화재로서 파악하려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한편, 뒤이어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경관법을 재정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2004.6.18에 경관법이 공포되고,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과 함께 2005년부터 ‘경관지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경관법에서 규정하는 경관계획지구’ 또는 경관지구 내에 있는 문화적 경관‘에 있어서’ 해당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중요 문화적 경관으로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2-2) 일본의 문화적 경관분류

구분	내용
농어업 관련 경관	논, 밭 등의 농경에 관한 경관지
	목축지, 초지 등의 採草(채초), 방목에 관한 경관지
	用材(용재)림, 방재림 등의 산림의 이용에 관한 경관지
	양식장, 김 채취장 등 물고기 잡는 것에 관한 경관지
	저수지, 수로 항구 등 물의 이용에 관한 경관지
기타산업 관련 경관	광산, 채석장, 공장지대 등의 채굴, 제조에 관한 경관지
생활 관련 경관	도로, 광장, 등의 유통, 왕래에 관한 경관지
	담, 정원, 울타리, 뒷숲 등의 주거에 관한 경관지

-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FAO의 GIAHS에 등재되는 농업유산은 농림수산성에서 관리를 주관한다. 따라서 동일대상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본의 경우와 같이 농어업관련유산들을 문화적 경관제도에 의해 문부성이 관리를 주관하게 되면 이들을 다른 문화재와 함께 관리하게 되므로 관리상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²¹⁾반면에 동일한 대상을 국내·외적으로 서로 다른 부서가 담당한다는 점은 관리나 운영상의 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 2003년의 보고서에서 정의한 일본의 문화적 경관 개념은 FAO의 농업유산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둘 다 토지이용제도와 경관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적 경관은 FAO의 농업유산보다 대상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FAO의 농업유산은 전통적 농업생산 활동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을 대상으로 국한하는 데 반하여 일본의 문화적 경관은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도 포함하며 또한 현재 생산 활동이 멈춘 유적지를 포함한 경관도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상의 범위가 더 넓다.

21) 우리의 경우도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일부 농업관련유산(다랑이 논, 물레방아, 너와 집 등)을 명승이나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 그리고 유네스코의 문화적 경관과 FAO의 농업유산과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문화적 경관 역시 FAO의 농업유산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재차 말하면 FAO의 농업유산에서는 농업활동에 따른 생물다양성, 유산의 지역사회에 대한 산출물 공급 및 지역사회의 유지기능 등을 매우 중시하지만 일본의 문화적 경관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즉 FAO의 농업유산에서는 경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어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생물다양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경관 개념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4. 유럽의 농촌유산

- 유럽농촌유산가이드(European rural heritage guide, 2003)²²⁾의 서문에는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농촌유산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이 가이드는 현대인들이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농촌을 찾으며 농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점, 그리고 농촌은 각종 유산의 보고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가이드에서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산들을 발전의 동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인식 하에 농촌유산을 농촌발전의 인자로 활용할 것과 이를 기본 원리로 하는 농촌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촌유산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유럽 농촌유산 가이드에서는 농촌유산(rural heritage)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농업활동과 연관된 구조물을 의미하는 제한적 의미로 정의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산의 개념을 보다 넓게 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이 가이드에서는 농촌유산이란 인간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면서 확립한 특정관계를 나타내는 유형적 요소는 물론 무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농촌유산의 대상범위를 이와 같이 무형적인 것까지로 확대하게 되면 FAO의 농업유산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던 무형유산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22) CEMAT(2003),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

- 이 가이드에 따르면 유형적 유산은 크게 경관, 자산, 산출물로 구분한다. 첫째 경관(landscapes)이란 환경에 대하여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활동이 작용한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관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토지에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경관과 다르지 않다.
- 둘째 자산(property)이란 농업을 비롯한 각종 생산 활동을 위한 건축물로서의 고정자산과 가내용도, 종교용도, 각종 행사 용도로 사용되는 목적물과 같은 이동 가능한 모든 유동자산을 포함한다.
- 셋째 산출물(products)이란 지역적 여건, 경작, 재배, 가공, 조리 등의 지역적 전통에 적용된 결과로서 얻어진 생산물을 말하며 식물품종(식물, 과일, 채소 등), 그리고 지역의 가축품종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 그리고 이 가이드에서는 무형적 유산은 유형유산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술과 기능을 첫 번째 카테고리로 포함시켰다. 즉 경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 기능, 가옥이나 가구를 만드는 기술과 기능, 그리고 지방 산물이 개발되도록 한 기술과 기능을 말한다. 그리고 둘째 카테고리로 방언, 음악, 구전 문학을 포함시켰다. 표현의 수단으로서 방언, 음악, 문학 등은 한 공동체가 그 지역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의 증거물이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증거물이다. 여기에는 지역역사,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역 명,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인물, 또는 장소를 설명하는 이야기나 전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셋째 카테고리로 관습이나 페스티벌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사회생활을 조직하는 방식과 사회조직의 특수 형태 등을 말한다.
- 이 가이드는 농촌유산의 분류 중에 경관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농촌유산에서 경관(landscapes)이란 단순한 자연경치와 달리 인간이 환경에 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소산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경관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FAO의 농업유산과는 역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농촌유산에서 경관은 단지 공간적으로 농촌에 존재하는

가치 있는 인공물, 또는 유적지 등과 이들을 포함한 공간으로서의 경관을 말한다. 이 경우 경관은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이 없는 것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농촌유산의 외연적 범위는 FAO의 농업유산보다 넓다.

- 그러나 농촌유산에서의 경관 역시 농업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FAO의 농업유산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농촌에 있는 아름다운 돌담이 있는 장소는 농촌 경관에 속한다. 그런데 이 돌담이 FAO의 농업유산에 속하기 위해서는 농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돌담이 농지를 구획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이 돌담에 관련된 농지와 인근의 생태지역이 함께 농업유산의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 농촌유산에는 경관이외에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산, 각종 지역 생산물 등을 유산에 포함시키며 이외에도 관습, 방언, 문학 등 무형적인 요소 역시 유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촌유산은 FAO의 농업유산보다 대상 영역이 더 넓다.

5. 농촌 어메니티

- 19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농촌 어메니티 운동 또는 농촌 어메니티 정책이 유행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다. 윌리엄 홀포드(William Holford)에 따르면 어메니티는 단순히 하나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치를 지닌 총체적인 카탈로그라고 보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 또는 ‘전체로서 쾌적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 일반적으로 어메니티(amenity)란 인간이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매력·쾌적함·즐거움이나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따라서 농촌 어메니티(rural amenities)이란 농촌 특유의 자연환경과 전원풍경, 지역 공동체 문화, 지역특유의 수공예품, 문화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쾌적성을 주는 요소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농촌 어메니티는 야생지,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하여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모습들(features)을 가리킨다.²³⁾ 여기에는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 속에는 유네스코의 자연유산, 문화유산, 문화적 경관, 그리고 유럽 가이드의 농촌유산에 의해 분류된 자원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그러나 농촌 어메니티 자원과 FAO 농업유산의 개념은 접근방식에서 구별된다. 첫째, 농촌 어메니티는 인간에게 쾌적함·즐거움을 제공하여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FAO의 농업유산은 전통적 농업활동으로 형성된 농업시스템과 기술 및 지식의 보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미래의 가치를 중시한다. 둘째, 두 제도 모두 야생 동식물의 요소를 포함하나 FAO의 농업유산에서는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존·유지 및 미래의 가치를 중시한다. 셋째, 농촌 어메니티에서는 농촌의 쾌적함을 강조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FAO 농업유산에서는 농업활동을 중시하고 이로부터 식량의 안전성 확보, 동식물종의 보존, 공동체의 문화형성 등을 강조한다.

6. 제 개념간의 관계분석

-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제 개념들의 관계를 지정 대상의 포괄범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표 2-3). 이 표에서 보면 각 유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개념을 별개로 하면 나머지 것들은 인공의 소산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호 간의 포괄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지정대상의 포괄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많은 대상을 포괄하는 유산을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면 농촌 어메니티와 농촌유산이 가장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농업유산이 가장 좁은 개념이다.

23) 오현석 외(2002), 『OECD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서울: 새물결출판사.

- 이 중에서 먼저 문화유산과 FAO의 농업유산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문화유산은 농업과 관련하여 고정된 농업 구조물, 또는 농업유적지라는 개체로서의 건조물이 주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FAO의 농업유산은 농업과 관련된 구조물 또는 유적지를 포함하는 생태경관을 지정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문화유산의 개념에는 현재의 농업활동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경관이란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 개념으로는 FAO 농업유산 개념을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2-3) 유산의 지정 대상구분

구분 \ 대상	하드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자연	농업		산업		생활		
		건조물	경관	건조물	경관	건조물	경관	
자연 유산	○	-	-	-	-	-	-	-
문화 유산	-	○	-	○	-	○	-	-
복합 유산	○	○	-	○	-	○	-	-
문화적 경관	△	△	○	△	○	△	○	-
농업 유산	△	△	○	-	-	-	-	○ (농업시스템+생물다양성)
농촌 유산	△	○	○	○	○	○	○	무형유산
농촌 어메니티	○	○	○	○	○	○	○	-

주:1)건조물은 기념물· 유적지· 건축물을, 경관은 인공건조물과 자연의 복합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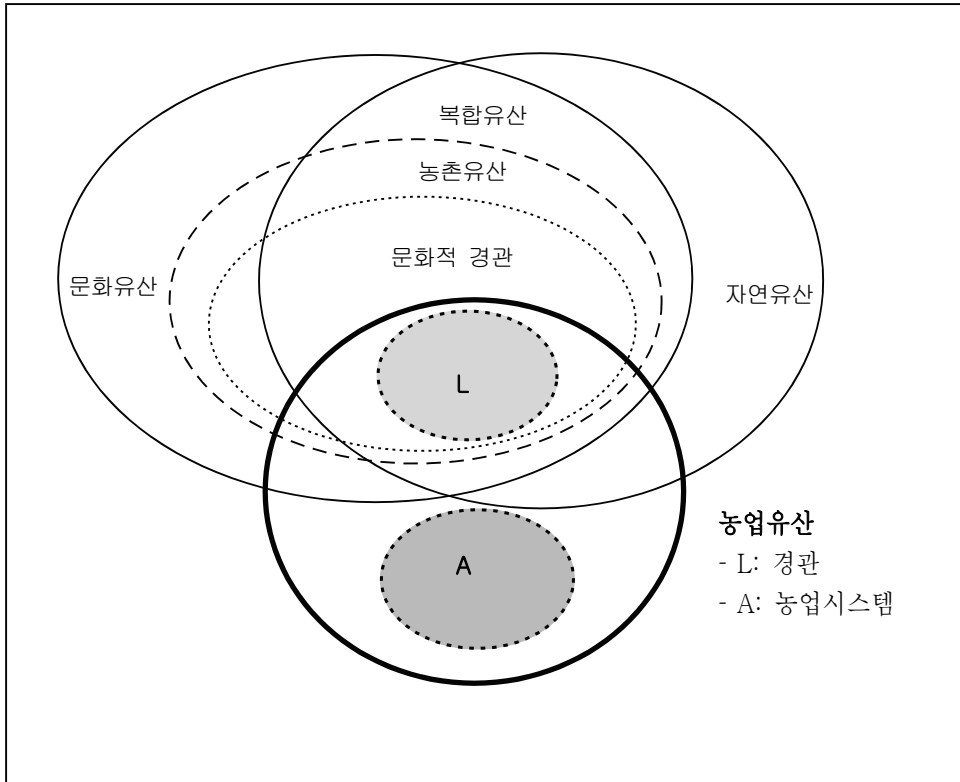
2)○:주 대상으로 지정됨, △: 주 대상의 구성요소로 포함됨.

- 문화유산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개념인 문화적 경관은 농업유산의 개념을 포함할 개연성을 증가시켰다.²⁴⁾ 표에서 보듯이 지정 대상의

24) 특히 유네스코의 문화적 경관 중 제2영역인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s)에는 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이 포함되어 있다.

하드웨어적 요소의 범위에서 보면 문화적 경관이 FAO의 농업유산을 포괄한다. 문화적 경관은 FAO의 농업유산이 대상으로 하는 경관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적 경관에서도 경관(landscapes)이란 단순한 자연경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에 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자연과 인공물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관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에서 보면 두 개념은 차이가 있다. 즉 FAO 농업유산은 전통적이거나 친환경적 농업활동으로 형성된 농업시스템으로서의 토지 및 물의 이용시스템과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중요한 개념요소로 포함하지만 문화적 경관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경관은 농업유산의 개념을 포괄하지 못한다.

- 다음으로 EU의 농촌유산은 경관뿐만 아니라 개체로서의 인공물까지 포함하므로 문화적 경관보다도 포괄범위가 더 넓은 개념이며 따라서 지정대상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만 보면 FAO의 농업유산을 포괄한다. 하지만 농촌유산에서의 경관 역시 문화적 경관과 마찬가지로 경관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로서 농업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FAO의 농업유산과 차이가 있다. 즉 FAO의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으로 형성된 농업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중요한 개념요소로 포함하는 데 반하여 농촌유산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요약하면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의 개념으로는 농업유산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 즉 혼합유산의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문화적 경관이다. EU의 농촌유산 역시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지정대상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보면 FAO의 농업유산을 포괄하는, 농업유산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지정대상의 내용인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FAO의 농업유산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즉 FAO의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토지이용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른 개념들과 별도로 농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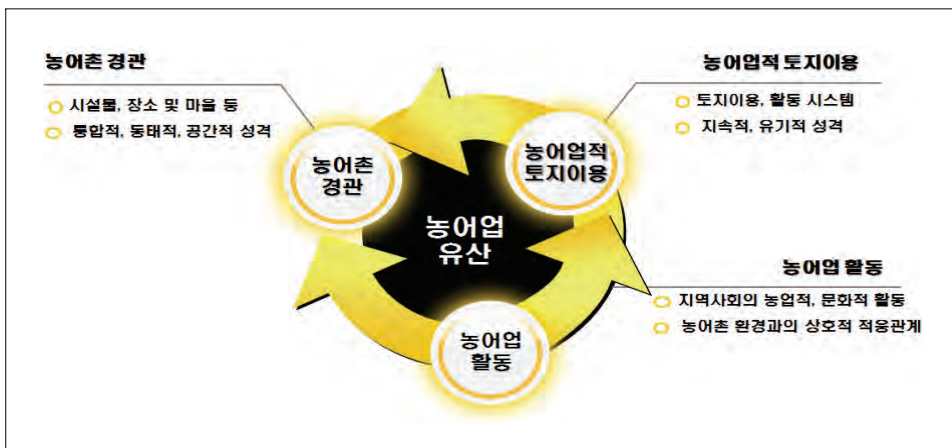
<그림 2-3> 제 개념간의 관계

- 이상과 같은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은 유산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유산정책이 보호지역을 설정하여 원형을 보존하는 패러다임이라면 오늘날은 유산보존이 지역개발 정책의 일환으로서 주민의 참여가 반영되며,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관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 전자라면 FAO의 농업유산은 후자에 해당한다.

제3절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정의 및 범위

1. 개념의 정의

- 앞 절에서는 FAO의 농업유산개념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유산의 개념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FAO의 농업유산은 다른 유산의 개념들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구명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법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해서 정의되는 유산의 개념과 달리 정의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우리의 농어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할 때에는 위에서 검토한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이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은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 경관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핵심적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농어업유산의 개념은 다음의 두 조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도록 정의하기로 한다.



<그림 2-4> 농어업 유산 개념도

- 첫째는 한국농어업유산은 전통적 농어업(활동)시스템을 계승하며 여기에서 현재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전통적 농어업시스템이란 전통적 토지이용시스템 및 수자원이용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농어업기술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적 농어업 시스템에서 ‘전통적’이란 역사성과 시대적 고유성을 가짐으로써 현재의 것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역사성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하자. 즉 우리나라 농촌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예전의 농·어법이 현대적 농·어법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농업시스템이라면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역사성이 오래된 농어업시스템은 대체로 그 시대의 고유한 특징 예컨대 시대적 배경 및 환경, 풍습을 가짐으로서 현재의 것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²⁵⁾ 즉 전통적 농어업 시스템은 현 시대를 앞서 살아간 조상들이 그들이 처한 열악한 자연 조건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고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조상의 지혜, 지식, 풍습 등과 같은 시대적 고유성이 역사성과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첫째 조건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전통적 농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농어업유산을 자연유산, 문화유산, 문화적 경관, 그리고 농촌유산과 구별 짓는 기준이 된다. 즉 농어촌에 존재하는 자연·문화적 요소들이 농어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전통적 농어업활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에 있는 자연·문화적인 요소들이 모두 농어업유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농어업과 관련된 것이지만 유적지만 남아 있고 이것이 현재 생산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농어업유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첫째 조건에서 현재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농어업유산이 지역사회에 대한 생산물의 공급, 지역사회의 유지, 생물다양성의 보존, 지역사회의 문화형성 등의 기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유익함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25) 역사성의 기준으로 60년 또는 100년(고시안)등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역사성의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여 역사성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역사성이 어느 정도 깊은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26)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대부분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시스템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농어업유산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 생물다양성의 조건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으로

- 둘째는 한국농어업유산은 고유하고 빼어난 경관을 지녀야 한다. 이 조건은 농어업유산의 지정이 유형의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때의 경관이란 농림어업인이 자연에 대하여 작용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연속적 복합체(continuum)로서, 농어업 생산지역과 인근의 생물서식지를 포함하는 생태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관은 작물생산 지역과 인근의 자연생태지역이 연결되었다는 의미에서 연속체이며, 대상이 유형의 장소이지만 이와 관련된 무형적 요소들이 그 속에 체화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복합체이다. 무형적 요소는 단독으로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없다. 하지만 유형의 경관에 복합된 형태로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농어업유산은 유형의 경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형의 유산이 유형의 유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무형의 유산이 유형의 유산과 함께 농어업유산의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예컨대 농업적 경관을 조성한 토지이용기술, 농업기술, 축제, 풍습, 또는 장소에 얽힌 이야기 등이 농어업유산의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무형적 요소는 농업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며 유산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작용을 한다.
- 그리고 경관이 고유하고 빼어나다는 것은 다른 유산과 달리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인공적으로 이루어진 토지 및 수자원이용 시스템이 작동하는 생산지역과 인근생태지역이 잘 어울려진 농어업유산지역의 모습이 일반적인 농어촌의 모습보다 다른 특징이 있으며 그 모습이 미적으로 현저히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의 개념은 이상의 두 조건을 충족 시키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즉 한국의 농어업 유산이란 ‘농림어업인²⁷⁾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농업적, 또는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온 보전·유지

간주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농어업시스템에는 농업이외에 어업이 포함되는데 어업활동은 대부분 생물다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유산의 지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조건인 전통적 농업시스템의 계승과 관련하여 이에 수반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27) ‘농림어업인’의 용어 대신 ‘농어촌주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농어촌유산이 아니라 농어업유산의 개념에 대한 정의이니 만큼 농어업유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분명한 ‘농림어업인’의 용어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및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으로 정의한다.

- 예를 들어 청산도에 있는 구들장 논인 경우에 돌과 흙으로 구성된 구들장 논이라는 시설물 자체는 위에서 정의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나 EU의 농촌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농어업유산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농어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전통적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식량의 공급기능이 있어야 하며, 동식물의 다양성이 보전되고 유지되는 생명력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즉 구들장 논이 우리의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농어업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한 미적 경관을 가져야 한다.

2. 개념의 범위

- 이상에서 정의한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은 농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농어업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이에 의해서 형성된 하드웨어로서의 경관이라는 두 가지 개념요소가 복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농어업유산은 무형적 요소로서의 시스템과 유형적 요소로서의 경관의 복합체로 정의되므로 이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별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일체로 지정한다. 이러한 점이 무형요소와 유형요소를 별개로 지정할 수 있는 농촌유산의 개념과 다르다.
- 무형적인 소프트웨어적 요소로는 토지이용시스템, 수자원이용시스템, 생태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의 농어업관련지식 및 기술체계 등과 지역공동체의 농어업 생활과 관련된 풍습, 문화 등의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 유형적 요소로서의 경관은 크게 작물생산지역과 인근주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농어작물생산지역은 다시 농업관련, 축산관련, 어업관련, 임업관련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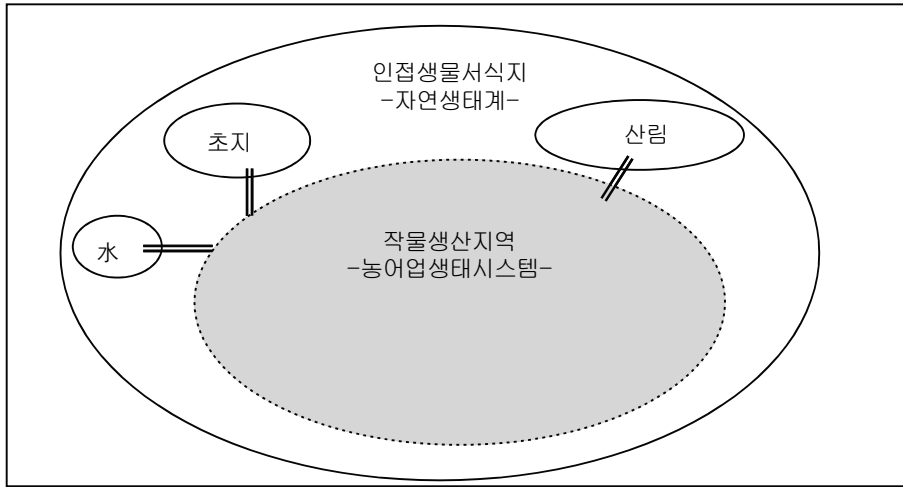
(표 2-4) 농어업유산개념의 구성요소

시스템(소프트웨어)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토지, 수자원 관리 체계 - 공동체의 지식 및 기술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 축산활동 및 물이용과 관련된 경관

- 농업의 경우는 논, 밭 등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논에는 다랑이 논, 구들장 논, 각종 생물다양성의 풍부한 친환경 논 등이 포함된다. 논농사와 관련된 시설물인 둠벙, 어도, 수로, 저수지, 저장시설 등이 구성요소로서 포함되며, 밭에는 친환경 밭, 계단식 밭, 특종작물 재배 밭과 이와 관련된 시설물 예컨대 담배재배지와 담배건조장 등이 구성요소로서 포함된다.
- 축산관련 유산에는 방목지, 채초지, 토종가축사육지 등이 포함되며, 임업에는 생산림, 방풍림, 마을림 등이 포함된다.
- 그리고 어업관련유산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어장, 독살, 갯벌, 염전, 죽방염 등을 들 수 있다.
- 복합유산에는 이상의 서로 다른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논과 수원지, 생산지와 마을 등이 포함된다.

(표 2-5) 농어업유산의 지정대상 분류(예시)

대상의 분류		내 용
농업	논	- 전통적 농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다랑이논, 구들장논, 친환경논, 둠벙 논 등)
	밭	- 전통적인 농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계단식 밭, 담배건조장 등) - 특정의 작물 및 독특한 경작방법과 관련(작목별 시목지 등)
축산		- 전통적 축산활동 및 기술과 관련(방목지, 채초지 등)
임업		- 전통적 임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생산림 등)
어업		- 전통적 어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독살, 염전, 갯벌, 죽방염 등), 어항
복합유산		- 이상의 복수의 서로 다른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논과 수원지, 생산지와 마을) -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의 생산 활동이 조합을 이룬 경관



<그림 2-5> 지정영역의 분류(예시)

3. 한국농어업유산개념의 유효성과 한계

- 2012년에 도입된 한국 농어업유산제도는 FAO의 세계농업유산제도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FAO의 농업유산은 현재 농업 활동이 이루지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경관으로 정의되었다. 한국 농어업유산제도에서의 한국 농어업유산 개념 역시 FAO의 농업유산 개념과 유사하게 전통적 농어업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빼어난 경관으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 한국 농어업 유산은 현재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약하고 있다. 때문에 농촌에 있으면서 현재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농업과 관련된 유적들을 그 대상에서 배제시킨다.
- 그리고 한국농어업유산의 정의에서는 그 대상을 전통적 농업시스템으로 형성된 빼어난 경관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지정대상의 범위를 상당히 제약하는 부분이다. 이 정의에서 보면 한국 농어업유산은 농업 시스템이라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경관이라는 유형의 하드웨어적 요소로 구성된 복합체의 일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형의 유산은 단독으로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농경축제와 같은 무형의 유산이 단독으로 한국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활동을 포함하여 농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한국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일요소도 한국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없다. 예컨대 경관을 구성하는 돌담은 단일체로서 한국 농어업유산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돌담이 한국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농경지를 구분한다든가, 또는 바람을 막아준다든가 하는 농업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 이것을 포함한 농어업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한국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예에서 보듯이 농어업유산의 조건은 다른 유산 제도와 비교할 때 제약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지정조건의 제약성이 강할 경우에는 제도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 다시 말해서 한국농어업유산제도의 지정조건은 농어촌에 있는 많은 유산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만을 선별해 내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 조건을 통과하는 유산은 농촌에 있는 유산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12년 현재 이상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산은 100개 이내로 추정된다. 이들을 잘 관리해 나갈 경우에 이 제도가 다른 제도와 분명하게 차별되는 장점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 제도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농어업유산제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유산들을 순차적으로 선별하여 지정하고 이들을 잘 관리하여 나갈 때 이 제도가 다른 제도와 확실히 구분되는 차별성을 지닌 유효한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이와 같이 유효성을 높이는 강한 제약성의 조건은 부득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한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의 농어촌에는 이상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한국농어업유산에 지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이 상당수 남게 된다. 사실 우리의 농촌에는 한국 농어업유산으로 선정되지 못하지만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유산들이 수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유산들이 한국농어업유산제도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한국 농어업유산제도의 도입이후에 이 제도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있는 EU의 농촌유산제도와 일본의 문화적 경관제도이다. 우리도 이러한 의도를 가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²⁸⁾ 우리의 경우는 EU의 농촌유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EU의 농촌유산제도가 일본의 문화적 경관제도보다는 농어촌에 있는 농어업관련 유산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도입할 새로운 제도를 가칭 ‘한국 농어촌유산 제도’라고 명명할 경우, 먼저 할 일은 ‘한국 농어촌유산’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농어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산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려면 정립해야 할 한국 농어촌유산의 개념은 EU의 농촌유산 개념과 같이 농어촌의 생산 및 생활관련 유산은 물론이고 이외에 무형유산까지도 포함하도록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⁹⁾
- 이러한 의도로 설계하고자 하는 한국 농어촌유산의 개념은 일단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즉 한국 농어촌유산이란 ‘농어촌 주민의 전통적 농림어업활동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지역사회와 차별적이고 독특한 유형·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이렇게 정의된 한국 농어촌유산 제도에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모든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므로 포괄범위에서 농어촌유산의 개념이 농어업유산의 개념보다 더 넓다. 따라서 이 제도에는

28)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국농어업유산제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포괄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 제도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9) EU의 농촌유산개념 속에는 농촌에 있는 것이면 농업생산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그 외의 산업생산과 관련된 것도 포함될 뿐 아니라, 농촌의 문화 및 생활에 관련된 것들도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형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요소도 독립적으로 포함된다.

한국 농어업유산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농어촌의 많은 유산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이렇게 정의된 농어촌유산 제도에는 농어업유산 제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베지, 시목지, 초지 등이 단독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한옥마을, 마을 숲 등이 역시 포함될 수 있다.
- 그리고 농촌에 있는 점적 및 선적 요소로서 예컨대 전통의 담장, 우물, 성황당, 제당, 장승, 첩로 등과 같은 고정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단독으로 농어업유산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유형 자산 중 종교용 제기나 농사용 기구와 같은 유동 자산 역시 농어촌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 이외에도 농어촌유산에는 지역적 전통에 적응된 결과로서 얻어진 것으로서 식물, 과일, 채소 등의 재래종자, 고유축산품종, 전통공예품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더 넓게는 무형요소로서 생산기술, 농약, 농무, 농요, 축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요약하면 2012년에 도입된 한국 농어업유산 제도는 농촌의 귀중한 농어업유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어촌에는 이 제도로 커버하지 못하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들이 많이 남아 방치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일차적으로는 2012년에 도입된 한국 농어업유산 제도를 활용하여 농어촌의 중요한 유산을 순차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을 보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단계로는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을 해당 지자체, NPO, 관련학회 등과 협력하여 세계농업유산에 등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칭 ‘한국 농어촌유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절 농어업유산과 농어촌지역개발

1.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의 동향

- 근래에 들어 지역개발정책에 지역의 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2003년에 EU회원국의 지역개발 관련 부처 장관회의(CEMAT)에서 채택한 유럽 농촌유산 가이드는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농촌문화유산을 자원으로 하는 개발계획의 중요성과 원리를 채택한 바 있다.
- 일본의 경우도 앞 절에서 본 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또는 생산 및 당해지역의 풍토에 의해서 형성된 경관을 문화적 경관으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적 경관에는 농업, 방목, 어업, 물 관리 등의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경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이후의 농촌개발방식은 과거의 농업 중심적이고 도·농간 생활환경의 격차해소에서 농촌이라는 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이른 바 장소지향적(the place-based approach)발전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정부부처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농어업유산을 활용하는 체험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여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유산의 보전이 관광자원이나 지역특산물 등의 형태로 상품화하여 소득을 올리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 유산이 가진 그 외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농어업유산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30)

30) 참여정부에서는 '역사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는 농어업·농어촌 유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 시도된 바 있으나, 보전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 돌이켜보면 농촌의 현대화과정에서 유산의 보존이 지역개발과 대립적으로 간주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농어업유산은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인간의 적응적 과정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산의 보존은 지역발전에 활용될 여지가 크므로 대립적이기보다는 보완적으로 보아야 하는 영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³¹⁾ 그러므로 유산이 지역발전의 엔진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잘 활용하는 방향에서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농어업유산의 농어촌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의 세계적 동향이 개발에서 보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보존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 농어업유산을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어업 유산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 농어업유산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는 농어업유산의 특징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다른 문화재와 달리 농어업유산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즉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적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며, 이로부터 농어업유산의 인간에 대한 기여를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농어업유산은 과거에 식량생산을 위하여 고안된 농어업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그 시대를 살던 농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선택한 최선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지역민이 그들이

31) 그런데 역사적 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공공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지정된 재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문헌들은 역사적인 유산의 보존(preservation), 회복(rehabilitation), 복원(restoration)은 그러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나, 역사지구의 재산 가치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acit Hadi Akdede·Emre Can, 2010; p.135). 우리나라 전남 완도에 청산도의 경우, 2007년 전통과 자연 생태를 슬기롭게 보전하면서 느낌의 미학을 기반으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추구하는 ‘슬로 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비하여 2007년 관광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가파르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99,912명, 2011년 11월 현재 30만을 돌파하고 있다.

처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의지와 노력이 담겨있다. 즉 농어업유산에는 조상들의 생활양식, 삶의 지혜, 전통 문화와 관습, 생물다양성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러한 농어업유산의 특수성이 오늘날 새롭게 주목받게 됨에 따라 이것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유산은 열악한 환경조건 때문에 현대적 농법이 적용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랑이 논, 다락 밭, 구들장 논 등을 들 수 있는데,³²⁾ 이와 같은 종류의 농어업유산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가. 농어촌 경관의 유지 기능

- 농어업유산은 농촌의 경작지를 보존하는 기능을 통하여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FTA 체결이후 효율성의 논리에 입각하여 농촌의 전통적 경작지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전통적 농업생산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보전이 아니라 정리대상이기 때문이다.
- 과거에는 산간지역의 논이나 밭에서 전통적 방식에 의해 다양한 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졌으나 근래에 들어 이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의 전통적 경관을 훼손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 그런데 산간지역의 농업을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보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많은 귀중한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사라졌다. 이것 역시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될 경우 더 큰 가치를 부여받게 되므로 보존될 이유를 가지게 된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농어업유산의 보존이 가능하게 될 경우 이는 식량기반으로서의 농경지를 유지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32) 한국농어업유산은 이들 중에서 아직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도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또한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민의 관광소득 증대에 일조하게 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가치제고 기능

- 농어업유산이 다른 유산과 다른 특징은 높은 수준의 생태시스템을 요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농어업유산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인 동시에 미래의 자산이며 또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 한때는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식량증산이라는 제일 가치에 밀려 일종의 사치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즉 개발 시대에는 생물다양성의 가치제고가 소득증대와 상충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생물다양성의 증대가 곧 소득의 증대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비하여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자연환경과 친환경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생물다양성은 희귀 동식물종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식품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먼저 희귀한 동식물종은 미래에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보존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분야별(식물, 미생물, 버섯, 가축, 곤충 등)로 농업유전자원의 효과적인 관리·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농어업유산은 미래에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희귀한 동식물종의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의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 다음으로 농어업유산의 보존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가치제고와 더불어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늘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활동에 투입되는 각종 유해 생산요소들은 식생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해 식품의 안정성 역시 검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식량의 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적 생산방식과 전통품종을 일정 부분 유지해 두는 게 필요하다.
- 지역에 있는 농어업유산은 이상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차원에서도 농어업유산이 갖는 생물다양성을 강조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의 사도나 노토에서는 생물다양성을 강조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이 지역을 세계농업유산에 등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다. 브랜드가치의 제고 기능

- 한 지역을 대표하는 농어업유산은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능이 있다. 특히 지역의 농어업유산이 국내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경우 그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국내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유산은 한국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도 있다. 이때는 농어업유산이 국내외에 지역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지역의 농어업유산이 가지는 대표성을 잘 브랜딩할 경우 여기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다른 지역의 생산물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는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예산의 경우 황새농법에 의한 친환경 쌀은 일반 쌀에 비하여 30%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사도시 역시 따오기 농법으로 가격상의 상당한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 또한

친환경생산물로 잘 브랜딩 된 지역의 특산물은 오너십 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완도군 청산도의 경우는 구들장 논에서 생산된 쌀을 오너십 제도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라. 고용창출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 이상에서 설명한 농어업유산의 기능(가-다)은 모두 지역으로 도시민을 유치하는 데에 기여하는 요소들이다. 다른 문화재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갖지만 농어업유산은 특히 도시민의 인간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 소득의 증가로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생활에서 상실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다. 농어업유산은 이러한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전통적인 농어업활동, 생물다양성, 그리고 농촌의 전통적 문화는 도시민의 인간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다.
- 특히 농어업유산은 유적이거나 기념물과 같은 과거의 흔적으로서의 문화재와 달리 지금도 농어업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을 가진 유산이다. 즉 농어업유산은 다른 문화재와 달리 수려한 경관을 창출하며, 농업생태시스템과 문화시스템이 작동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유산에서의 체험은 도시민의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업유산을 활용한 농경 문화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은 도시민을 유치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 그리고 이상과 같이 농어업유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전통적이고 친환경적 생산 활동을 통한 경관의 유지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리고 브랜드 가치의 제고에 따른 지역 산출물의 생산 증가 등은 결과적으로 지역고용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참고: 세계유산등록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사례】

◇ 사례①

베트남 호이안(Hoi An)은 199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후, 경제부문에서 관광, 상업, 서비스업이 총 소득의 6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관광객도 증가(1999년 160,314 명, 2000년 199,440명 전년대비 24% 증가, 2001년 363,734명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수입도 증가되었으며 매년 약 13.0%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마을의 GDP비율이 상승, 평균 GDP 성장률(2010)은 12.5%이며 2011년 1인당 GDP는 3,100불이다. 호텔, 식당, 관광가이드, 관광 교통차량(택시, 오토바이, 자전거 대여 등), 기념품 판매점 등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는데 2005년에는 관광 업무에 기여하는 고용자가 9,900명에서 2006년에는 관광 서비스 종사자가 9% 가량 증가된 10,778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호이안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도 고용이 증가되었다. 호이안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이안 주변마을(도자기 특화마을(탄하), 목공예로 특화마을(깁 봉), 목초 및 야채 생산 특화마을(짜께), 낚시와 해산물 생산 특화마을(안방))의 생산품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Huynh Hoa Thuy Tien(2011) RESIDENTS'S PERCEPTIONS OF IMPACTS OF INTERNATIONAL TOURISTS TO COMMUNITY IN THE WORLD HERITAGE SITE OF THE ANCIENT TOWN OF HOI AN, VIETNAM)

◇ 사례②

일본 교토부 미야쯔시의(京都府宮津市)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1년간 오사카부에 약 360억 엔(약 5,400억 원), 사카이시에 약 169억 엔(약 2,50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으며, 고용창출효과에 있어서도 오사카부에 4,169명, 사카이시에 2,186명에 이른다. 또한 관광객도 세계유산등록에 의해 약 20%의 증가하였다.

(일본 간사이대학대학원 회계연구과 분석 결과)

◇ 사례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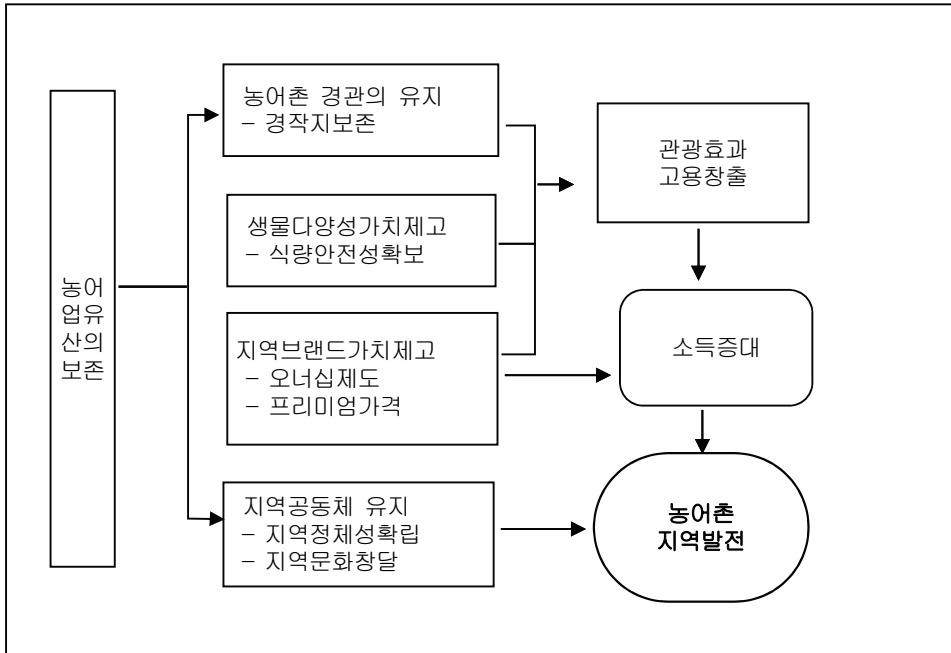
유네스코에 등재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에서 관광객수에 변화가 있다. 하회마을의 경우는 등재 전년도(2009년)에 비해 등재년도인 2010년에 37% 증가, 양동마을의 경우는 약 100%가 증가되는 등 유네스코 등재 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1. 12. 15자)

◇ 사례④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 성산일출봉 등 세계자연유산지구 탐방객이 등재 후 5년 동안 95.4%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탐방객은 약 300%가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2012. 7. 2자 보도자료)



<그림 2-6> 농어업유산의 보존과 농어촌지역발전

마. 지역공동체의 유지 기능

- 전통적으로 우리 농촌의 소농구조는 농촌의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여 왔다. 하지만 농업개방이후 농업의 기계화, 대단위 영농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농구조가 와해되고 이에 따라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 소농에 기초한 농어업유산은 지역사회의 공통적 생산 및 생활기반이 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공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농어업유산의 보존으로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이는 와해되어 가는 우리의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더욱이 지역의 농어업유산이 국가적 대표성을 얻어서 한국 농어업 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속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의 창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민의 이농이 방지되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초래되면 농어업유산의 보존이 농촌이 처한 고령화, 생산인구감소 등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농촌공동체의 유지와 이에 따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³³⁾

3. 농어업유산의 활용 방향


- 오늘날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농촌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향후 지역개발 정책에서는 농어업유산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농어업유산이 발굴되었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때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역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역개발정책의 중심으로 가져와 이를 적극 활용하는 데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
- 지역발전정책에서 농어업유산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첫째, 농어업유산은 규제보다는 활용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업유산의 원형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농어업유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어업유산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곧 이를 보존하는 것이므로 규제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업유산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농어업유산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산출물의 판매이외에 농어업유산이 가지는 도시민을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전통농경체험의 장으로서의 기능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농어업유산이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이외에도 농어업유산은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 자긍심 및 정체성 발견, 교육적 가치제도 등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지역에 국한하여 설명하였다.

- 둘째, 농어업유산의 활용은 자체의 생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민의 친환경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농어업유산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이 가격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농어업유산 지역의 생산을 자극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어업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는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유산지역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의 작용은 농어업유산의 자생능력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도시민의 농어업유산의 산출물에 대한 오너십 제도는 유산의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데기 기여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은 이와 같은 농어업유산의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시스템을 생성·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셋째, 농어업유산이 가지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지역정책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개발연대에는 식량증산에 제일의 가치를 두다보니 화학비료, 농약 등이 과다 투입되어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었다. 즉 이 시기에는 식량증산이 제일 목표로 강조되는 과정 속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이라는 목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농법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전한 식량생산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즉 식량증산과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 따라서 향후 지역개발정책에서는 농어업유산이 갖는 생물다양성의 기능을 더욱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시대에 사라졌던 셋강, 습지, 갯벌 등을 복원하는 사업 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농어업 생태계가 건강해지면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 보듯이 생태계의 맨 상위에 위치하는 생물종을 복원하는 작업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지역정책에서 농어업유산이 가지는 복합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업유산은 특성상 다원적이고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농어업유산의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농어업유산이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농어업유산의 안전한 식량공급기능, 생물다양성의 보존기능, 경관의 유지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등이 다원적으로 작용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농어업유산을 활용할 때는 농어업유산의 이와 같은 복합적인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상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지역정책의 수립 시에 그 지역의 농어업유산만이 갖는 독자적인 매력을 찾아내고, 이를 잘 부각시켜 지역의 개성을 창조해 낼 경우 농어업유산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

농어업유산의 실태조사 분석

제1절 관련정책 및 제도 분석

제2절 기존 농어업 유산관련 자원의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제3장 농어업유산의 실태조사 분석

제1절 관련정책 및 제도 분석

1. 개요

- 농어업유산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로는 문화재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이 있다.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인 문화재³⁴⁾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유산도 일부 문화재로 포함되어 관리하고 있다.
 - 환경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녹색 국가 건설을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국제환경협력 강화, 국민이 참여 하는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농어촌 지역의 환경자원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각종 계획 및 관리방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도 국토 및 도, 시·군구에 포함되어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 문화보전·계승 및 지역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가칭)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추진하고 있다
- 각 부처별 농어업유산 관련 정책의 근거법 및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각 부처별 관리유산의 지정범위,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의 지정과정과 지원 및 규제 중심의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생생문화재 사업’ 등과 같은 문화재자원 활용을 위한 세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34)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을 말한다(문화재법 제 2조).

-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에 생태경관 및 습지 지역 보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계약 및 국제협약 등을 통한 관리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유산관련지역의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을 통한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어업유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2년 11월 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별도의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농어업유산 관련 정책 및 제도 환경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문화재청

가. 법·제도

- 농어업·농어촌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활용 등과 관련한 법률은 「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등이 있다.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문화재의 지정, 관리, 관리 주체 및 주체별 역할, 문화재 지정에 관한 요건 및 지정에 따른 지원 및 규제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 및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를 분류하고 있다.

- 문화재 성격에 따른 분류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문화재 지정자에 따른 분류 :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 및 국보, 주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³⁵⁾할 수 있다.
- 문화재 관리 및 보호는 문화재기본계획 수립과 보존지역의 지정, 문화재 보호 및 교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문화재청장은 매 5년마다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지정하여 문화재 외곽경계지역의 주변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고, 화재 및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그 밖에 문화재 보호재단의 설치(제9조), 문화재 보호활동 관련단체 지원(제15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제17조),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제 17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관련 정책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매 10년마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수립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이어 2012년 새로운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35)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2011년 11월 기준 3,847건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 국보 313건, 보물 1,690건, 사적 481건, 명승 82건, 천연기념물 422건, 중요무형문화재 114종목, 중요민속문화재 264건, 등록문화재 481건 등 이다.

- 지난 2002년 수립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과제는 ① 원형보존, ② 체계적 관리, ③ 효율적 활용 이며 각각의 목표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 문화재청 2012년 정책목표는 ① 문화재 보존·관리의 고도화, ② 문화재 향유의 다양화·고품격화, ③ 문화재 환수 및 교류의 내실화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재 활용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활용사업에 대한 지원과 스마트폰 앱 등의 문화재 관련 정보 공급 다각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다루고 있다.
-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문화재 보존·활용 등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문화유산 국민신탁,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참여 유인책을 강구하고 국제적 경쟁 심화에 따른 문화유산 주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3-1) 2012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문화재 보존·관리의 고도화	○ 문화재 보존·전승제도 개선 √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조성 ○ 예방적 문화재 관리 및 방재체제 구축 ○ 조사·연구 및 지방·민간 역량 강화	▶ 생생문화재 사업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
문화재 향유의 다양화·고품격화	○ 디지털을 이용한 문화재 활용 서비스 강화 √ 문화재 활용자원 확대·고품격화 ○ 소외계층 문화재 향유 환경 조성	
문화재 교류 및 환수 내실화	√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 품격 제고 ○ 국외 소재 문화재 체계적 환수·활용 ○ 문화재 교류를 통한 남북 소통 여건조성	

-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한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의 제도적 장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문화재 활용자원 확대·고품격화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표 브랜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생생문화재’ 사업과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생생문화재 사업은 활용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지자체 중심의 다양한 지역문화축제와 연계된 문화재 활용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이다.
 - 2008~2010년까지 총 61건, 11.5억원의 사업비³⁶⁾가 지원되었고, 농어업 유산과 관련하여 신안 염전, 제주 돌담, 김제 벽골제, 남해 죽방렴 등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 품격 제고를 위하여 우리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36) 사업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사업비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방식
사업비	◦ 2008년 4개 우수사업 선정, 총 1억원 지원 ◦ 2009년 8개 우수사업 선정, 총 2억원 지원 ◦ 2010년 8개 시범사업, 21개 우수사업 선정, 총 8억5천만원 지원

* 2010년부터 ‘우수사업 발전형’과 ‘시범사업 육성형’으로 이원화하여 지원예산 규모나 사업 수를 차등해서 지원함

중앙정부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예산지원	◦ 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2천만원~3천만원 지원 ◦ 사업 심사선정회의를 통해 금액과 사업 수 확정(20개 내외, 2010년 기준)
운영지원	◦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문화재청 활용컨설팅단 운영)
행사후원	◦ 문화재청 후원 명칭 및 로고 사용승인, 문화재청장 상장 수여(필요시)

(표 3-2) 2010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 대상 현황

구 분	사업명	세부프로그램	주관단체
신안 태평염전 (‘10년)	바다의 기억이 지워지면 소금이 온다	소금밭체험 염전전시회(회화) 소금찰흙공예	소금박물관
제주 돌담 (‘10년)	제주 돌담 문화재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문화재 생생사업 홍보 돌담 기능 보유자 자료발간 제주 돌담 문화재 바로알기 돌담 쌓기 체험 및 코스별 과제 해결	제주문화재 지킴이
김제 벽골제 (‘10년)	쌍룡의 울부짖음으로 벽골제를 깨우다! 김제벽골제 생생체험	해설사와 함께하는 벽골제 역사탐방 장생거 수문모형 만들기 벽골제 제방 연날리기 설화속 쌍룡만들기 박물관속 벽골제 보기 방문객과 함께하는 쌍룡놀이 공연 한옥데마마을에서 함께하는 1박2일	김제문화원



<그림 3-1> 신안 태평염전 사례




<그림 3-2> 하동 소나무배우기 사례

다. 지정과정

(1) 지정범위

-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내용상 4개 범주,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4개 범주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이다.
 - 8개 유형은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이다.
- 공간단위로는 점·선·면적인 대상으로 구분 가능하며, 면적대상에 점적·선적 대상물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들 간의 유기적인 상관성은 적다.
 - 예컨대 명승 제 15호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은 작물, 농법, 마을 등을 제외한 다랑이논만 지정대상이며, 명승 제 16호인 「예천 회룡포」는 주변 하천만 문화재 보호 대상이다.

(표 3-3) 문화재 지정범위

구분	점적대상	↔	면적대상
유형문화재	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념물	천연기념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민속문화재	중요민속자료(민속마을 포함)		
 농어업 유산의 주요 대상			



<그림 3-3> 남해가천마을 다랑이논 문화재 지정범위



<그림 3-4> 예천 회룡포 문화재 지정범위

(2) 지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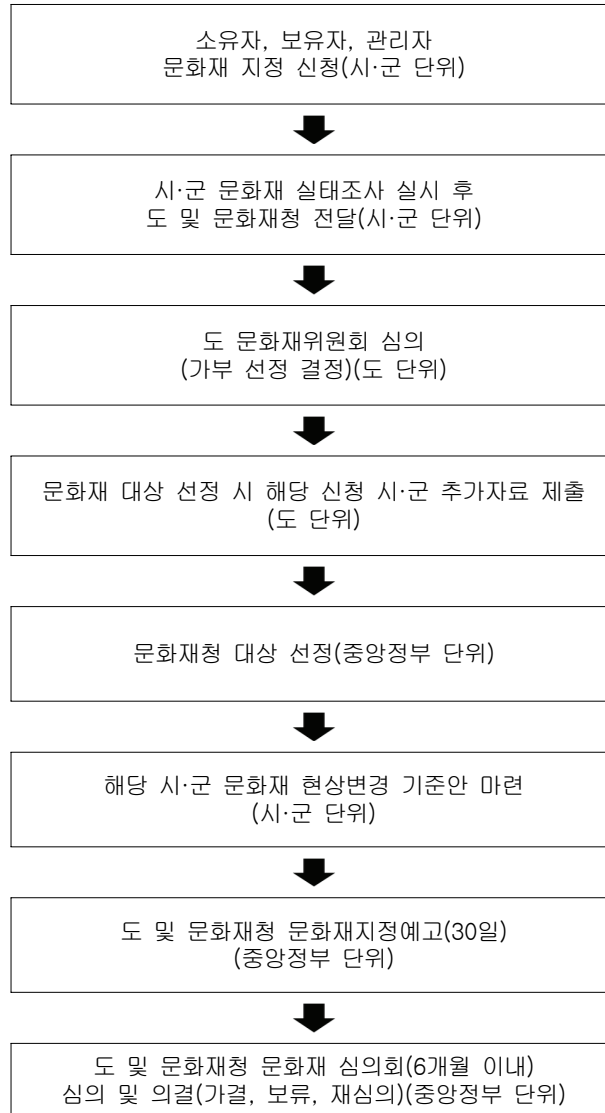
- 농어업 유산과의 관련성이 높은 명승, 사적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명승은 유적보다는 자연의 기념물적 요소의 비중이 더 큰 것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의거, 지정기준은 ①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景勝地) 또는 원지(苑地), ② 화수(花樹)·화초(花草)·단풍 또는 조수(鳥獸)·어충류(魚蟲類)의 서식지, ③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深淵)·폭포·호소(湖沼) 등, ④ 저명한 해안·하안(河岸)·도서, 기타 경승지, ⑤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⑥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등이다.
- 사적은 기념물 가운데 역사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지정 대상은 ① 선사 시대 유적으로 패총·집터·지석묘·입석(立石)·고분·혈거지, ② 제사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 제단·절터·사고지(史庫址)·향교터·사우지(祠宇址), ③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 성곽·성터·관문터·봉수대·옛 전쟁터·궁터·도읍터·고도(古都)·고궁(古宮)·수영터, ④ 산업 교통에 관한 유적으로 옛 길·뚝·제방·요지(窯址)·시장터·교지(橋址)·식물 재배지·석표, ⑤ 교육 사회 사업에 관한 유적으로 서원·사숙·자선 시설 등, ⑥ 기타 유적으로 원지(苑池)·옛 집터·분묘·정천(井泉)·비(碑)·전설지 등이 있다.
- 기본적으로 농어업 유산의 대상을 되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어업 유산의 지정 기준은 식량생산기능을 갖춘 경작행위, 경작지(공간), 농법(기술)을 포함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재의 지정 기준과 차별성을 지닌다.
- 문화재 지정시 평가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지정 신청 시 해당 문화재의 담당자에 의해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문화재 지정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예정) 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여 이를 근거로 판단한다.

- 판단의 주요 근거는 유산의 가치성이며, 가치성은 보존상태의 양호 여부보다 우선된다.

(3) 지정절차

- 국가지정 문화재(명승, 사적, 천연기념물)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계 전문가의 1차 조사를 거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다. 신청권자는 통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해당하며 명승의 경우 시·군의 지정 신청보다 문화재청을 통한 국가 수준에서 지정을 권고한다.(시·군 단위)
 - 지정신청 시 관계 전문가의 1차 조사를 거쳐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① 문화재실태조사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 ② 사진대장 ③ 위성사진 ④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⑤토지대장 ⑥ 토지등기부등본 ⑦ 기타 참고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한다.(시·군 단위)
 -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부 결정 후 해당 문화재 지정 대상의 추가자료 제출한다.(도 단위)
 - 문화관광부에 제출(문화재청에 제출)한다.(중앙정부 단위)
 - 문화재청은 약 30명의 전문위원 중 3명의 위원(전공자)을 통한 조사 및 대상지 선정을 실시한다.(중앙정부 단위)
 - 해당 시·군에 선정된 대상지를 보내면 해당 시·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안」을 마련하여 다시 제출한다.(시·군 단위)
 - 문화재청은 해당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기 전 30일 이상 관보에 지정예고를 하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중앙정부 단위)
 - 이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가결, 보류, 재심의).(중앙정부 단위)
 - 지정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지정 효력 기간은 6개월로서 그 기간 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후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중앙정부 단위)

(표 3-4) 문화재 지정절차



라. 관리(지원 및 규제)

○ 지원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원형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이다.
- 문화재 보호법 51조 보조금 항목에 의거,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토지매입과 보수 정비를 지원한다.
- 지원 비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와 도 및 기초자치단체가 7 : 3 수준이다.
- 토지매입은 소유주가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매입을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보수정비는 당해 문화재가 훼손되었거나 훼손위험이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보수 또는 주변정비(배수로 정비 등)를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그 밖에 문화재 보호법 제41조, 50조, 51조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 전승지원금 지급, 기·예능 공개행사 비용 보조, 민간단체 행사 국고보조 등을 지원한다.

○ 규제

-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 및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현상변경시 문화재 보호법 제3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문화재의 경우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검토, 처리한다.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미고시된 문화재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검토를 받아 검토, 처리한다. 단 1/2이상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환경부

가. 법·제도

- 농산어촌의 자연유산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등에 의해 보호 관리된다.
 - 「환경정책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습지보전법」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의 주요 생태경관에 대한 지정 및 보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제 12조).
 - 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지형 및 지질의 특이성,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보전의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보호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보전지역내 토지매수, 보전지역의 주민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매 10년 마다 환경부 장관에 의해 수립하여야 한다.

나. 관련 정책

-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을 통해 국토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방향은 ①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②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국토관리체계 구축,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강화, ④ 생태계와 인간이 어우러지는 한반도 자연환경 조성, ⑤ 자연환경관리 기반 구축, ⑥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 일부 농어촌의 환경자원의 경우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포함되어 지원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행위 등에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였다.
- 환경부의 국토전반에 대한 자연보전의 정책방향 속에 농산어촌의 환경자원에 대한 관리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 자연보전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정책, 자연자원, 국토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4가지 분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환경 및 생태 자원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 정책, 생태우수지역 관리, 생태관광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 ‘자연생태우수마을’사업(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은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자연자산을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해 2001~2010년까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을 선정하였다.

- 환경부 2012년 주요 정책 목표는 ①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②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③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이다.
-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의 세부과제로 ‘생태 및 경관에 대한 국민수요 충족’과 ‘생물자원 보존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5) 2012년 환경부 주요업무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 주민 불편·불안 생활환경 개선 ○ 깨끗하고 즐거움을 주는 물환경 조성 ○ 취약 계층·지역 물복지 증대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녹색성장 내실화 및 성과 확산 ○ 자원순환 사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정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및 경관에 대한 국민수요 충족 ○ 국토 환경가치 창출 √ 생물자원 보존 및 이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업 ▶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사업

- ‘생태 및 경관에 대한 국민수요 충족’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생태보호지역 6개소, 람사르습지 1개소 추가, 국립습지센터 개원 예정)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생태관광지 지정 및 순천만, 우포늪 숙박형 생태체험시설 에코촌 조성)를 추진하고 있다.
- ‘생물자원 보존 및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물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업,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제27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54조 국고보조)에 근거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등 행위규제 위주의 직접규제 방식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업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보전대상 야생동식물의 보전, 증식, 복원, 방사하기 위한 증장기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종의 보전 및 복원(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은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고유 생물종 보전 및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토 환경조성, 국민들의 생태체험·관찰 및 자연학습 등 기회 제공으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 인식을 목적으로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지원).

(표 3-6) 환경부 2012년 생물자원 보존 및 이용 확대 관련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지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보호지역 및 인근지역(특히 철새 도래지 등)	○ 생태계 보호·관리에 대한 계약 체결 ○ 생태계우수지역관리계약, 경작관리계약(보리), 보호활동관리계약(담수조성 등)	○ 계약대상지역 및 인근 토지 임대료 범위 내 ○ 면적당 단가(원/ha) ○ 국고 30% 수준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업	○ 한국황새복원 연구센터 외 20개소	○ 조사연구, 인공증식 기술개발, 복원에 필요한 여비, 인건비, 장비 구입비(소모성 부품) 등을 지원	○ 2010년 기준 2,383백만원 지원 ○ 국고 30% 수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사업	○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법적행위 규제지역 ○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 기타 생태체험·관찰 및 생태학습 등이 가능한 지역	○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시설 ○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교육·홍보 또는 관리시설 ○ 기타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Matching Fund 부담 ○ 국고보조(소요사업비의 50%)

다. 지정과정

(1) 지정범위 및 기준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경관보전지역³⁷⁾이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곳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전이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은 2011년 현재 35개 지역, 362.525km²에 이른다.
- 습지보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37) 2011년 기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은 35개 지역, 362.525km²이다(환경부 지정 9개소, 241.613km², 해양수산부 지정 4개소, 70.373km², 시·도지사 지정 : 22개소, 50.539km²).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정	
환경부 지정	지리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20.20	극상원시림 (구상나무 등)
	설진강 수달서식지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	1.83	수달 서식지
	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원	8.78	붉은박쥐 서식지
	동강유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선군 정선·신동읍, 평창군 미탄면 일원	72.85 (7.88)	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왕피천 유역	경북 울진군 서면, 근남면 일원	102.838	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소항사구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독산리 일원	0.121	해안사구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하시동·안인 사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일원	0.234	사구의 지형·경관 우수
	운문산	경북 청도군 운문면 일원	26.395	경관 및 수달, 하늘다람쥐, 담비, 산작약 등 멸종위기종 서식
국토 해양부 지정	거금도 적대봉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일원	8.365	멸종위기종과 특경야생동식물 서식
	신두리사구 해역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원	0.639	다양한 식생과 특이한 지형
	문섬 등 주변해역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법환동, 서귀동, 토평동, 보복도 일원	13.684	국내 유일의 산호군락지 다양한 해조류 군락 존재
	오륙도 및 주변해역	부산 남구 용호2동 936~941번지 및 주변 해역	0.35	기암괴석의 무인도서 및 수직암반 생물상 보호
대이작도 주변해역	인천 옹진군 이작리 및 승봉리 일원 해역	55.7	뛰어난 자연경관 및 수산생물과 저서생물 주요 서식지	

*()은 추가 지정면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또한,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1년 기준 총 28개소 332,726km²이며, 그 중 내륙습지 16개소(환경부 관리)과 연안습지 9개소(국토부 관리), 지자체 지정습지 3개소(지자체 관리)가 있다.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한강반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및 마포구 당인동 314	0.241	철새도래지, 서식지
둔촌동 자연습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1	0.025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방이동습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439-2 일대	0.059	도시지역의 습지
탄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및 강남구 수서동	1.405	도심속의 철새도래지
진관내동습지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78번지 일대	0.017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암사동습지	서울 강동구 624-1 일대	0.103	도시지역의 하천습지
고덕동 한강고수부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 396 일대 서울 강동구 강일동 661일대 (고덕수변 생태복원지 ~ 하남시계)	0.320 (0.215)	다양한 자생종 번성 제비, 물총새 등 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조류서식
청계산 원터굴	서울 서초구 원지동 산4-15번지 일대	0.146	갈참나무를 중심으로 낙엽활엽수군집 분포
현인릉 오리나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일대	0.057	다양한 자생종 번성
남산	서울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산1-5일대	0.705 (0.345)	신갈나무군집 발달 남산 소나무림 지역
불암산 삼유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23-1일대	0.204	서어나무군집 발달
창덕궁 후원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1일대	0.441	갈참나무군집 발달
봉산 팔배나무림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산93-16	0.073	팔배나무림 군락지
인왕산 자연경관	서대문구 홍제동 산1-1일대	0.258	기암괴소나무가 잘 어우러지는 수려한 자연경관
성내천하류	송파구 방이동 88-6 일대	0.700	도심속 자연하천
관악산	관악구 신림동 산56-2 일대	7.482	회양목군락 자생지
백사실 계곡	종로구 부암동 산 115-1 일대	1.326	생물다양성 풍부
태화강	울산시 태화강 하류 일원	0.983	철새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
대덕산금대봉	강원도 태백시, 삼척군, 정선군	4.20	희귀야생동·식물 집단 서식지
광양백운산	전남 광양군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	9.74	자연경관수려 및 원시 자연림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	경기 가평군, 포천군	21.84	희귀곤충상 및 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
거제시 고란초서식지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산 144-3	0.002	고란초 집단자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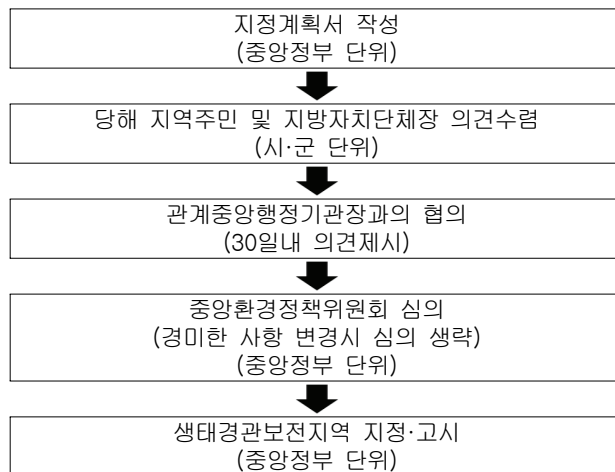
*()은 추가 지정면적

-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2011년 기준 대암산 용늪, 우포늪, 물영아리 오름, 두웅습지, 강화 매화마을 군락지 등을 포함한 총 16개소 145.455km²에 이른다.
- 그 밖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특정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하고 있다.

(2) 지정절차

- 「자연환경보전법」 제 13조에 의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① 지정사유 및 목적, ② 지정면적 및 범위, ③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④ 토지이용현황, ⑤ 핵심구역·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 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중앙정부 단위).
- 당해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수렴(30일 이내)을 한다(시·군 단위).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고시한다(중앙정부 단위).
- 습지보호지역은 법 제8조에 의거한 지정절차를 거치며 시·군단위 의견수렴 시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다.

(표 3-7)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라. 관리(지원 및 규제)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지원 및 규제는 ① 토지매수, ② 주민지원 및 손실보상, 이용료 징수, ③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토지 등의 매수 및 주민지원(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은 다음과 같다.
 -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매수
 -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지역을 우선적 이용
 - 지역주민 지원

(표 3-8)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지원(동강유역 프로그램)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동강 생태주택 개량사업	국고보조 80%, 친환경 주택관련	지식경제부
동강유역 지역주민 해외연수	강원도	강원도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 100%	농식품부
지역주민 소득 증대방안	마을 주민공동으로 야생화 단지조성시 매입토지 임대 및 종묘지원(원주청)	환경부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	연차적 매입 전액 국고보조(100%)	환경부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설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 지원(50%)	환경부
동강관련 정보공개 창구개설	원주청	환경부
동강유역 래프팅사업	동강유역 4개구간 래프팅허용	환경부
동강유역 생활하수 사업추진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국고지원(70%)	환경부, 농식품부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법 제 37조)를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국고보조(법 제 57조)와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법 제57조)을 제시하고 있다
-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습지보전 및 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습지보전법 제 18조)할 수 있으며 습지조사에 의한 손실보상을 보장(법

제18조)하고 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개발행위, 영농행위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손실범위에 비해 제한적이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의 민간단체 육성과 같은 지원책은 없다.

- 특히, 우포늪의 경우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람사르 협약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국내외의 각종 사업지원(GEF(지구환경기금)에 의한 사업 등)이 가능하다.

○ 지정지역에 대한 규제는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1항 및 제16조), 습지보전법(제 13조, 14조, 15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대표적인 제한행위는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며 금지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 습지보전법에서는 규제행위에 대한 규정 외에 습지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습지에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법 제 15조).

(표 3-9) 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 상의 관리현황

구 분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지정·변경지정·해제		환경부 장관	법 제12조		법 제8조, 제10조
계획 수립·시행		유역(지방)환경청장	법 제14조		법 제11조
관 리	-행위제한 -행위중지·원상회복 명령 -생태계 복원대책 수립·시행(출입제한) -위임사항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이용료 징수)		법 제61조 영 제52조제2항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토지 등의 매수		사·도지사	법 제61조 영 제52조제1항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장 관

※()는 습지보호법

4. 국토해양부

가. 법·제도

- 농어업·농어촌 유산 관련 법률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국토 활용 및 경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별도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및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등이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및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 농어업·농어촌 유산 자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되며, 지역의 관리 방향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 농어업·농어촌 유산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역사 및 자연환경 보존 측면에서 “보존지구”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 등으로 지정 가능하며, 기존 촌락의 보호 측면에서 “취락지구” 중 자연취락지구 및 집단취락지구 등으로 관리 가능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나. 관련 정책

- 농어업·농어촌 유산 관련한 정책 사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5. 농림수산식품부

가. 법·제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농어촌의 문화역사 및 생태자원 자원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제정하였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농어업 유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법은 마련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 각 법에서 농어업 유산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어업 문화, 농경·어업 유물, 전통 농법·어법, 재래가축·농작물·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 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어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에 의거한 농어업 유산 관리를 위한 협정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
- 그 밖에 법률에서는 농어업 유산관련 정의, 보전 및 관리(보전관리), 활용, 규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표 3-10) 농어업 유산 관련 법률 현황

구분	정의	보전 관리	활용	규제	연구 개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기본법	○				
산림기본법 시행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농어업 유산 자원이 농촌, 어촌, 산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부처에 관계없이 공간단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그러나 농어업 유산의 체계적인 지정, 관리 및 보호를 위해서는 단위사업으로서의 근거법(또는 지침)보다는 농어업 유산 나아가 농어촌 유산을 아우를 수 있는 적법한 법률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관련 정책

- 농식품부 2012년 정책목표는 ① 체질개선·미래준비 ② 활력창출·생활안정 ③ 소득안정·위험관리 ④ 안전식품·안정공급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활력창출 및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지원’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농어촌 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방앗간, 마을서원, 폐교 등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농어촌 문화 공간”에 대한 시범사업지구(6개소)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지원에서는 체계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농어업·농어촌 문화보전·계승 및 지역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가칭)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 유산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 유산 범위, 지정 기준·절차, 사후 관리·활용 방안 등 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방안 마련하여 지자체(시·군)에서 신청한 향토자원에 대해 전문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농어업 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표 3-11) 201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체질개선·미래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 ○ R&D 지원 및 성장동력 확충 ○ 수산업 체질개선 ○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 	
활력창출·생활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인력육성·유입·지원 체계화 √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지원 ○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있는 마을 사업 ▶ 논, 습지 생물다양성 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도농교류 및 농어촌 관광사업
소득안정·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 동물질병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 ○ FTA/DDA 대응 강화 	
안전식품·안정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 ○ 안정적인 식량공급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이 밖에 농어업 유산과 관련하여 농어촌 정책개발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책개발시 고려해야할 주요 농어촌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농어촌 자원은 첫째, 농어업 활동이 수자원 함양, 홍수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다양한 생물종 보존 등 생태·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고, 농작물은 산·강 등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둘째, 농어업의 특성과 지역에 기반을 둔 전통문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민의 휴식과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환경·경관개선을 위한 경관직불제를 작물위주에서 마을경관, 역사문화자원 등을 고려한 경관으로 재고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한편 농어업 유산과 관련하여 농어촌 정책, 지역개발, 농어촌 사회, 농어촌 산업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각종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비롯하여 색깔있는 마을 발굴·육성사업, 논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기반 조성방안 연구 사업(2011년 종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축제지원사업, 도농교류 및 농어촌 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2) 농식품부 농어업 유산 관련 추진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색깔있는 마을 발굴·육성사업		○ 농어업 특산품, 경관, 체험·관광, 전통문화, 음식, 축제 등 색깔있는 마을 1만개 발굴·육성	농어촌정책
	농촌개발 시험연구사업	○ 논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기반 조성방안 연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권역단위의 농촌마을의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성장과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지역개발
농어촌 축제지원사업		○ 농촌축제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추진	농어촌사회
도농교 류 및 농어촌 관광 사업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인프라 조성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촌 관광 휴양 자원 개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농어촌 산업
	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사업	○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체험마을 종합지원, 체험마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촉진사업	○ Rural-20 프로젝트, 도농교류 우수모델 개발 및 보급, 도농교류 협력사업 등	

6. 시사점

- 농어업 유산과 관련한 주요 부처의 법·제도 및 추진 정책을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첫째, 각 부처는 유산관리를 위한 사항을 근거법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법」을 통해 유산의 발굴 및 지정, 체계적인 관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을 통해 보전지역 및 관리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 지침을 통해 농어업유산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산관리를 위한 통합적 근거법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 둘째, 각 부처는 자원(유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문화재청 및 환경부는 자원(유산) 관리범위를 해당 자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완충지역을 두어 점층적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재청은 유산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민간활동 지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유산관리 전략 등을 구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산활용을 위한 단위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 환경부는 우포늪과 같은 중요 보전자원에 대해서는 생태경관보전 지역, 습지보전지역, 국제협약 지역 등과 같이 중복지정을 통한 관리강화 및 지원방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패키지화된 사업지원(타 부처 사업 포함)을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 셋째, 각 부처는 자원(유산) 범위 및 관리에 있어 농어업유산과의 일부 중복을 보이고 있으나, 자원(유산)의 공간 및 활동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농어업 유산은 문화재청의 사적, 명승, 중요민속자료 등의 문화재와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 제 3조에 의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작물, 작물경작지, 경작기술, 경작활동 등 공간과 활동을 통합하는 유기체적인 성격의 농어업유산과의 차이를 보인다.
 - 또한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 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에서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보존중심의 관리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을 바탕으로 주요 부처의 농어업 유산 관련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 (지정대상의 성격)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각 부처는 자원(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
- 둘째, 그러나 자원(유산) 보존 목적에 따라 지정대상 및 지정대상의 성격에는 차이를 보인다. 즉 문화재청은 지정대상의 공간단위와 행위활동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최근의 일부 정책을 통해 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거나 ‘유산의 원형 보존’이라는 지정 목적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면 환경부는 지정대상의 공간단위와 행위활동을 포함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행위활동은 자연적 활동 중심이다. 농식품부는 자원(유산)의 공간단위와 인위적 행위활동을 포함하며 인위적 행위활동에는 반드시 ‘농어업 기술’이 포함된다.
- 셋째, 농식품부의 농어업 유산은 타 부처의 자원(유산)과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자원(유산)의 대상과 관리의 범위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다. 특히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의 천연보호구역과 환경부의 생태경관보전지역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창녕 우포늪은 문화재청의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524호, 2011년 지정)과 환경부의 생태경관보전지역(1997년 생태계 특별보호구역 지정, 1999년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농어업 유산도 타부처와 지정대상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농어업 유산의 지정목적 및 ‘농어업 기술’이라는 지정대상에서는 확연한 구분을 보인다.

(표 3-13) 농식품부와 타 부처와의 자원(유산) 지정목적 및 대상 비교

구분	지정목적	지정대상 및 성격
문화재청	문화재의 원형보존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승 - 자연의 기념물적 요소가 큰 것 (공간단위) ◦ 천연기념물 - 동물, 식물, 지질 및 광물,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 (공간, 공간 + 자연적 행위 단위) ◦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제작 및 수리 등의 기술) (행위, 기술, 공간 + 인위적 행위 또는 기술 단위)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 (보전 + 소극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상태의 원시성, 생물다양성 풍부한 지역 ◦ 지형 및 지질 등이 학술적 자연경관유지에 필요한 지역 ◦ 생태계 표본지역 (공간 + 자연적 행위 단위)
농식품부	농어업 활동의 지속가능성 (보전 + 적극적 관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 (공간 + 인위적 행위 + 기술 단위)

제2절 기존 농어업 유산관련 자원의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1. 기존 농어업 유산관련 자원의 현황

가. 기존 농어업 유산관련 자원의 발굴기준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4월에 도입한 ‘농어업 유산제도’의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농어업 유산자원 발굴기준을 제시하였다.
 - 농어업 유산 자원은 농어업 유산 개념에 따르며 전통적인 농어업 시스템, 농어업 경관, 농어업 활동으로 전승되어온 다양한 생물품종의 다양성, 자원의 역사성 및 대표성을 주요 기준으로 하였다.
 - 이를 종별 특징³⁸⁾에 따라, 논, 밭, 초지, 산림, 海, 水, 건조물, 기타로 구분하여 발굴하였고, 발굴과정에서 유산자원에 따라 새로운 유형 및 내용을 추가하였다.

나. 기존 농어업 유산관련 자원의 발굴과정

- 농어업 유산자원의 발굴과정은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① 국가지정 문화재 중 농어업 유산자원 관련 문화재를 선정한다. ② 기존 연구 및 전문가 집담회(FGI)를 통해 농어업 유산자원을 발굴한다. ③ 시·군 농어업 유산자원 신청을 통해 발굴한다.
 - 국가지정문화재는 2012년 6월 현재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총 4,756점을 검토하여 농어업·농어촌 유산 458개 중 농어업 유산자원 31개를 발굴하였다.
 - 기존연구는 2004~2007년에 주로 진행된 어메니티 연구 성과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전문가 집담회는 연구착수 시점부터 매주 2회 총 4회에 걸쳐 유산자원을 발굴하였다.
 - 시·군 농어업 유산신청을 통해서 총 64개의 유산자원을 발굴하였다.

38) 농어업 유산의 종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논은 지형, 기후, 유적 등과 관련된다. 밭은 지형, 기후, 유적, 작물, 경작방법 등과 관련된다. 초지는 방목과 재초지 등과 관련된다. 산림은 생산림, 방풍림, 방사림 등과 관련된다. 海는 어장, 어항, 해변 등과 관련된다. 水는 하천, 저수지, 호수, 수로 등과 관련된다. 건조물은 농림수산업에 의해 형성된 공작물과 관련된다. 이 외의 농어업 유산자원은 기타에 포함된다.

(표 3-14) 국가지정문화재 중 농어업·농어촌 유산자원 관련 현황

구분	농업유산자원	농어촌 유산자원
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선잠단지 - 산청 옥면시배 유지 - 김제 벽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 해미읍성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 순천 낙안읍성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 포항 장기읍성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 강화 외성 - 장흥 석대들 전적
명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 예천 회룡포 - 제천 의림지와 제림 - 순천만 - 남해 지족해협 죽방령(멸치 어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룡령 옛길 - 죽령 옛길 - 운경 토끼비리 - 운경 새재 - 부여 구드래 일원(나루터) - 대관령 옛길
천연 기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논길) -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 남해 울건리 방조어부림 -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 - 영양 관방제림(제방보호) -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성 성남리 성황림(마을평화기원 제사) -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방풍림, 어부림)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방풍림, 어부림) -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방풍림) -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방풍림) -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방풍림) -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서낭림, 어부림) - 태안 안면도 모밀자나무군락(방풍림) - 남해 울건리 방조어부림(방풍림, 어부림) - 창원 신방리 음나무 군(서낭림) -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방풍림, 고기잡이재앙 제사) -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어부림) - 부산 구포동 당숲(서낭림)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방풍림, 서낭림)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방풍림, 어부림) - 통영 육지도 모밀자나무 숲(어부림) -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어부림) - 성수 경산리 성밖숲(풍수지리설 인공조성) - 의성 사촌리 가로숲(방풍림) -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풍치, 방풍, 방해) -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마을숲) - 영덕 도천리 도천숲(마을숲) - 제주 물장오리 오름 (기우제)
중요 민속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애월말방아 - 잣동리말방아 - 당거리동네말방아 - 물레방아 - 통방아 - 대구달성삼가현곳간 - 대구달성삼가현곳간 - 청양동 후송당 곳간채 - 영천 만취당 곳간채 - 하회동하동고택 방앗간 - 안동 학암고택 곳간채 - 안동 학암고택 방앗간채 - 삼척대리리통방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덕리마을제당 - 고창오거리당산 - 부안서문안당산 - 부안동문안당산 - 남원서천리당산 - 양동서백당(양동마을) - 성읍조일훈가옥, 성읍고평오가옥, 성읍이영숙가옥, 성읍한봉일가옥, 성읍고상은가옥(제주 성읍민속마을 내) - 양동낙선당, 양동사호당고택, 양동상촌현고택, 양동근암고택, 양동두곡고택, 양동수출당, 양동이향정, 양동수운정, 양동심수정, 양동안락정, 양동강학당, (경주 양동한옥마을 내) - 하회복춘택, 하회원지정사 하회빈연정사, 하회풍산루씨작천덕, 하회옥연정사, 하회경암정사, 하회남춘택, 하회주일재, 하회동하동고택, (안동 하회마을 내) - 낙안성박의준가옥, 낙안성양규철가옥, 낙안성이안호가옥, 낙안성김대자가옥, 낙안성주두열가옥, 낙안성최창우가옥, 낙안성최선준가옥, 낙안성김소아가옥, 낙안성곽형두가옥(낙안읍성 내) - 아산외안리참판덕(1), 아산외안리참판덕(2)
총합	31개소	427개소 458개소

2. 농어업유산 실태

가. 예천 회룡포

(1) 개요

- 회룡포는 지질 및 지형(침식 및 퇴적지형), 산악지형과 농경지, 마을로 이루어진 경관적 가치와 주변 비룡산의 장안사(신라시대 고찰)의 문화유적 보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곳으로 명승 제 16호로 지정되어 있다.
- 회룡포 마을은 하천이 감싸고 있는 하천내 마을(약 7가구)와 주변 마을(용궁면 대은리, 향석리 약 1,300명)로 구분된다. 회룡포 마을은 석전놀이(팀을 나눠 돌을 던지는 행사)라는 농사축제와 파평윤씨 집성촌으로 유명하고 정보화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표 3-15) 예천 회룡포 현황

종 목	명승 제16호
명 칭	예천 회룡포 (醴泉 回龍浦)
분 류	자연유산 / 명승/ 자연경관/ 지형지질경관
수량/면적	790,864㎡(지정구역)
지정(등록)일	2005.08.23
소재지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시대	시대미상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및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경북 예천군



<그림 3-5> 회룡포 전경



<그림 3-6> 회룡포 농경지

(2) 관리(지원 및 규제)

○ 관리

- 하천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천만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하천은 예천군 하천계에서 담당하며 문화재 관련한 사항은 원형보존, 즉 지정 당시의 원형보존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기는 하나 2012년 현재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관리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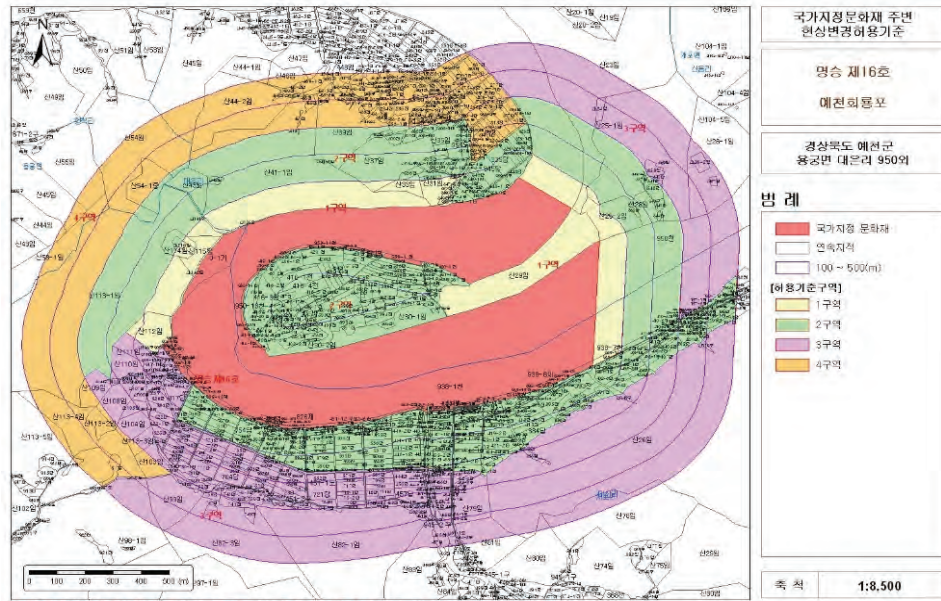
-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관련한 지원은 없으며 농림부의 지중화 사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이 지원되는 실정이다.

○ 규제

- 문화재 보호구역 및 주변구역(문화재 외곽경계 500m 내) 현상변경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현상변경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기준안만 있고 토목에 대한 기준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안에 따라 심의에 의해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회룡포의 경우 주변 농지에 건축물 조성시 농지전용, 건축인허가, 오페수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촉받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표 3-16) 회룡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지역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2지역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신축 2층 이하(12m 이하)
3지역	신축 2층 이하(8m 이하)	신축 2층 이하(12m 이하)
4지역	○ 예천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원지형 보전, 시설물 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등)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그림 3-7> 회룡포 현상변경기준안 도면

(표 3-17) 회룡포 현상변경허가변경 현황

신청내용	심의내용	심의결과
단독주택	보고사항(기준범위내)	허가
장안사(산식각 개축·주변정비)	보고사항(기준범위내)	허가
장안사(공양간 건립)	보고사항(기준범위내)	허가
장안사(휴게실 건립)	보고사항(기준범위내)	허가
예천군(주차장 조성)	심의(문화재청)	조건부허가 (잔디블록 포장)
벼육묘장 신축	보고사항(기준범위내)	허가
예천군수(자연체험학습 공원 설치-데크 및 포장)	심의(문화재청)	불허

(3) 시사점

- 첫째, 하천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하천은 하천계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문화자원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여 자원간 유기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 둘째, 유산에 대한 지원은 지정당시의 원형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산을 활용한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 회룡포의 명승지정 전·후의 방문객은 2~3만 명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박 2일 TV프로그램 방영 이후 약 10배 가까이 방문객이 증가한 것을 볼 때 보존 중심의 유산지정보다 활용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 셋째, 유산에 대한 관리는 보호 대상의 점적, 평면적 규제보다 공간과 활동이 통합된 입체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문화재 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내에 자연체험학습 공원 설치를 위한 데크 및 포장 사안을 불허한 사례를 볼 때, 농어업 유산은 작물 중심의 행위(경작행위), 공간(경작지), 기술(농법)이 통합된 '활용중심'의 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나. 제천 의림지

(1) 개요

- 의림지는 삼한시대 3대 저수지(김해 벽골제, 밀양 수산제)로 농경문화의 발상지를 알려주는 저수지이다. 1976년 충청북도 시·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2006년 명승 제20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방이 남아 있는 제림 쪽은 2014년 사적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표 3-18) 제천 의림지 현황

종 목	명승 제20호
명 칭	제천 의림지와 제림 (堤川 義林池와 堤林)
분 류	자연유산 / 명승/ 문화경관/ 조망경관
수량/면적	211,038㎡(지정구역)
지정(등록)일	2006.12.04
소재지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시 대	삼한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충북 제천시



<그림 3-8> 의림지(좌), 원형 석축(우)



<그림 3-9> 제림(좌), 소나무(우)

(2) 관리(지원 및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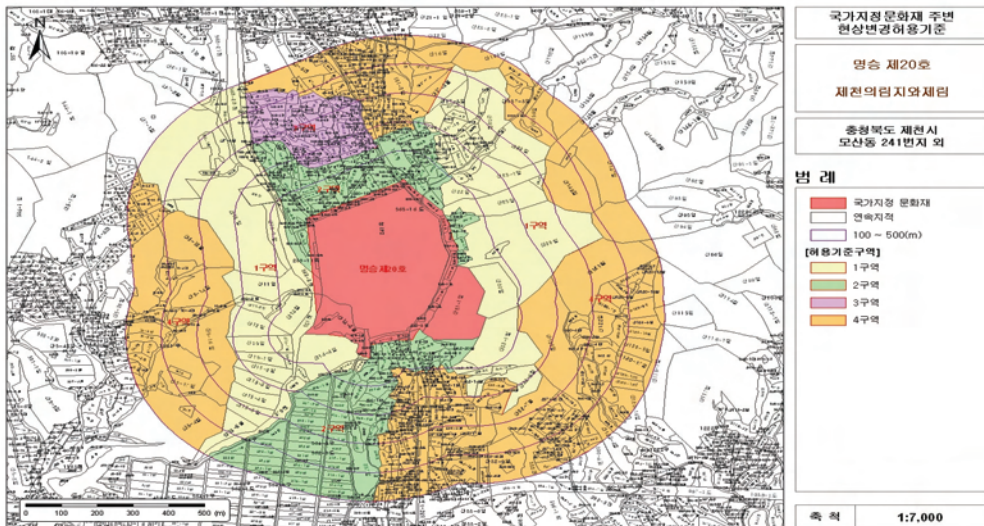
- 의림지는 대상 및 범위에 따라 관리 지원 및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즉 근거법(문화재 보호법,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과 관리주체(제천시, 농촌공사)에 따른 관리 실태를 보이고 있다.
 - 의림저수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원형의 보존을 위한 지원(석축 보전 등)과 문화재 특별관리인 2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림저수지 주변 청소 및 저수지 수질관리 등은 제천시의 자체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수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천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 의림저수지 주변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결정구역에 대한 구역별 개발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현상변경 허용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사항과 과도한 절·성토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허용기준과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개발기준을 비교해 볼 때, 현상변경 제 2구역에 문화재 지정 이전 놀이시설(의림지 파크랜드)이 입지함에 따라 주변경관과 상이한 ‘다양한 놀이시설의 적정배치’, ‘고성 및 빛 등을 주체로 한 사실 가급적 지양’과 같은 개발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 의림지 주변 활용계획은 제천시 자체사업 추진 또는 일부 문화관광부 사업이 지원되는 수준이다.

(표 3-19) 제천 의림지 지원 및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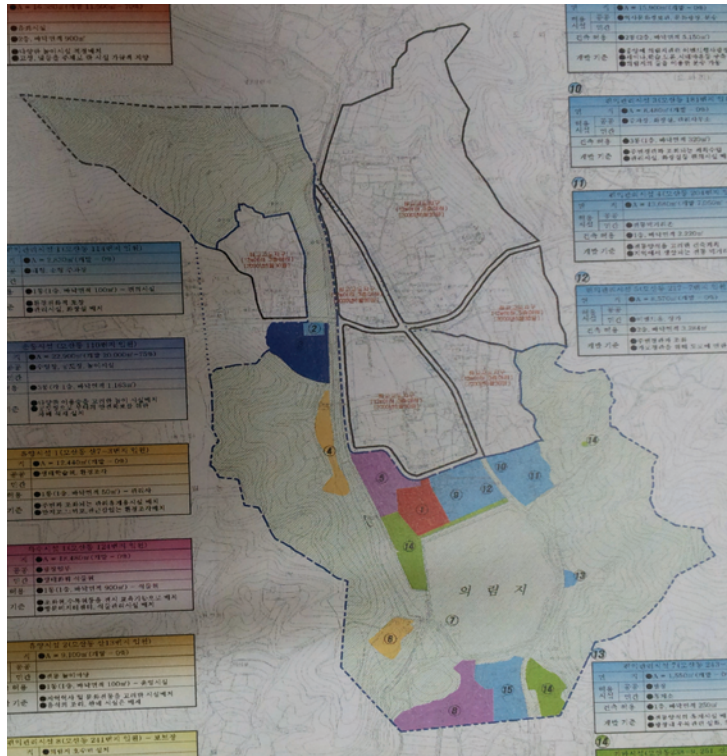
대상 및 범위	지원 및 규제	근거
의림저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원형찾기, 문화재 보존 관리 지원(토지매입비 포함, 매칭펀드) ○ 문화재 특별관리인 2인 (청소 및 문화재 파손여부 알림. 그 외 청소미화원 2인 및 공공근로 1인 이상시 관리인원) 	문화재 보호법 (제천시)
저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관리(오·우수 및 생활용수 별도 관리, 저수지내 동력선 금지 등. 어종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농수관리 	제천시 한국농촌공사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시 	문화재 보호법
의림유원지 도시계획결정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고도지구(12m 이하, 3층 이하) ○ 구역별 개발기준 제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의림지 주변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림지와 연계한 활용계획은 지자체 자체계획 또는 문광부 지원 ○ 문화재 보호구역 내(박물관, 우륵정, 조망점, 농경 체험광장 계획 등) ○ 문화재 보호구역 외(비룡저수지와 연계한 생태하천 등) 	제천시 (문화관광과)

(표 3-20) 의림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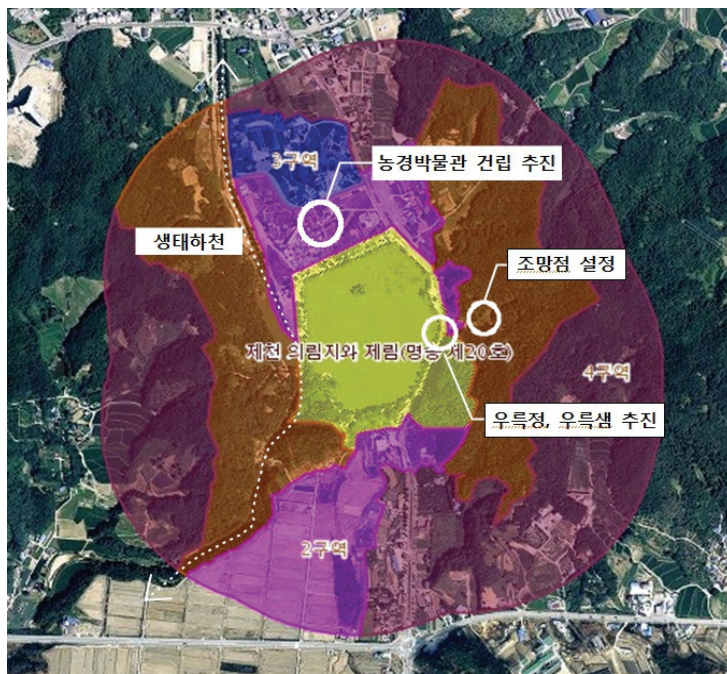
구 분	현상변경 허용 기준 안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지역적 특징
1지역	○ 기존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취 ○ 기존 건물 연면적 10% 범위 내 증축(단 1차에 한함) ○ 원 지반 보존		○의림지 동서 임야지역 중 시야권내 지역 ○의림지 주변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
2지역	2층이하 최고높이 8m이하	2층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의림지 북쪽 외곽도로 및 주차장 및 인접 마을지역, 남쪽은 제림 연접 농경지. 경관을 고려하여 설정
3지역	3층 이하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의림지 북쪽 유원지 외곽마을지역
4지역	5층 이하 최고높이 17m이하	5층 이하 최고높이 21m이하	○500m 이내 1,2,3 지역 제외 지역(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공통 사항	○ 과도한 절·성토 금지, 원지형 보존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제천시 의견	○ 의림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기 희망 ○ 옛 관개 수로에 대한 시·발굴조사 등 의림지 역사성 찾기 사업 지속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 1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70%가 국공유지로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주민 불만이 상대적으로 낮음 ○ 역사유적 박물관 건립 등 의림지 주변 종합개발사업 완료시까지 허용기준 유지		



<그림 3-10> 의림지 현상변경기준안 도면



<그림 3-11> 제천시 도시계획결정 현황



<그림 3-12> 제천시 문화관광과 주변 활용계획

○ 의림지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 그러나 문화재 관리대상이 되는 석축, 제림(소나무 숲) 등의 점적 요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면적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구역 또한 ‘농경문화의 발상지’라는 문화재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관 및 토지이용활동을 찾아보기 힘든 평면적 규제 중심이다. 따라서 석축 및 제림은 문화재로서 지원 및 관리의 대상이 되나, 저수지 수(水)자원의 관리(수질 및 어종) 및 이용(농업 용수, 농한기 축제(농한기 동계 대체전을 저수지에서 함), 농업체험 활동 등)은 관리주체인 제천시와 농촌공사의 관리의지에 달려 있는 실정이다.

(3) 시사점

- 첫째, 뛰어난 저수지 배수구 축조술을 보여주며 농한기 동계 대체전 축제가 열리는 의림저수지, 정미의병활동의 당시 의병장 이강년이 정세를 논하였다는 영호정,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우륵정 등 농촌문화 자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적이지 못하다.
- 둘째, 저수지 석축, 제림 등 점적 문화자원의 활용보다 규제중심의 관리는 농촌개발의 정체성을 살리기는 데에 한계가 있다.
- 셋째, 의림저수지와 저수지내 水자원, 문화재 보호구역과 도시계획 구역, 의림지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안과 밖 등 문화자원의 대상별, 범위별 관리 주체가 다기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적인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1) 개요

○ 구들장논

- 구들장 논이란 구들장을 사용하여 온돌구조 형태로 축조된 논을 지칭한다.
- 구들장 논은 단면 중앙부분을 기준으로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들장 상층부는 구들장을 깔고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의 구멍을 진흙으로 막은 후, 그 위에 40~45cm의 흙을 쌓고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논둑을 만들어 벼를 기를 수 있는 구조로 일반적인 논 구조와 동일하다. 하층부는 돌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구들장을 쌓아 올리는 온돌(구들)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비워져 있는 공간이 곧 통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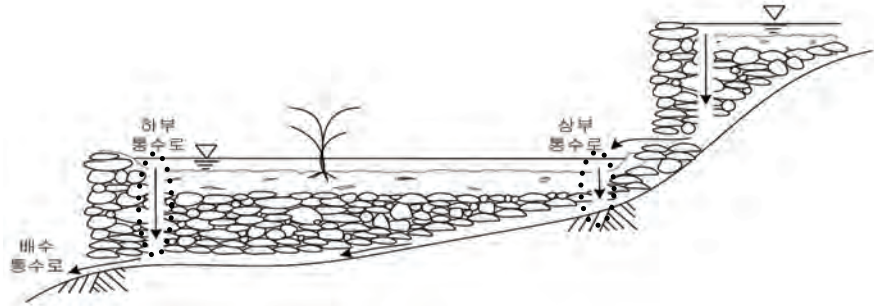


<그림 3-13> 구들장 논

○ 구들장논의 가치

- 2012년 현재 청산도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농업 구조물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논밭 겸용이라는 독특한 전통적 농업토목 및 농업용수의 관리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청정 자연수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도 주목할 만하다.
- 또한 한국의 전통 건축기술인 온돌문화와 농업토목기술의 영농문화가

융합된 한국고유의 전통문화적 가치와 지역적 농업경관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림 3-14> 구들장 논의 구조

(2) 관리(지원 및 규제)

- 구들장 논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발견된 유산자원으로 제도적 범위에서의 지원은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구들장 논에 대한 관심이 몰리기 시작한 2011년부터 완도군, 지역농협 등 관련기관, 지역주민과 연계한 민간단체 등을 통해 활용 중심의 연대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 보존을 위한 활동은 구들장논 세미나 및 간담회, 청산도 구들장논 지키기 운동, 청산도 생태문화도감 제작 등이다.
 - 활용을 위한 활동은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청산휴가어울림한마당 구들장논 체험, 구들장논체험장 조성, 구들장논 테마길 조성(슬로길 6코스) 등이다.
- 위와 같은 기본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구들장논의 보존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 우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구들장논의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고, 자연재해 등으로 논이 유실되거나 변형되고 있다. 또한 구들장 논 및 청산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도시민의 관광 및 체험을 유치하기 위한 체험장 마련 등을 통해 논 자체의 원형이 파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훼손행위는 소하천 공사와 같은 공공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 경관차원에서는 구들장 논 주변 숙박시설의 신축 등으로 청산도 및 구들장 논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유산자원의 보전 및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시사점

- 첫째, 제도적 범위에서 보호받고 있는 못하는 농어업 유산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농어업 유산자원은 그 가치성에 비해 유산자원의 일부만이 문화재 등을 통해 보호 관리되고 실정이다.
- 둘째, 농어업 유산자원은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 및 규제 중심의 관리방식으로는 한계를 보인다.
 - 농어업 유산자원은 물리적 공간과 함께 농업활동(경작행위, 농법)과 같은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유산자원과의 그 속성이 다르다. 또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작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활용중심의 전략이 유리하다.
- 셋째, 이러한 농어업 유산자원이 보전의 대상이며 유산자원의 주체인 주민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라. 예산 황새마을

(1) 개요

○ 황새

-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온대 지방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 번식하던 한 쌍마저 1971년 4월에 밀렵꾼에게 수컷이 사살 당한 후 약 12년 동안 무정란만을 낳았으며



<그림 3-15> 황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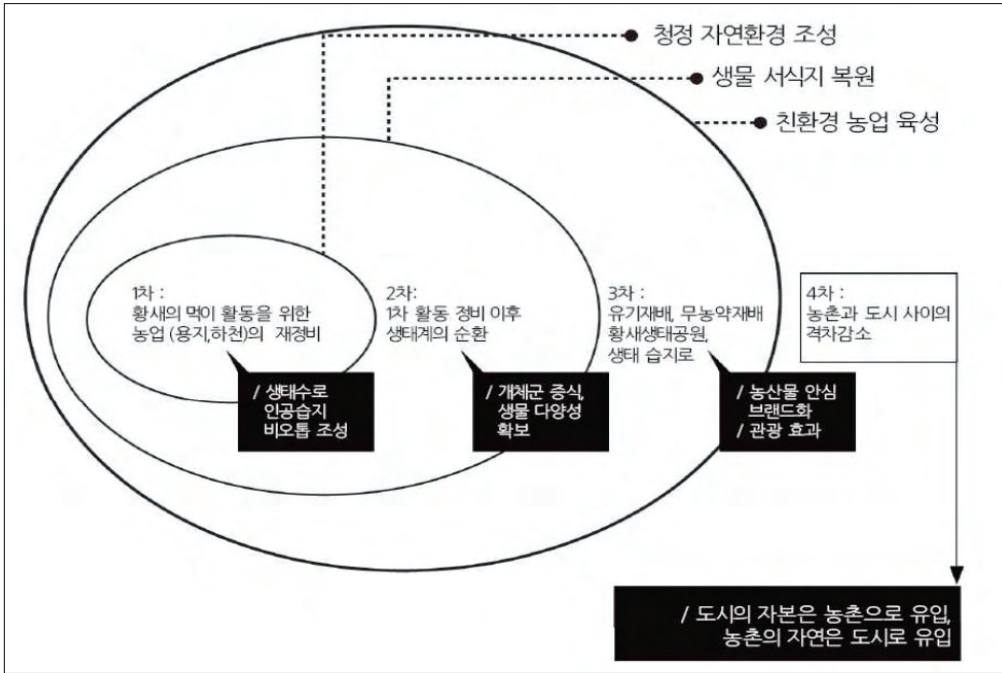
1988년 현재 남서울대공원에 사육, 보호 중 멸종하였다. 황새는 청정 환경의 대표종이며 황새가 서식하면 그 환경은 청정지대를 의미한다.

○ 황새복원

-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지난 1996년 러시아에서 새끼 2마리를 기증받아 인공 짝짓기를 시작하여 2002년 세계 4번째로 인공 짝짓기가 성공해 우리나라 최초의 번식쌍인 ‘청출쌍’이 탄생했지만 그 뒤 5년 동안 새로운 번식쌍이 탄생하지 못하였다. 2007년 3월 26일 기존의 청출쌍이 낳은 5개의 알에서 새끼 4마리가 태어났다. 2012년 현재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 약 3,000평에서 129마리 복원하여 4마리를 방사하였다.

○ 예산군과 황새

- 2009년 예산군에서 황새마을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예산군 황새사업을 추진하였다. 예산군 내에서 황새가 이용할 수 있는 서식지의 유형은 농경지, 수로, 자연습지, 저수지, 하천, 초지 등으로 예당저수지를 비롯한 광시면 일대를 황새서식환경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 2012년 현재 황새마을조성사업(문화재청),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환경부),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농림부) 등 황새 자연방사 및 서식환경(친환경 농법 및 황새농법 등)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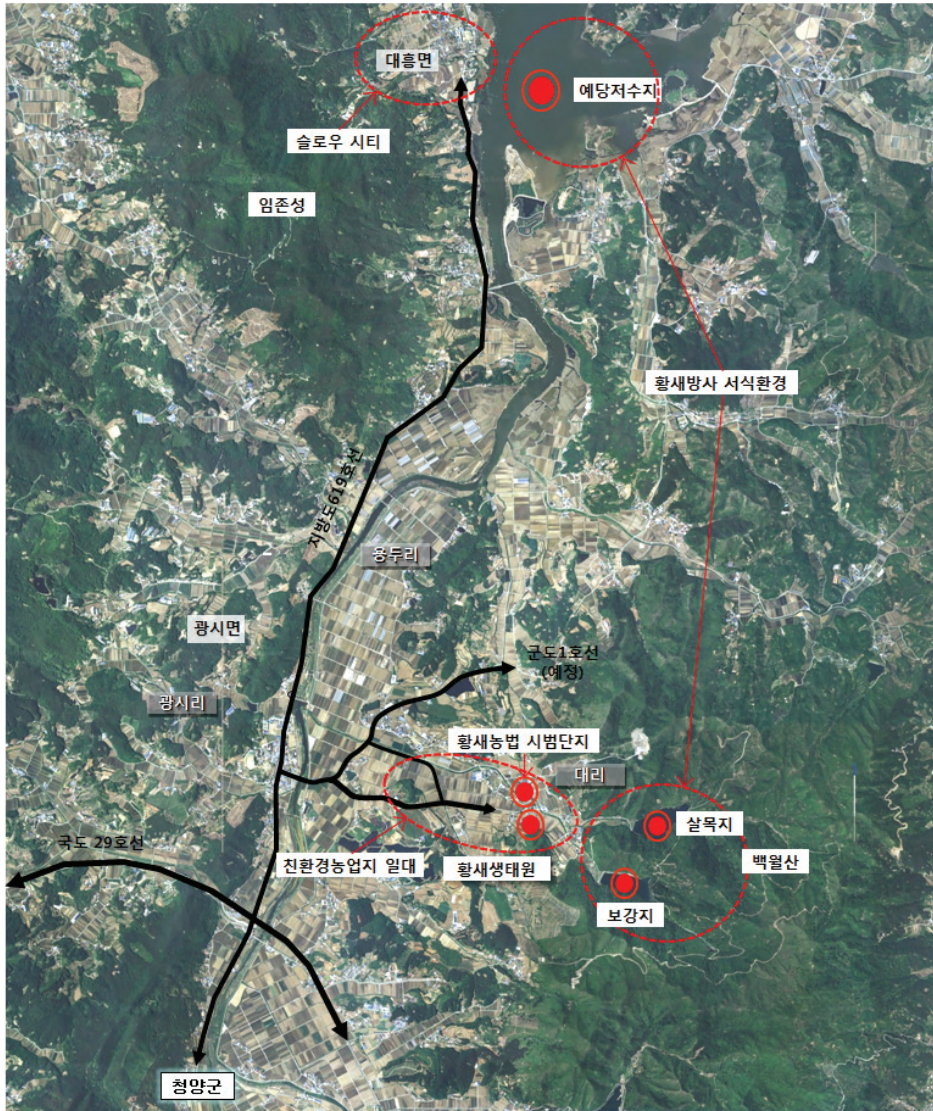
<그림 3-16> 인간, 황새, 농업의 상관성
(예산군, 2010 ,황새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 p342)

(2) 관리(지원 및 규제)

- 황새 관련사업은 예산군 주요 시책사업으로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비 지원과 예산군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 중앙부처 관련사업은 문화재청 황새마을조성사업(추진중), 환경부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요청중), 농식품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추진중), 농식품부 예산황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요청중)에 있다.
 - 예산군 자체사업으로는 황새마을 운영관리방안, 친환경 황새 브랜드 개발 및 활용, 관련 조례 제정 등이 있다.
- 예산군의 친환경농업은 대리, 시목리, 용두리, 가덕리, 장신리, 장전리, 관음리 일대 100ha 규모, 103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광시면 대리 일대 약 2,000평을 임대하여 황새농법 시범단지로 운영하고 있다.
 - 예산군 친환경농업은 2012년 현재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2012년 기준 1억9천 5백만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황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황새농법은 호품, 새누리, 밀크퀸 3종류를 유박비료 및 살겨 농법으로 시행하고 있고, 황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어도(3개소), 둌병(2개소), 무논조성(300평)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황새농법에 대한 생물다양성 및 친환경 농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황새복원센터 및 친환경 연구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3-17> 예산군 황새마을 현황도

(표 3-21) 예산군 황새마을 관련 사업추진 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황새마을 조성사업 (문화재청)	광시면 대리 일원 약 41,430평	연구·전시·교육· 사육·부대시설 등	180억원 (국고 50%)	2010~2013년 (4년간)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 (환경부)	광시면 대리 일원(쌍둥이 저수지, 백월산)	황새서식 생태습지원, 황새고향숲조성, 황새생태환경정 비사업 등	120억원 (요청 중)	2013~2017년 (5년간)
황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식품부)	광리면 대리, 시목 1,2리, 가덕1,2리(5개리)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기반사업,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7억원	2012~2016년 (5년간)
황새생태 친환경 농업 사업 (농촌진흥청)	광시면 대리 일대 2,000평(임대)	황새생태농법(유 박비료, 살겨 농법), 어도 및 등방, 무논 설치	3천만원 (농촌진흥청 100%)	2012년 (사업성과에 따라 연장계획)
무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부)	광시면 하장대리, 동산리 일대	수질정화 습지사업	150억	2012~2016년 (5년간)
대리소하천정비사업 (소방방재청)	광시면 일대	생태하천 정비	13억	2011~2013년 (3년간)
예산황새공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농식품부)	광시면 전역(26개리)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외	100억 (요청 중)	2013~2015년 (3년간)
황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국도해양부)	광시목 시목리 대리 일대	진입도로 개설	70억 (요청 중)	2013~2014년 (2년간)
황새마을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예산군)	황새마을 일대	국내외 사례조사,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인력운영 방안	2천만원(군비)	2012년
친환경 황새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예산군)	-	황새의 비상, 예황 등의 상표등록(2010. 12. 28)	-	2010년
황새 관련 조례 추진(예산군)	-	-	-	2012년 7~9월



<그림 3-18> 안내판·친환경농업지역·황새생태농법(어도)



<그림 3-19> 어도·돛병·무논



<그림 3-20> 황새마을조성 및 하천 평탄화 사업·예당저수지변 경작 현황

(3) 시사점

- 황새마을은 농업과 환경, 생활이 연동된 선진국형 농어업유산의 모델로서 가치가 높다. 이러한 황새마을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문화재청의 지원 사업이 있기는 하나 천연기념물이라는 국가적 수준에서는 미비한 지원 수준이다. 이는 문화재라는 보존 중심의 원칙 때문이기도 하다. 황새라는 유산의 활용중심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 첫째, 황새의 서식환경인 논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이 필요하다. 황새생태농법 일대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룹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관행농법 농가를 대상으로 한 논두렁 농약 살포 억제 및 예산군 친환경 농산물(쌀)의 가격경쟁력(현재 관행농법에 비해 약 30% 높은 수준의 가격 형성) 확보를 통한 농민들의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
- 둘째, 황새생태농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둙병은 조성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다양한 생물이 서식이 가능할 정도로 환경복원력이 우수하다. 현재 어도, 둙병, 무논 등을 조성한 약 2,000평의 임대 농업지역을 연접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황새 추가적인 자연방사 이후 서식지 조성을 위한 예당저수지 일대 서식환경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예당저수지변 경작지를 유희지 또는 무논으로 정비하여 황새 서식환경으로 조성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예산군 슬로우 시티, 「황새의 비상」, 「예황」 등의 브랜드를 활용한 황새와 함께하는 청정지대 이미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3-21> 프랑스 위나비르 황새복원센터·황새마을 전경
(출처 : 예산군, 2010 ,황새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



<그림 3-22> 독일 로부르크 주변 황새 먹이 서식지(초지와 밀밭)
(출처 : 예산군, 2010 ,황새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



<그림 3-23> 일본 사도 (세계농업유산 등재) 따오기 관련 상품 및 이미지

3. 시사점

- 주요 농어업 유산자원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첫째, 문화재에 속한 농어업 유산자원은 점적, 평면적 규제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산활용에 한계를 보인다.
 - 국가지정 문화재는 석축, 하천과 같이 해당 유산에 대한 점적 보호와 유산의 원형보전을 위한 평면적 규제 중심이다. 이는 농어업 활동 및 이를 통한 생산물의 유기적인 순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농어업 유산자원의 특성상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관리활동을 어렵게 하고 유산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인다.
 - 또한, 이러한 규제 중심의 관리방식은 물적, 비물적 유산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농촌개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에도 한계를 보인다.

- 둘째, 농어업 유산자원의 대상 및 범위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기화 되어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
 - 의림지의 사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산자원의 대상 및 범위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고 관리주체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유산자원에 대한 관리는 주체들의 관리의지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 관리주체 및 관리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주체들의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근거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 셋째, 농어업 유산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농어업 유산자원은 구들장 논 사례와 같이 아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유산자원의 일부만이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농어업 유산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체계적 보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 및 가능한 지원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넷째, 농업·환경·생활이 어우러진 새로운 농어업 유산자원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일본 사도 및 예산의 사례와 같이 농어업 활동의 특성상 기존의 문화재 유형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산자원들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법제적 범위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유산 지정을 통해 한국적 농어업 유산의 모델을 정립하고 세계 농업유산 등재 등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제4장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설정 및 적용

- 제1절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정립
- 제2절 농어업유산 지정기준의 적용
- 제3절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정립
및 적용에 따른 시사점

제4장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설정 및 적용

제1절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정립

1. FAO의 GIAHS 기준 검토

- 한국 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국제적 기준인 FAO의 GIAHS의 기준을 한국적인 정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현실적합성과 국내적인 유산의 파악과 기준정립이라는 정책적 상황에 적합하게 일부 기준을 조정하여 새로운 기준을 형성하였다.
- FAO의 GIAHS의 기준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시스템의 고유특성, 정확성, 프로젝트 수행성이라는 3개의 대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별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시스템의 고유특성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산자체의 현저한 특성과 유산의 역사성, 유산의 대표성을 세부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농어업유산의 개념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유산이 토지이용이나 경관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현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역사적으로 그리고 고유한 특성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정확성은 유산이 현재 놓여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확성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는 대표성, 외부의 위협, 정책의 적용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성은 시스템의 특성이 현재 지리적, 생태적, 제도적인 측면 및 그리고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은 현재 잘 보전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의 개발요인 등에 의하여 보전을 하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책 및 개발적용성은 정책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프로젝트수행은 정부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지, 공동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프로젝트의 수행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표 4-1) FAO의 세계농업유산 세부 지정기준

구분	기준	내용
I. 시스템의 고유특성 (systems criteria)	1. 현저한 특징 (outstanding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경관, 토지, 수자원의 관리 - 식량안전과 생계유지 - 사회조직과 문화 - 지식체계와 및 농가 단위의 기술 - 기타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 재화와 용역
	2. 지속성의 역사 (proved history of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활력 및 지속가능성 - 적응적 능력 - 인간 생태적 지속가능성
	3. 세계적 중요성 (global signific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 부가가치
II. 정황성 (contextual criteria)	1. 대표성 (re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생태적, 제도적 대표성 및 영향력 - 전시효과 - 현저한 대표성
	2. 외부의 위협 (external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적 위협의 존재
	3. 정책 및 개발적용성 (policy and development relev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적용가능성
III. 프로젝트 수행성 (project implementation criteria)	1. 프로젝트 통합성 (project integ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2. 공동 펀드의 능력 (co-finance potent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펀드 가능성
	3. 프로젝트 접근성 (project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 - 프로그램적 접근 - 생태계적 접근 - 지역사회의 권한 - 분권화

2. 한국 농어업유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의 재설정

- 세계농업유산 등의 지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의 농어업유산의 제도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농업유산의 일부 기준을 조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의 (표 4-2)와 같은 새로운 농어업유산의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 유산의 가치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세계농업유산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되, 정확성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성을 유산의 가치성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 그리고 한국의 농어업유산제도의 도입은 세계농업유산에 우리나라의 유산을 등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유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적 관점에서 유산으로서 적합하고 보전·활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중요성은 별도의 대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즉, 세계적인 중요성이라는 세부기준은 대표성이라는 항목에 포함하였다.
- 정확성에 대한 내용은 국내적인 제도 운용의 측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책의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과 효과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파트너십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해당 지역의 NPO 등 단체의 중요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 효과성을 새로운 기준의 항목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존의 유사관련 제도가 보전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유산은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농촌개발의 방향성인 생물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농촌개발의 방향성 열어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 그리고 이러한 유산의 세부기준은 <표4-3>과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년이 지나야 과연 역사성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가 하는 역사성에 대한 항목이나, 최소 단위를 100년 이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100년 전인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의 우리나라는 개항과

왜국정책의 혼란 속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된 시기였으며, 결국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의 체결로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었다. 개항과 일본의 강제통치가 있기 전까지의 조선은 세계자본주의와 연계되지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고, 전통적 특징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었던 사회였다. 그 당시에 형성된 농어업 유산은 과거의 전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다만, 역사성이라는 항목이 유산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점은 지적해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역사성은 100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미래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농업유산인 노토반도와 사도섬의 경우 역사정보다는 생물다양성이라는 항목에 무게를 두고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측면에서 FAO도 역사성이라는 항목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1. 유산의 가치성	1-1 현저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의 전통적 농림어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에 있어 독특한 특징을 현저하게 나타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토지 및 수자원이용 -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 공동체의 농림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1-2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로부터 농어촌주민의 농림어업활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 ○ 미래의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1-3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농업, 임업, 어업, 축산 등의 분야별 대표성
2. 파트너십	2-1 협력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
	2-2 주민참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활동이 있을 것
3. 효과성	3-1 지역브랜드 가치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
	3-2 주민의 소득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3 생물다양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친환경농업의 시행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을 것

(표 4-3) 세부 지정기준

구분	기준	세부기준
1.유산의 가치성	1-1 현재한 특징	1.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종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체수가 다수인가? - 전통적인 희귀종 또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가? 2. 경관, 토지 및 수자원 - 전통적이고 독특한 인공경관이 있는가? - 전통적이 독특한 토지 및 수자원 이용방법이 있는가? 3. 식량 및 산출물 - 전통적 농림어업활동으로 식량 및 산출물이 생산되는가? - 식량 및 산출물의 종류 4. 공동체의 농림어업지식체계와 기술 - 농어업유산이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공동체가 농어업유산지구의 생산 및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1-2 역사성	- 역사성에 대한 기록 또는 증언이 있는가? - 최소기간을 충족시키는가? (100-150, 150-200, 200이상) - 유산의 보존상태가 어떤가?(온전, 일부훼손, 완전훼손) - 유산이 복원가능한가?
	1-3 대표성	- 유산의 수준이 어느 레벨(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에 해당하는가? - 유산의 수준의 농림어업 및 축산 등의 분야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2.파트 너십	2-1 협력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부담의향 - 지방자치단체와 유산지구주민간의 협력체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2-2 주민 참여성	- 주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자체주민조직이 있는가? -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가? -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및 도시민 등과의 연대가 가능한가?
3.효과성	3-1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 지역주민이 유산의 지정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는가? - 유산이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가?
	3-2 주민의 소득 향상	- 유산과 관련된 도농교류 프로그램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 유산지구를 방문하는 도시민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 유산을 활용한 생산물의 상품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생물 다양성 향상	- 생물다양성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농법을 도입하고 있는가? - 생물다양성이 개선되고 있는가?

주: 세부 기준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접근할 경우 정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표 4-2>의 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을 현실 행정에서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4-3>과 같은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역사성의 경우 등급을 나누어서 100년이상, 100년-150년, 150-200년, 200년 이상 등으로 나누어서 역사성을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여기에서는 역사성의 항목을 예로 들어서 등급을 3개 또는 4개의 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역사성뿐만이 아니라, 세부기준에 제시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준은 모두 등급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등급별 점수의 부여를 통하여 유산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점수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여기서 기준별, 세부기준별 점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농업유산으로서의 판정여부는 단순히 점수의 합산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유산자체의 가치성이라는 정성적인 면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둘째, 유산의 가치성, 파트너십, 효과성의 관계는 유산의 가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셋째, 여러 가지 기준별 점수도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의 항목의 현저한 특징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넷째, 농식품부의 농어업유산 심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가 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다.

제2절 농어업유산 지정기준의 적용

1. 유산의 발굴과 유형

- 유산의 발굴과정은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기존의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지정되어 있는 유산의 정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유산으로 지정해주기를 원하는 유산의 정리, 연구자의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표 4-5)와 같이 71개의 유산으로 종합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농업유산의 숫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한 분석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숨어있는 많은 유산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유산은 외형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표 4-4)와 같이 구분된다. 즉, 논, 밭, 초지, 산림, 바다, 물, 건조물, 기타 등의 8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종별 8개 기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문화적 경관 지역의 선택기준 참고 적용하였고, 바다(海)의 염전 및 갯벌은 농어업 유산 신청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종별 유형의 세부 내용이다.

(표 4-4) 농어업 유산 종별 유형

종별	내용
논	지형, 기후, 유적 등과 관련됨
밭	지형, 기후, 유적, 작물, 경작방법과 관련됨
초지	방목, 초지
산림	생산림, 방사림, 시목
海	어장, 어항, 해변, 염전, 갯벌(지형, 기후, 어법 등 포함)
水	하천, 저수지, 호수, 수로(지형, 기후, 어법, 서식지 등 포함)
건조물	농림수산업에 의해 형성된 공작물
기타	복합(복수의 다른 요소가 혼합, 각 산업의 조합)

2. 농업유산기준의 적용

- 71개의 한국 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 유산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기서는 유산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만을 적용하고, 파트너십이나 효과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신청을 받았지만, 그러한 유산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나아가서는 유산지정을 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본고에서는 신청한 유산을 대상으로 유산의 가치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는 농업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대표성, 역사성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여기서의 판단은 연구자가 현장 점검을 통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류에 의한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향후 유산이 계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준의 측면에서도 파트너십, 효과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판단되어야 하고, 현지의 실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 4-5) 농어업 유산 특징별 유형

특징		내용
경관		전통적이고 독특한 경관
생물다양성		생물 종 및 개체수, 희귀종·보호종
농업 시스 템	토지 이용	전통적 토지이용 시스템
	수자원	수자원 이용방법
	기술	농법 등
대표성		농·산·어촌의 대표성
역사성		농어업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

3. 지정기준에 따른 유산의 유형화

- 지정기준의 가치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발굴되고, 지방자치 단체가 신청한 유산을 대상으로 판단해보면 (표 4-6)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표 4-6) 발굴된 유산에 대한 지정기준의 적용과 유형화

연번	유형	유산명	특징(기준)					비고*
			농업유산	농업사실행	경관	생물다양성	역사성	
1	밭	이천 선비꽃(산수유) 피는마을	○	○	△	○	○	유산신청
2	밭	안성 포도 재배단지	△	△	×	×	×	유산신청
3	건조물	영월 앞담배 건조장	○	○	×	×	○	유산신청
4	초지	강릉 아반데기	○	○	○	○	○	유산신청
5	水	제천 의림지	△	○	△	○	○	유산신청 (중복)
6	기타	보령 냉동양송이	×	×	×	×	×	유산신청
7	水	당진 합덕제 및 연호방죽	○	○	△	○	○	유산신청
8	밭	금산 개삼터	△	○	×	○	○	유산신청 (중복)
9	논	청양 사자손마을 다랭이 논	△	△	△	×	×	유산신청
10	기타	광천 토굴	△	×	×	△	○	유산신청
11	海	태안 독살	○	○	○	○	○	유산신청
12	논	청산도 구들장논	○	○	○	○	○	유산신청
13	海	신안 갯벌	○	○	○	○	○	유산신청
14	밭	보성 계단식 차밭	○	○	○	○	○	유산신청
15	밭	구례 산수유 시목 군락지	○	○	△	○	○	유산신청
16	산림	담양 대나무숲	○	○	○	○	○	유산신청
17	초지	포항 장기 목장성	○	○	△	○	○	유산신청
18	밭	경주 다랭이밭	△	×	△	○	×	유산신청
19	논	경주 다랭이논	△	×	△	○	×	유산신청
20	논	경주 다랭이 논2	△	×	△	○	×	유산신청
21	水	상주 공검지	○	△	△	○	○	유산신청
22	水	문경 경천호	△	△	△	×	×	유산신청
23	水	상주 오태지	△	△	○	×	×	유산신청
24	논	상주 용포 다락논	○	○	○	○	△	유산신청
25	水	상주 조공제	△	△	△	○	△	유산신청
26	기타	상주 잠령탑, 냉동고, 뽕나무	○	○	○	○	○	유산신청
27	水	청송 주산지	○	○	○	○	○	유산신청
28	水	성주 성주호	○	○	△	×	×	유산신청
29	밭	창원 단감	△	△	△	×	×	유산신청
30	海	통영 한산도 염개갯벌	△	△	○	×	×	유산신청
31	水	밀양 위양지	△	○	○	○	○	유산신청 (중복)
32	논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	○	○	○	○	○	유산신청 (중복)
33	海	남해 죽방렴(대나무어살)	○	○	○	○	○	유산신청
34	논	함양 마천 다락논	○	○	○	○	○	유산신청
35	논	김포통진두레놀이, 탄화미	×	×	×	○	○	유산신청
36	건조물	제주 밭돌담(제주시 전역)	○	○	○	○	○	유산신청
37	海	제주 제주시 구영 돌염전	○	○	○	○	○	유산신청

연번	종별 유형	유산명	특징(기준)					비고
		농업유산	농업사실편	경관	생물다양성	역사성	대표성	
38	海	제주 원당(독살어업)-제주시	○	○	○	○	○	유산신청
39	海	제주 원당(독살어업)-서귀포시	○	○	○	○	○	유산신청
40	海	제주 테우(전통배어업)-제주시	○	○	○	○	○	유산신청
41	海	제주 테우(전통배어업)-서귀포 시	○	○	○	○	○	유산신청
42	海	제주나장어업(불턱,해신장) .도대불-제주시	○	○	○	○	○	유산신청
43	海	제주나장어업(불턱,활망당, 제단집)-, 서귀포시	○	○	○	○	○	유산신청
44	밭	하동야생차(녹차) 시배지, 최고(最古) 차나무	○	○	○	○	○	유산신청
45	논, 밭	보성 자연농법 (생령역동,왕겨,우렁이농법)	○	○	○	×	○	유산신청
46	논	산청 차할 다랭이논	○	○	○	○	○	유산신청
47	水	무안 회산 백련지	○	○	○	○	○	유산신청
48	海	영광 영전	○	○	○	○	○	유산신청
49	건조물	고흥군 거금도 해태 역사관	×	×	×	○	×	유산신청
50	海	장흥 개매기 어장, 독살	○	△	△	×	×	유산신청
51	논	구례 다랑이 논	○	○	○	○	○	-
52	水	김제 벽골제, 지평선	○	○	○	○	○	(중복)
53	水	수원 서호	○	○	○	○	○	-
54	논	강화 둠벙	○	△	○	○	○	-
55	논	서산 둠벙	○	○	○	○	○	-
56	海	신안 태평염전	○	○	○	○	○	(중복)
57	밭	산청 목면 시배 유지	○	△	×	○	○	-
58	밭	보은대추시목지	○	△	×	○	○	-
59	밭	공주 정안 밤나무 시목지	○	△	×	○	○	-
60	밭	서울 선잠단지	○	△	×	○	○	-
61	밭	천안 호두나무 시목지	○	△	×	○	○	-
62	海	강화 장하리 갯벌	○	○	○	○	○	-
63	海	충남 보령 갯벌	○	○	○	○	○	-
64	산림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	○	○	○	○	(중복)
65	논	청주 범씨(탄화미) 출토지	×	×	×	○	○	-
66	건조물	인제 용대리 황태덕장	○	○	○	○	○	-
67	논	홍성 문당리 마을(친환경재배)	○	○	○	×	○	-
68	기타	예산 황새마을	○	○	○	×	○	-
69	海	순천만 갯벌	×	○	○	○	○	-
70	산림	담양 관방제림	○	△	○	○	○	-
71	海	부안공소염전	○	○	○	○	○	-

*()는 타부처 및 각종 사업과의 중복지원

** 기준 부합정도에 따라 ○(부합), △(중간), ×(부합하지 않음)으로 구분

○ 종별 유형은 海 > 논 > 밭 순으로 많고, 지역별로는 전남 > 충남 > 경남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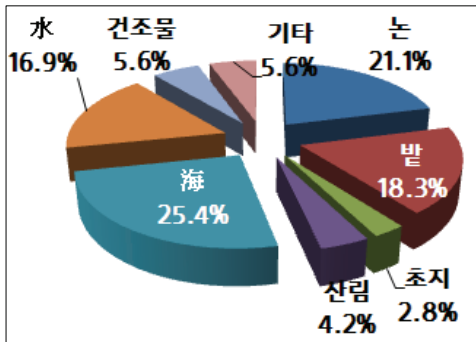
○ 5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농어업 유산은 33개소이다. 농어업 유산 기준 중 역사성 기준에 부합하는 유산이 57개소로 가장 많으며, 생물다양성 기준에 부합하는 유산은 43개소로 가장 적다.

(표 4-7) 농어업 유산의 종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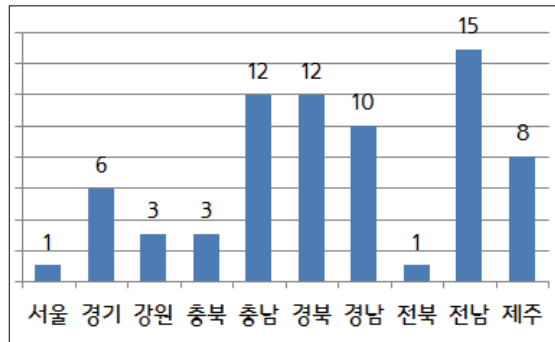
구분	논	밭	초지	산림	海	水	건조물	기타	합계
빈도(개소)	15	13	2	3	18	12	4	4	71
백분율(%)	21.1	18.3	2.8	4.2	25.4	16.9	5.6	5.6	100

(표 4-8) 농어업 유산의 지역별 빈도

구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빈도(개소)	1	6	3	3	12	12	10	1	15	8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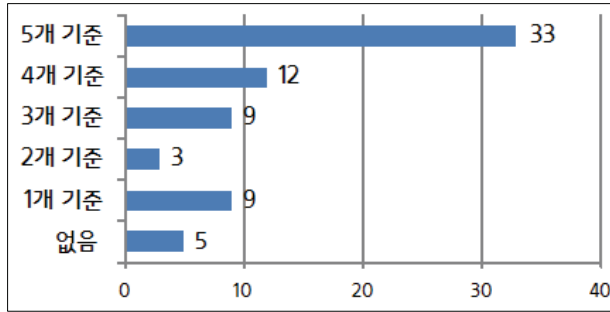
<그림 4-1> 종별 빈도



<그림 4-2> 지역별 빈도

(표 4-9) 5개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 유산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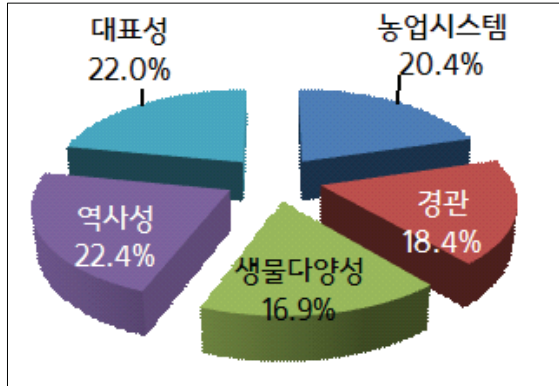
구분	없음	1개 기준	2개 기준	3개 기준	4개 기준	5개 기준	합계
빈도(개소)	5	9	3	9	12	33	71



<그림 4-3> 농어업 유산의 빈도(5개기준)

(표 4-10) 각 기준에 적합한 농어업 유산의 빈도

구분	농업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역사성	대표성
빈도(개소)	52	47	43	57	56



<그림 4-4> 농어업 유산의 빈도

제3절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정립 및 적용에 따른 시사점

1. 대상지구의 선정

- 농림어업인이 지역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을 지정대상으로 하였다.

-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생산기술, 토지이용, 물관리 등)과 경관, 시설물 및 마을(장소)을 통합적으로 지정한다.
 - 농어업유산은 농림어업활동과 이로 인한 경관(시설물, 장소, 마을)을 통합적으로 지정하므로, 농림어업활동만 있거나 또는 경관만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지정대상은 기본적으로 단일자원을 중심으로 농어업시스템과 경관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이 되나, 제주도의 나잠어업의 경우와 같이 자원이 분산되어서 분포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개개의 사안별로 지정을 원하는 경우 등의 경우, 대상지구를 개별로 지정할 것인지 또는 묶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일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격이 유사한 자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지역전체가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경우 등은 사안별로 토론을 통하여 이중 또는 다중의 형태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지정형태는 단일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사한 성격의 유산을 묶어서 지정하는 다중형, 그리고 광역적으로 지역 전체의 유산을 연계시키는 광역형 등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대상지구의 지정을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핵심지역은 해당 유산이 보전 및 관리해야할 가치가 있는 전통적인 농어업시스템과 경관이 실제로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거나 유산의 형성, 유지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핵심지역에 연결하고 있으면서 핵심지역의 유산의 가치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그리고 유산의 지정범위를 유산이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범위를 넓혀서 넓은 지역으로 할 것인지는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세계농업유산의 경우는 일본의 사도의 경우와 같이 보다 광역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아지나, 한국 농어업유산의 경우는 대상이 되는 지구자체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개념의 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농어업유산과 농어촌유산

- 한국농어업유산 정책의 도입초기 단계에는 농어업 유산만을 대상으로 하되, 향후 농어촌으로 확대한다.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유산 외에도 농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다수의 농어촌유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어업유산의 발굴에서 시작하여 농어촌유산의 발굴로 이어져서, 국토공간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유산들을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유형을 나누어서 보전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4-11) 농어업유산과 농어촌유산의 지정 구분 방향

	시스템(소프트웨어)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비고
농어업 유산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기능 - 경관, 토지, 수자원 관리 특성 - 식량과 생계안전 - 공동체의 지식체계와 기술	농림어업, 축산활동 및 물이용과 관련된 경관 및 시설물, 장소	1차 시행
농어촌 유산	- 농어촌주민의 자연에 대한 적응과 정에서 나타난 삶의 양식 - 고유 부존자원의 활용 및 기술	농어촌공간에 있어서 주민 삶과 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전통적이고 지방적인 마을공간과 공간요소	향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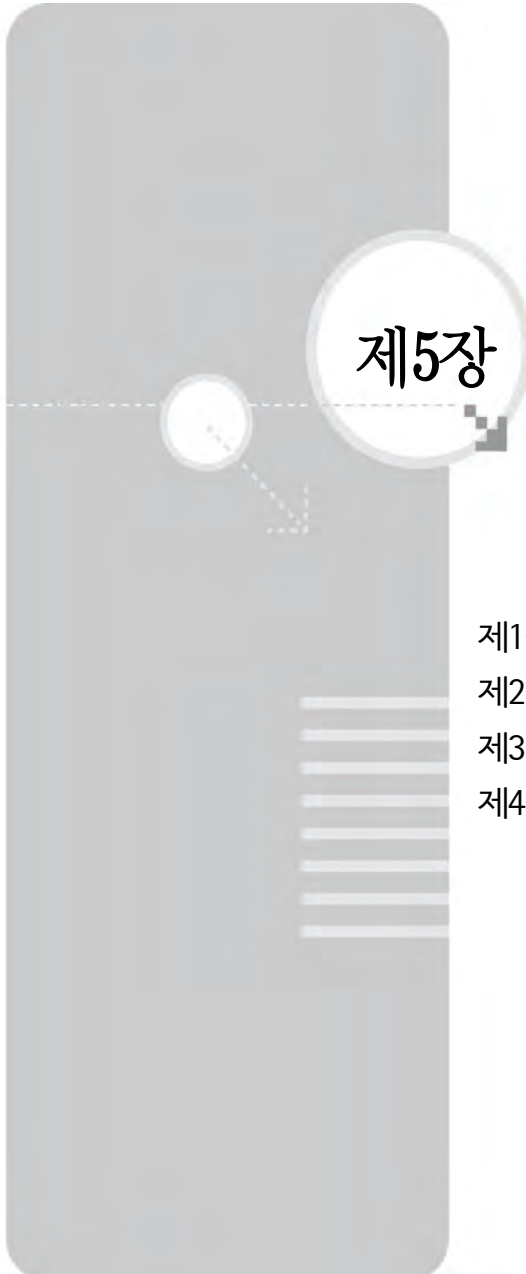
- 이러한 유산을 종합하여 정리할 경우 농어업유산의 유형 및 수준에 따라 세계농어유산으로 등재 가능한 것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농업유산의 등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국제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에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의 유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후보 : 농식품부 관리
- 국가지정 농어업유산 : 농식품부 관리
- 시·도지정 농어업유산 : 시·도지사 관리
- 시·군지정 농어업유산 : 시장·군수 관리(해당마을이나 주민단체의 참여)

- 나아가서는 자기 지역의 유산을 주민스스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역 사회의 특징과 차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촌개발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개발중심적인 사고에서 보전을 통한 활용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국가지정 농어업유산의 전망

- 농림수산식품부가 향후 국가지정 농어업유산을 몇 개 정도 지정하여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신청, 전문가들의 추천 등을 통해서 발굴된 농어업유산의 수는 70여개에 달하나, 농어업유산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5가지의 기준 즉 농어업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역사성, 대표성 등을 단순 적용해 볼 때 30여개가 해당된다.
- 현 단계에서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할 만한 수준에 있는 농어업유산은 어느 정도 발굴되었다고 판단되나, 실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의 수준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 다양하고 적극적인 발굴 작업을 수행할 경우 다수의 유산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목표는 국가 농어업 유산의 분야별, 지역별 발굴 작업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의 상황을 확인할 경우 현재의 보고서에 수록된 30여개보다는 상향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40-50여개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 국가지정 농어업유산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지정 농어촌유산제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연구 및 정책의 시행준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세계중요농업유산 해외사례 분석

- 제1절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요
- 제2절 일본 사도시 사례 분석
- 제3절 일본 노토반도의 사례 분석
- 제4절 시사점

제5장 세계중요농업유산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요

1. 개관

1) 정의

- 세계중요농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 적응을 통해 진화되어온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 시스템과 경관’으로 정의된다.
- 이 제도는 2002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시스템이나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농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즉,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GIAHS)의 중요성 인식 제고는 물론 혁신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해당지역은 물론 세계적인 편익 창출, 무엇보다 농업유산 보전을 강화하는 장기적 프로그램을 촉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인정절차

-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해당국가의 승인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즉 해당국가의 승인절차 없이 개인(또는 단체, 기관)이 직접 FAO에 제출하는 것(선택 1)과 반드시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은 후 FAO에 제출하는 것(선택 2)으로 구분되어 있다.
 - GIAHS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GIAHS로서의 잠재적 특징 파악, ② 제안서 작성(동태적 보전계획³⁹⁾ 포함), ③ FAO에 제안서 제출(선택 1 또는 선택 2), ④ 제안서 검토 및 현장 실사(필요할

39) GIAHS Dynamic Conservation Plan

경우), ⑤ GIAHS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 선택 1: 해당국가 승인 없이 FAO에 직접 제출
 - 해당지역의 농업생물 다양성, 수준 높은 전통농업시스템 보유, 아름다운 농업경관 보유, 전통적 토지와 수자원 관리 지식, 기술 보유 등 잠재적 특징 조사, 파악
 - GIAHS 동태적 보전계획을 포함한 제안서 작성
 - 해당 관청을 통해 GIAHS 제안서⁴⁰⁾ FAO에 제출
 - GIAHS 동태적 보전 계획을 위한 포괄적인 실행계획 수행
- 선택 2: 우선적으로 해당국가 승인을 걸쳐 FAO에 제출
 - 상기의 선택 1처럼 GIAHS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이 농업생물 다양성, 수준 높은 전통농업 시스템 보유, 아름다운 농업경관 보유, 전통적 토지와 수자원 관리 지식, 기술 보유 등 잠재적 특징을 조사하고 GIAHS 동태적 보전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
 - 해당지역의 원주민과의 갈등, 소유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가 필요
 - 해당국가에서 GIAHS 동태적 보전 계획과 제안을 공증
 - 해당국가의 담당기관이 공증된 제안서를 FAO에 제출

(표 5-1)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의 인정 대상과 절차

인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적인 농업제도 및 생태경관지역 · 농업과 관련된 수려한 경관지역 ·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지역 · 고유한 농사지식체계의 적응지역
인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AHS로서의 잠재적 특징 분석, 파악 · 제안서 작성(동적 보전 계획 포함) · FAO에 제안서 제출(선택 1, 선택 2) · 서류심사, 현지답사(FAO본부) · GIAHS 인정심의회에서 결정(2년마다 개최)

40) 제안서에는 농업유산 명칭, 소재지, 지형, 기후, 인구 등의 일반적 특징뿐만 아니라 GIAHS의 특징,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해야 함. 제안서 양식은 부록 참조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례의 개요 및 비교

가. 등재사례의 개요⁴¹⁾

- 세계중요농업유산은 2012년 11월 현재 19개⁴²⁾ 지역이 인정되었으며 31개 지역이 후보 등록되어 있다(표 5-2 참조).

(표 5-2)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의 인정지역과 후보등록지역

구분	국가	유산 명칭		
인정 지역	알제리아	Ghout System		
	케냐	Oldonyonokie/Olkeri Maasai Pastoralist Heritage Site		
	모로코	Oases System in Atlas Mountains		
	탄자니아	Engaresero Maasai Pastoralist Heritage Area Shimbwe Juu Kihamba Agro-forestry Heritage Site		
	튀니지아	Gafsa Oases		
	칠레	Chiloé Agriculture		
	페루	Andean Agriculture		
	중국	Aohan Dryland Farming System		Pu'er Traditional Tea Agrosystem
		Dong's Rice Fish Duck System		Rice-fish Agriculture
		Hani Rice Terraces		Wannian Traditional Rice Culture
	인도	Traditional Agriculture Systems, Koraput Saffron Heritage of Kashmir		
	일본	Noto's Satoyama and Satoumi		
		Sado's satoyama in harmony with Japanese crested ibis		
	필리핀	Ifugao Rice Terraces		
후보 등록 지역	카르파티아산맥	Traditional Agro-Ecosystems in the Carpathians		
	이탈리아	Lemon Gardens		
	네덜란드	Dutch Polder Systems		
	러시아	Traditional Reindeer herding in the Arctic region		
	루마니아	Mobile pastoral systems		
	기니	Tapade cultivation system		
	마다카스카	Mananara rice terraces and agroforestry		
	말리	West African Sahelian floodplain recession agriculture		
	남아프리카	Limpopo sorghum - pearl millet cultivation systems		
	미국	Little Colorado river watershed		
	브라질	Terra Preta - amazonian dark earths		
	가이아나	Agrarian system of the Wayana		
	멕시코	Chinampa Agricultural System		
		Milpa Solar Systems		
	이란	Estahbanat Rainfed Fig System		
		Qanat irrigation systems and homegardens Qashqai nomadic pastoralism		
	이라크	Marsh arabs and marshland agriculture		
	러시아	Udege forest management		
	인도	Alder based rotation and intercropping		Sikkim Himalaya-Agriculture
		Kuttanad Below Sea Level Farming System		Catamaran fishing
		Tribal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Korangadu silvo-pastoral management system
		Traditional Ladakh agriculture		Soppina Bettas Systems
		Raika pastoralists of the Thur desert		
스리랑카	Tank System			
	Wewe Irrigation System			
베트남	Pacific Islands Taro based homegardens			

41) 사례별 구체적 내용은 부록 참조

42) 본 보고서에서는 19개 인정 지역 가운데 자료 입수가 충분히 가능했던 10개 지역만 다룸

-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된 19개 지역 가운데 자료 입수가 가능했던 10개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일본은 2011년 6월에 니가타현의 사도시와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 2개 지역이 인정받았다. 사도시의 경우, 국가천연기념물인 따오기와 공생하는 저농약 농법으로 인정되었으며, 노토반도는 사토야마⁴³⁾와 사토우미⁴⁴⁾의 가치를 내세우며 인정되었다.
- 케냐, 탄자니아는 마사이부족의 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적 목축시스템과 고원생태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 중국의 경우, 와니안족의 전통적 쌀 경작시스템, 하니 다랑이 논, 벼-물고기 농법 등 총 6개 지역이 인정받았다. 그 가운데 3지역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와니안 족의 쌀 경작시스템은,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위안자오(Wuyuanzao)’라는 고유한 쌀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이 품종은 병충해와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품종으로 현재까지도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이 조성되고 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논 주변에 둘러싼 숲이 토양과 물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래전부터 전통 벼 경작법과 쌀 문화에 대한 기록을 남긴 특징을 갖고 있다.
 - 또한, 1,300여 년 전부터 놀라운 경관을 지닌 흥허 아일라오 산 남부 위안양현, 흥허현, 류춘현, 진핑현의 4개현에 걸쳐져 있는 7만 ha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다랑이 논이 펼쳐져 있는데 이 중 원난성 남동부 흥허현에 위치하고 있는 하니 다랑이논이 인정되었다. 이곳은 하니부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이 모여 살고 있고 산간지대의 산림과 농경지, 하천의 효율적인 물이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3) 사토야마(satoyama): 농가에 의해 유지관리 되어온 산림 및 농경지를 지칭함. 생태학자 四手井網英이 일본농촌의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제창한 개념. 四手井網英은 어디까지나 농업용에 이용되어 온 산림만을 지칭하였으나, 그 후 연구자에 따라 개념이 확장됨

44) 사토우미(satoumi): 해안해역 및 그것에 인접하는 육지에 있으며 인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되어 온 지역을 말함

- 다음으로, 룡시안마을은 벼-물고기농법으로 인정되었는데 물고기와 벼를 함께 재배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사기술로 화학비료,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마그레브지역 알제리, 튀니지에서는 대추야자 오아시스 농법으로 인정받았다. 이곳은 사막지대로 관개를 통한 대추야자 재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추야자, 나무, 곡물 3者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들에게 여유 있는 삶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필리핀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대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가져온 대규모의 이푸가오 다랑이 논이 현재까지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농생태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 칠레의 칠로에 섬은 감자, 망고, 딸기의 원산지로 토종 감자의 풍부한 유전자원과 문화유산의 유지보존시스템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특히 200여종의 다양한 토종감자가 오늘날에도 재배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마지막으로, 페루의 쿠스코, 푸노의 경우 안데스산맥 전통농업으로 인정되었는데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잉카시대 전통농법이 유지·계승되고 있으며 잉카시대 이전의 관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밭 주변의 굴에 물을 저장하여 냉해를 방지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 또한, 지형의 높이에 따라 재배작물이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저지대는 옥수수 재배, 중지대는 감자, 고지대는 방목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표 5-3)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인정사례(일부지역)

<p>[일본(사도시)] 따오기를 이용한 저농약농법</p>		<p>[일본(노토반도)] 사토야마와 사토우미농업 계단식 및 해변의 토지이용 농법</p>	
<p>[케냐, 탄자니아] 마사이족 목축시스템과 고원생태시스템</p>		<p>[중국] 와니안족 전통벼농업 지역의 고유품종유지 병충해와 척박한 땅에 강한 품종 논둘레 숲의 물 공급 및 생물다양성 보존</p>	
<p>[중국] 하니다량은 산간지대 토지이용 1만년 이상 역사성 7만ha이상의 규모 효율적 물이용시스템</p>		<p>[중국] 벼-물고기농업 물고기와 쌀의 공급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의 감소</p>	
<p>[알제리, 튀니지] 마그레브 지역의 대추야자 오아시스농업 사막지대의 토지이용 대추야자, 나무, 곡물의 상호작용</p>		<p>[필리핀] 이푸가오 다랑이논 고산지대 대규모 다랑이논 생물다양성의 보존</p>	
<p>[칠레] 칠로에 농업 감자, 망고, 딸기의 원산지 200여종의 감자농업 다양한 생물종 서식</p>		<p>[페루(쿠스코, 푸노)] 안데스산맥 농업 잉카시대 농법유지 저지대(옥수수), 중지대(감자), 고지대(방목장) 재배</p>	

출처: 윤원근·최석인(2012), 2012 농업전망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 발굴과 보전」 p.311

나.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사례의 특징

- 본 연구에서 조사한 10개 지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례의 분포, 규모, 전통농업시스템 유무, 생물다양성 등을 살펴보면서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 우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이 6곳으로 가장 많으며, 남미와 아프리카지역이 각각 2곳이며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은 아직 등재된 곳이 없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등재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된 범위(면적)는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일본 노토반도가 186,600ha로 가장 넓으며 중국의 와니안지역은 200ha에 불과하다. 10개 지역 평균은 약 49,000ha로 서울시 면적의 약 4/5 해당한다. 이처럼 면적의 편차가 큰 이유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상이 하나의 마을에서부터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10개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공통적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지역의 환경과 지형 등을 고려한 친환경 농법, 전통적 농법 등 그 지역만의 전통적 농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통적 농업시스템을 계승, 유지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랑이논, 고원처럼 우수한 농업경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예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적 의식, 예능, 축제, 음식 등 그 지역만의 전통적 사회(생활)시스템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고유한 풍토, 기후, 지형에 의해 자연스럽게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토착종(재래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 10개 사례 가운데 유일한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사도시는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 노토반도는 역사 및 전통을 농업문화와 일체화하여 보존하는 능력 등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더하여 농업유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계몽, 보전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 행정, 지역대학 등 관련 주체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일본의 사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 사례를 통해 본 인정 기본 조건

- 지정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공통적인 기본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3 참조).
- 첫째, 전통적 농업시스템이 계승 및 유지되어야 한다. 일본의 따오기 농법과 중국의 벼-물고기농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농법으로 이루어진 친환경농법,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논외의 구조 및 형태로 전통적인 농업토목기술이 나타나든지, 그 지역만의 독특한 농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둘째, 일본의 노토반도와 중국의 하니 다량이 논과 같이 전통적 농업시스템에 의해 지형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농업경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셋째, 그 지역만의 색다른 전통의식, 예능, 축제, 음식 등의 전통적 사회(생활)시스템이 현재까지도 보전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넷째, 그 지역의 풍토, 기후, 자연환경에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무엇보다 생물다양성을 위해 복원하고 보호하며, 재래종(토착종)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5-4)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인정사례 비교

구분	① 따옴기를 이용한 지농약농법	② 시도아마와 시도우미농법	③ 목록시스템과 고원생태시스템	④ 외나무족 전통벼농법	⑤ 하니 다랑이논	⑥ 버-물고기 농법	⑦ 대추야자 오아시스농법	⑧ 이푸가오 다랑이논	⑨ 철로에 농법	⑩ 만데스산맥 농법
국가	일본	일본	케냐, 탄자니아	중국	중국	중국	알제리, 튀니지	필리핀	칠레	페루 (쿠스코, 푸노)
면적	855㎢ (85,500ha)	1,866㎢ (186,600ha)	93,148ha	200ha	13,012ha	461ha	1200ha (일제단: 500 ha, 튀니지: 700 ha)	68,416ha	10,616ha	30,798ha
농업 경관	△	○ * 다랑이논	△	△	○ * 다랑이논	△	△	○ * 다랑이논	△	△
	진통 농법 시스 템	△	○	○	○	○	○	○	○	○
진통 생활 시스 템	×	×	×	○	△	-	-	-	○	○
	진통 예능 시스 템	○	○	○	○	-	-	-	○	○
생물 다양성	○	○	○	○	○	○	○	○	○	○
	○	○	-	-	△	△	△	△	△	△
지역 주민 참여	○	○	-	-	△	△	△	△	△	△

주 1: 농업경관은 전통적 농업시스템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우수한 경관(예, 다랑이 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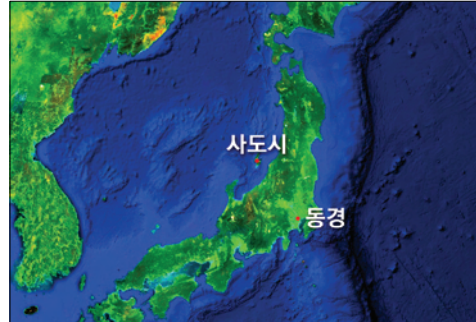
주 2: 지역주민참여란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물론 지역의 모든 주민이 농업유산 보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 3: ○: 해당, △: 약간 해당, ×: 해당없음, -: 미확인

제2절 일본 사도시 사례 분석

1. 사도시의 개요

- 사도는 일본해 중앙에 위치함 섬으로, 니가타(新潟) 현(縣)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다. 섬의 크기는 약 855km²이며, 280km에 달하는 해안 지대는 다채롭고 아름답다.



<그림 5-1> 사도시 위치

- 코쿠푸가와(國府川) 강이 섬 중앙을 흐르고 있으며 이 강의 분수령에는 벼를 재배하는 쿠니나카(國仲) 평야가 북쪽으로 오사도(大佐渡) 산과 남쪽으로 코사도(小佐渡) 산 사이에 펼쳐져 있다.
- 섬의 대부분이 준국립공원이나 현(縣)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도 섬은 최근 방생한 따오기⁴⁵⁾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북쪽의 오사도 산의 향나무림이 바다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축복 받은 곳이다.
-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사도 섬의 인구는 62,724명이었으며 매년 1,0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노령 거주자(65세 이상)의 비율이 36.8%로 니가타 현에서 5번째로 높고 일본 전체 평균 2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2004년, 10군데 지방자치체 구역이 통합하여 사도시를 구성하였으며, 사도시는 전체 섬을 포괄한다. 통합 이후, 사도 섬은 ‘생태섬 사도(Eco-Island Sado)’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주민과 따오기의 공존과 온실 가스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진하였다.

45) 따오기(Wild Japanese crested ibis)는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조류로 일본어로는 ‘토키(도끼)’라고 불림

- 농지는 전체 6,000ha이며 이 중 4,000ha가 섬 중심의 내륙 평야지대에 위치하며 사도 섬의 언덕과 계곡은 벼논, 농지, 삼림, 연못, 수로로 가득 차 있고, 농업은 벼, 채소, 가축을 주요 품목으로 하며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온류의 영향으로, 섬의 생태계는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도 섬의 벼 재배는 일본 야오이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17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에도 시대의 사도 킨잔(金山) 금광 개막 이후 인구 증가로 새로운 농지의 개발이 더욱 이루어지면서 많은 전통 예술과 문화 활동을 꽃피우게 되었다.

2. 사도시의 세계농업유산 인정 배경 및 경위

가. 인정 배경

- 사도 섬은 아름다운 사도야마(里山)의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인간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오랫동안 살아 왔다. 에도 시대의 사도 킨잔 금광 개발과 함께, 섬의 인구는 100,000명까지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식량(쌀)의 수요도 급증하여 섬의 산간부까지 논으로 개간할 수밖에 없었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100여개의 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오랜 시간을 걸쳐 논은 사도지역의 소중한 농업자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계단식논과 저수지 등은 훌륭한 농촌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계단식논은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을 도왔으며 이로 인해 따오기의 마지막 서식지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고대부터, 일본 사람들은 아름다운 깃털 때문에 따오기를 소중히 여겼다. 에도 시대에는 정부에서 제정한 보전 정책으로 평민이 따오기를 사냥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따오기가 일본 전역에 걸쳐 생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메이지 시대 중반 무렵부터 따오기 사냥 제한이 해제되고 나서 깃털과 고기를 얻기 위한 따오기의 남획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따오기 개체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 니가타 현에서는 1926년 따오기가 멸종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었으나 사도 섬에서 두 마리의 따오기가 1931년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이 계기가 되어 사도섬에서의 따오기 보전이 시작된 것이다. 1934년 따오기가 국립 천연 기념물(living national monument)로 공표되었을 때 약 100마리의 개체가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1959년 즈음 이후로 그 수는 급감하였다. 이로 인해, 사도 지역 주민은 농약(따오기의 먹이가 되는 생물도 죽일 수도 있는)을 사용하지 않는 벼 재배, 따오기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미꾸라지의 투입 등, 따오기의 먹이사슬을 복원,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따오기의 개체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 그러나 50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따오기의 개체 감소는 계속되었고, 1981년 포획 사육을 위해 따오기를 포획했을 때에는 야생에 총 5마리의 개체가 남아 있었다. 일본 야생에서 따오기가 사라진 적이 있는 것이다.
- 농약 사용과 농지 재개발이 따오기의 개체 감소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따오기 개체의 심각한 감소는 농약 사용과 농지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 이전부터이며 농약이 사용될 때 즈음에는 따오기의 개체 수가 20마리로 떨어졌으며, 자연적인 변식을 하기에는 개체 수가 너무 적었던 것이 따오기의 궁극적인 "야생 멸종"의 주요 요인으로 믿어진다.
- 1960년대와 1970년대, 생태계와 먹이 장소를 잃으면서 따오기의 서식 환경이 더 나빠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남아있던 개체들은 대규모 삼림의 벌목으로 인한 보금자리 손실, 농약 사용으로 먹이가 되던 종의 감소, 농지 재개발로 인한 습지 감소, 쌀의 초과 생산을 줄이기 위한 계단식 논 의 유기 등에 영향을 받았다.
- 따오기의 주요 먹이 장소인 논이 먹이 종의 개체군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논은 자연 복원 노력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들을 유지해야 하는 논 농업 체계는 쌀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과 과잉 쌀 생산을 줄이려는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매우 적은 농민만이 남게 되었고 버려지는 벼논은 증가하였다. 동시에, 도로와 관개 체계를 유지하려는 마을에 기반을 둔 노력은 사라지면서 이런 유지 노력은 중요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 게다가, 논 기능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논 능력은 꾸준히 쇠퇴해왔다. 이것은 시간제 농민들이 부족한 인력과 다른 제약 조건을 직면하면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적은 노동력을 요하는 재배 기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전체 농업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사도 섬의 따오기의 지속적인 생존은 지금까지 확립한 야생 동물 보호구역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유지 시켜온 생물 서식공간(서식지)만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육성하고 논이 따오기의 먹이 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쌀 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 따오기를 위한 먹이 환경을 재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미꾸라지나 벌레와 같이 논 안이나 논 주변에서 먹이가 되는 종의 서식지와 이들의 번식 조건을 지원하는 기술과 따오기의 사냥을 쉽게 도와주는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앞서 행해지던 수답(wet-field)에서의 벼 재배 기술도 "생물 다양성을 육성하는 농업 기술"로 전체 지역에 장려되고 있다.
- "따오기를 지지하는 생물다양성과 공존하는 섬 창출"에 대한 섬 전체의 노력, 특히 이런 종류의 재배 기술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배 기술 확산과 농민 소득 향상과 같은 다른 많은 편익으로 실현되었다.

나. 인정 경위

- 이러한 노력은 환경과 경제가 서로를 지지하는 모범 사례로 장려되어 왔으며, 일례로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The 10th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10)와 같은 국제무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을 위한 사도시의 도전은 단순히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토지 이용 체계와 사도 농업의 아름다운 경관에만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사도 섬의 참여는 환경, 역사, 다양한 전통 예술, 사도의 농업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문화(또한 이들을 육성시키는 주민과 지역 마을과도 연관이 깊은)를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 사도시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인정되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2011년 1월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기념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도의 경우 무엇이 세계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논제를 가지고 환경성, 지역대표, 국제연합대학, 농정국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 2011년 5월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에 앞서 의견교환회를 가져 사도시장이 신청제안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2011년 6월 10일에 북경에서 사도시장이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 다음 날인 6월 11일에 정식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았다.
- 2012년 1월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된 필리핀 이푸가오 다랑이 논을 시찰하였으며 7월에는 생물다양성 국제농업회의를 개최하였다.

(표 5-4) 사도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 전후의 주요 경위

연도	월	내용
2010년	9월	국제연합대학으로부터 추천 의향 - 사도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국제연합대학이 북령농정국에 전달 - 북령농정국이 니가타현, 사도시에 설명
	9~10월	북령농정국, 니가타현, 사도지 3자 의견교환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목적, 대상, 과제 등에 대해 논의
	11~12월	인정신청준비 - 신청서 작성
	12월	GIAHS사무국에 신청 및 국제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신청 공표
2011년	1~5월	지역주민들에 홍보 -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기념 포럼개최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의견교환회
	6월10일	북경에서 사도시장이 제안내용 발표
	6월11일	정식적으로 GIAHS에 인정
	6월15일	국제식량농업기관(FAO)사무국장 등 사도시 시찰
	6월16일	인정식
	7월	지역주민의견교환회(4회)
2012년	12월	세계중요농업유산 추진포럼 개최
	1월	필리핀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찰
	7월	생물다양성 국제농업회의(ICEBA2012) 개최

3. 사도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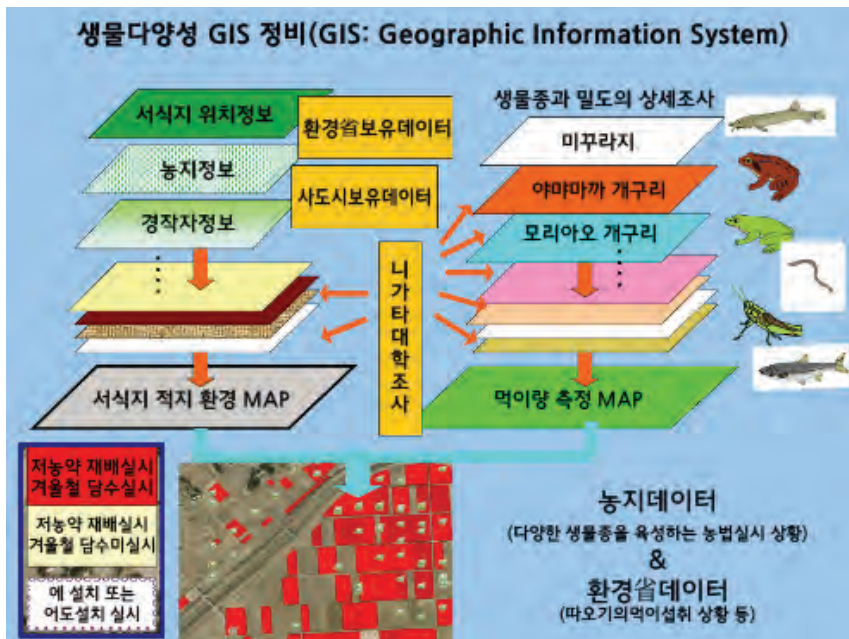
- 사도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인정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물다양성을 복원, 보전하고 있다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지역공동체의 풍습, 문화의 계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을 들 수 있다.

가.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생물다양성의 보전 체계 구축

- 사도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물다양성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으며<그림 5-2>, 이로 인해 따오기의 먹이 장소에 대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먹이

장소 개선에 대한 기술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도시는 논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 사도시의 논에는 미꾸라지, 올챙이 등 약 60여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에 대한 유용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운동으로 연 2회 6월과 8월 사도시 전역에 걸쳐 '생물 조사하는 날'을 정해 농업인, 어린이 등 지역주민이 농경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체를 관찰, 조사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초등학교 40여명으로 구성된 생물체 조사단을 구성 연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5-2> 사도시 생물다양성 지리정보시스템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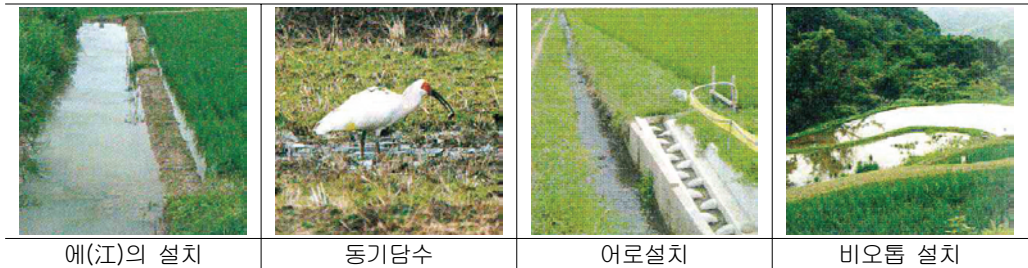
나. 경관, 토지, 수자원의 관리: 자연농법(친환경농법)의 확대

- 사도시는 2008년부터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朱鷺と暮らす郷づくり認定制度)를 도입 친환경적 논 농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인정제도는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에(え, 江)⁴⁶⁾의

46) 논 일부이며 논에 서식하는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말함

설치, 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논과 용수로 간의 어도 설치, 겨울철 논 생태계 유지를 위한 동기담수(冬期湛水), 그리고 따오기의 먹이 확보를 위한 비오톱 설치를 하고 있다.

- 논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에(え, 江)는 논 물이 빠는 시기에도 미꾸라지, 올챙이 등 논에 서식하는 생물체를 위해 물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만들어 생물체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 논과 용수로 간에 설치하는 어도는 논과 용수로와의 통로를 만들어 논에 서식하는 생물체가 논과 용수로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논은 수확 후 겨울철에는 물을 담수하지 않고 빼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도시의 경우 겨울철에도 물을 빼지 않고 담수하여 4계절을 통해 논 생태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논 주변에 설치해 놓는 비오톱은 생물체가 연중 안심하고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줌으로써 따오기의 먹이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5-3>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

- 이러한 따오기와 함께하는 친환경적 농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사도시는 독자적으로 소득보상 제도를 마련, 추진하고 있다. 소득보상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사도시에 주소가 있는 경영체, ② 사도시 내에서 관행농법에 비해 5할 이상 저화학 농약, 저화학 비료로 재배하면서 주식용 쌀을 생산, ③ 국가의 농업자 호별 소득보상 제도의 조성대상자의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보상단가는 10a당 동기관수가 1,000엔, 에의 설치 2,000엔, 어도의 설치 4,000엔 이다. 이와는 별도로 논 생태계 조사를 할 경우에도 4,000엔이 지급된다.

- 2008년에 256농가가 참여 427ha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693농가 1,320ha가 인정받았으며 이 면적은 사도시의 전체 논 면적의 약 20%에 해당된다.

(표 5-5)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 추진 현황

연도	참여농가	인정총면적 (ha)	동기관수 면적(ha)	에의 설치 면적(ha)	어도설치 면적(ha)	비오름설치 면적(ha)
2008	256	427	361	73	0.9	1.1
2009	510	863	775	195	0.9	1.5
2010	651	1,188	1,093	329	17	1.7
2011	693	1,320	1,176	440	34	2.0

다. 사회조직과 문화: 지역공동체에 의한 전통예능 계승

- 사도지역에는 전통예능의 보고로 알려질 정도로 다양한 민속예능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특히 노우(のう:能)⁴⁷⁾라는 전통예능이 다수 남아 있으며 최근에도 각 마을의 노우무대에서 각종 노우가 공연되고 있다. 특히 분야인형, 셋쿄인형, 노르마인형은 국가중요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니다이코는 사도에 밖에 없는 진귀한 고전 예능으로 사도지역 각지의 제례행사에서 공연되고 있다.



노우(能)

오니다이코

<그림 5-4> 사도시의 전통예능

- 또한 사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예능으로 구루마모내기(車田植)를 들 수 있다. 구루마모내기는 1979년 국가 중요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전통농업 예능의 하나로 매년 5월 중순에 모습을 볼 수

47) 노우(のう:能)는 일본 남북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예능(연극)임.

있고 구루마 모내기 보존회 보호단체가 있어 아직까지 그 풍습이 이어지고 있다. 구루마모내기 방법은 모내기하는 이른 아침, 모판에서 3개의 소쿠리 모를 꺼내 놓고 술, 음식과 함께 논 의 신에게 제를 올린 후 술을 논에 뿌린 후 모내기를 시작하면 논 주인은 3명의 여자에게 각각 한 소쿠리의 모를 주고 모를 전달받은 3명의 여자는 소쿠리의 1/2를 가지고 원을 그리며 논의 중앙부까지 심고, 나머지는 다시 논 가장자리로 나오면서 심는데 일본어의 노(の)자 모양으로 심는 독특한 일본의 오랜 농경 풍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5> 사도의 구루마모내기(車田植)

- 사도시의 지역(마을)공동체 재활성화 및 전통예능의 계승을 위한 목표로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 내외부의 다양한 조직과의 협동 체계를 구축,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차세대 농업인 육성으로 정했다.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도 재활성화 도전 프로젝트(Sado Revitalization Challenge Projects)와 공동체 지원 모델 프로젝트(Community-Support Model Projects)를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
- 또한 공동체 보조금 프로젝트(Community Subsidy Project)와 번영 공동체 지원 프로젝트(Prosperous Communities Support Project)를 통해 지역의 전통예술(예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라. 파트너십: 관련주체들 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

- 사도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공동체 재활성화, 휴경지 복원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기반을 둔 연계와 협조가 불가피하다. 현재 산림과 논 의 복원 활동은 “따오기 브랜드 인증 쌀”의

판매로 지원되고 있으며 활동의 일부는 기업의 사회적임 경영과 같은 경로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혹은 개인으로부터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다양한 연계협력 활동은 인적자원개발,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공동체 재활성화와 관련하여 니가타대학, 도쿄농업대학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도시 전체를 환경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구할 계획이다.



<그림 5-6> 따오기 브랜드 도시락

<그림 5-7> 따오기 브랜드 인증 쌀

(표 5-6) GIAHS 인정기준에 의한 사도 사례의 특징 요약

구분	기준	사도
I. 시스템의 고유특성	1. 현저한 특징	· 생물다양성의 보전체계 구축(생물다양성지리정보시스템) · 따오기와 함께 공존하는 고향만들기 인정제도: 예, 어도 설치, 비오톱, 동기담수 · 소득보상제도 · 전통예능: 오니다이코 · 구루마모내기
	2. 지속성의 역사	· 사토야마
	3. 세계적중요성	· 따오기의 자연복원
II. 정황성	1. 대표성	
	2. 외부의 위협	
	3. 정책 및 개발적용성	· 환경적불제
III. 프로젝트수행성	1. 프로젝트통합성	· 니가타대학, 도쿄농업대학과 연계협력 활동 · 따오기 브랜드 인증 쌀의 판매로 기업의 사회적임경영으로 기업 또는 개인으로 기부
	2. 공동편드의능력	
	3. 프로젝트 접근성	· 재활성화 도전 프로젝트, 공동체 지원모델 프로젝트, 번영 공동체 지원 프로젝트

4. 사도시의 세계농업유산 인정을 위한 주체별 역할

가. 행정기관

- 농림수산업은 인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생태적 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하면서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고 번식하기 위한 소중한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들은 화학 비료와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조장(藻場, seaweed bed)과 습지(tidal flats)의 매립,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한 농지와 수로의 재개발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영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논, 수로, 연못이 제공하는 수자원과 생태 네트워크를 보존하는 것 등, 생물다양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농업생산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 2004년, 야생 따오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존을 목표로 하는 "따오기 보호와 증식 프로젝트"가 일본 세 부처(환경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에 의해 수정되었다. 이 계획에 기초하여, 환경성은 따오기의 사육, 양육 및 방생과 방생한 따오기의 관찰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타 부처들도 따오기의 보금자리와 둥지를 틀 수 있는 나무의 보존, 논, 운하, 강에서의 먹이 장소 확보 등을 통한, 따오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이 자연과 화합하여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니가타 현은,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의 기본 골조가 되는 "니가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2010년에 제정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복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더불어 니가타 현 사도 지역 개발 사무소는,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둔 활동과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사도시와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나. 지역농협

- 사도 농업협동조합과 하모치 농업협동조합이 연계 협력하여, "따오기 브랜드 인증 쌀"과 관련한 활동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단식논의 보존, 새로운 상품 브랜드 개발, 생산부터 판매까지를 포함하는 사도의 전반적인 쌀 생산 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 사도시 환경 및 경제 전략에 기반을 두어 감과 느타리버섯 등 농림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또한 쌀과 감의 저장 및 유통시설의 효율성을 한층 더 확보하여 판매 전략과 기반시설 구축하고 있다.
- 계단식논 보전지역위원회, 농업생산자 기업, 사도 농업협동조합, 하모치 농업협동조합은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와의 정보 교환 및 공유하고 있다.

다. 지역대학

- 사도시가 속해 있는 니가타현에는 국립대학인 니가타대학이 있다. 이 대학에서는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 "생물다양성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연구와 연구자 배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앞으로 니가타대학은 따오기와 생태계 복원 센터와 연계하여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학습 과정을 만들 계획이며, 생물다양성에 기반을 둔 농림수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제3절 일본 노토반도의 사례 분석

1. 노토반도의 개요

- 2011년 6월 이사카와현(石川縣)의 나나오시(七尾市), 와지마시(輪島市), 스즈시(珠洲市), 하쿠이시(羽咋市), 시카마치(志賀町), 나카노토마치(中能登町), 아나미즈마치(穴水町), 노토초(能都町)의 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노토의 사토야마(里山), 사토우미(里海)”가 니가타현의 사도시와 함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농업유산으로 인정되었다.



<그림 5-8> 노토반도 위치

- 노토반도는 일본 혼슈(本州)중앙부에 위치하며 동해의 최대 반도이다. 남북으로 약 100km, 동서로 약 30~50km이며 반도의 대부분이 이사카와현에 속한다.
- 노토반도는 2,100여 년이 넘는 기나긴 역사와 문화를 자랑한다. 고고학 조사에 따르면 노토 반도에 최초로 거주한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활동을 했으며, 노토 반도에 농업이 도입된 시기는 1,300여 년 전인 나라(奈良)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 지난 천여 년을 거치면서 노토 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깃들여 사는 자연 환경에 맞춰 진화해왔다. 그 덕분에 오늘날 노토 반도에는 원시 애니미즘, 자원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세습되던 봉건 시대의 풍습, 서양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현대의 법과 규제가 공존하면서 자연관, 자원 이용에 관한 권리에 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신도와 불교에 바탕을 둔 전통적 관습도 여전히 노토 반도 전역에 퍼져 있는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다.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파종 축제, 추수 축제, 어부와 해변 주민의 수호신에게 감사드리는 고유의 지역 축제인 기리코(kiriko), 노토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된 모내기 및 추수 축제인 오쿠 노트 아에노코토(Oku-noto Aenokoto) 등을 들 수 있다.

- 노트 반도는 농업 지대가 산지와 매우 가까워서 농업 활동뿐 아니라 임업 활동과 어업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형적인 일본 농촌의 축소판이다. 넓은 계곡 사이사이로 언덕과 들판이 점점이 흩어져 있어 녹색 회랑을 이루고, 해안에는 화산암이 흩어져 있는 전형적인 반도 지형인 노트 반도는 사토야마(2차림, 농장, 초지, 농경지, 목초지, 저수지, 운하로 구성된 육지 지형)와 사토우미(해변, 바위해변, 조습지, 해조류 서식지로 구성되는 해안 지형)로 알려진 사회 생태적 시스템을 잘 관리해온 특징을 지닌다.

2. 노트반도의 세계농업유산 인정 배경 및 경위

- 노트반도는 지역에 뿌리내린 사토야마·사토우미가 밀집된 지역이며 ‘노트반도의 사토야마 사토우미’의 등재는 그 종합적인 힘이 평가받은 것이다. 노트반도의 농림수산업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 ‘세계농업유산’으로써 인정된 것이다.
- 또한 2010년 10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조약 제10회 체결국회의(COP10)’에서 ‘SATOYAMA이니셔티브’의 추진이 채택되는 등 최근 사토야마(SATOYAMA)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세계농업유산 인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SATOYAMA이니셔티브’】

사람의 삶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생적인 자연환경만이 아닌 사토야마와 같이 농업이나 임업 등 사람이 이용함으로써 형성·유지되어 온 환경의 보전도 중요하다. ‘SATOYAMA이니셔티브’는 그러한 이차적 자연환경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양립을 목표로 일본정부가 제창하였다. 이시카와현은 국제연합대학 등과 함께 국제적인 사업을 진행해나가기 위한 조직 ‘SATOYAMA이니셔티브 국제파트너십(IPS)’의 창설 멤버이다.

- 노토반도가 세계농업유산으로 인정된 배경에는 2010년 6월 국제연합대학 주최로 열린 <사토야마와 세계농업유산>이라는 워크숍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농림수산성, 이사카와현, 가나자와대학이 참가 노토반도에 펼쳐진 사토야마, 사토우미를 세계농업유산으로 신청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표 5-7) 노토반도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 전후의 주요 경위

연도	월/일	내용
2010년	6월 5일	- 국제연합대학이 <사토야마와 세계농업유산> 워크숍을 이사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개최 - 워크숍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농림수산성, 이사카와현, 가나자와대학이 참가
	11월 30일	- 이사카와현 노토지역의 8개 자치단체가 모여 노토지역 GIAHS추진협의회를 설립
	12월 17일	- 노토지역 GIAHS추진협의회가 이사카와현, 국제연합대학, 가나자와대학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성의 협력으로 노토의 사토야마·사토우미라는 명칭으로 세계농업유산 인정 신청
	12월 19일	- 이사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개최된 <국제생물다양성 글로벌이벤트>에서 다니모토마사노리 이사카와현 지사가 신청경위와 인정 의의에 대해 설명
2011년	6월10일	-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농업유산 국제포럼>에서 노토의 사토야마·사토우미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실시
	6월11일	- 정식으로 GIAHS에 인정
	6월17일	- 이사카와현 와지마시에서 노토의 사토야마·사토우미 세계농업유산 등재 오프닝 이벤트 개최(인정식) - 세계농업유산 활용실행위원회 발족

- 그 후, 이사카와현 노토반도지역의 8개 자치단체로 이루어진 노토지역 GIAHS추진협의회를 2010년 11월에 설립하여 본격적인 인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인정 준비과정에 이사카와현은 물론 국제연합대학, 가나자와대학, 농림수산성이 협력해 주었으며 이러한 협력 덕택에 추진협의회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12월에 세계농업유산으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 2011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농업유산 국제포럼>에서

노토반도의 사토야마·사토우미에 대해 보고를 했으며 정식으로 세계농업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3. 노토반도의 세계농업유산 인정 요인

- 노토반도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인정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① 생물다양성이 보존된 전통적인 농림어법과 토지이용, ② 사토야마·사토우미가 품고 있는 다양한 생물자원, ③ 우수한 사토야마·사토우미 경관, ④ 훌륭한 자원들을 계승해 나아가야 할 전통적인 기술, ⑤ 오랜 역사의 농경문화와 제례, ⑥ 사토야마·사토우미의 이용 보전 기술 이다.

가. 생물다양성이 보존된 전통적인 농림어법과 토지이용

- 햇볕으로 벼의 이삭을 말리는 ‘하자호시(はざ干し)’나 해녀의 물질 등 전통적인 농림어법이 지금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또한 산의 사면을 이용한 계단식 논이나 골짜기를 이용한 곡지 논이 있고 농업 용수원으로써 2000개가 넘는 붓물 등이 연속적인 모자이크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또한 생태계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으며, 절멸위기에 놓인 희소종을 포함한 생태계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생육장소이다.



나. 사토야마·사토우미가 품고 있는 다양한 생물자원

- 샤프 물방개(シャープゲンゴロウモドキ), 호쿠리쿠 도롱뇽(ホクリクサンショウウオ), 이카리몬 길잡이(イカリモンハンミョウ) 등의 희소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생식, 서식하고 있으며 300종 이상이나 되는 철새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나카지마채(中島菜) 등의 ‘노토 야채’나 노토다이나곤 팔 등을 비롯한 재래품종의 재배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 우수한 사토야마·사토우미의 경관

- 일본 서해에 면한 급경사지에 펼쳐진 ‘시로요네(白米)의 센마이다’ (와지마시)를 비롯한 계단식 논이나 곡지논, 지붕 잇기, 검은 기와·하얀 벽으로 된 집들, 일본 서해의 강한 해풍으로부터 가옥을 지키는 ‘마가키’라 불리는 대나무 울타리 등은 일본의 농산어촌의 원래 모습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경관이라 할 수 있다.



라. 계승해 나아가야 할 전통적인 기술

- 일본에서 유일하게 노도에만 남아있는 ‘아게하마 식(式)’이라 불리는 제염법이나 사토야마의 관리·보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숫구이’,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공예 ‘와지마 칠기’ 등의 전통적인 기술이 계승되고 있다.



마. 오랜 농경문화와 제례

- 풍어와 풍작을 기원하며 ‘기리코’ 또는 ‘봉등’이라 불리는 높이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르는 신등이 마을을 행진하는 ‘기리코 마쓰리’를 비롯하여, 밭의 신에게 감사를 하는 제사로서 2009년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관(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농경의식 ‘아에노코토’ 등 농림수산업과 관련이 깊은 문화·제례가 계승되고 있다.



바. 사토야마·사토우미의 이용보전 활동

- ‘노토의 사토야마 사토우미’를 후대에 전해주기 위하여 계단식 논외 오너 제도나 농가민박 등,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도시주민과의 교류에 착수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림어업 종사자, 행정, 지역주민, 대학 등의 고등교육연구기관 등이 서로 연계하여 인재의 육성, 농림수산업의 부흥, 생물다양성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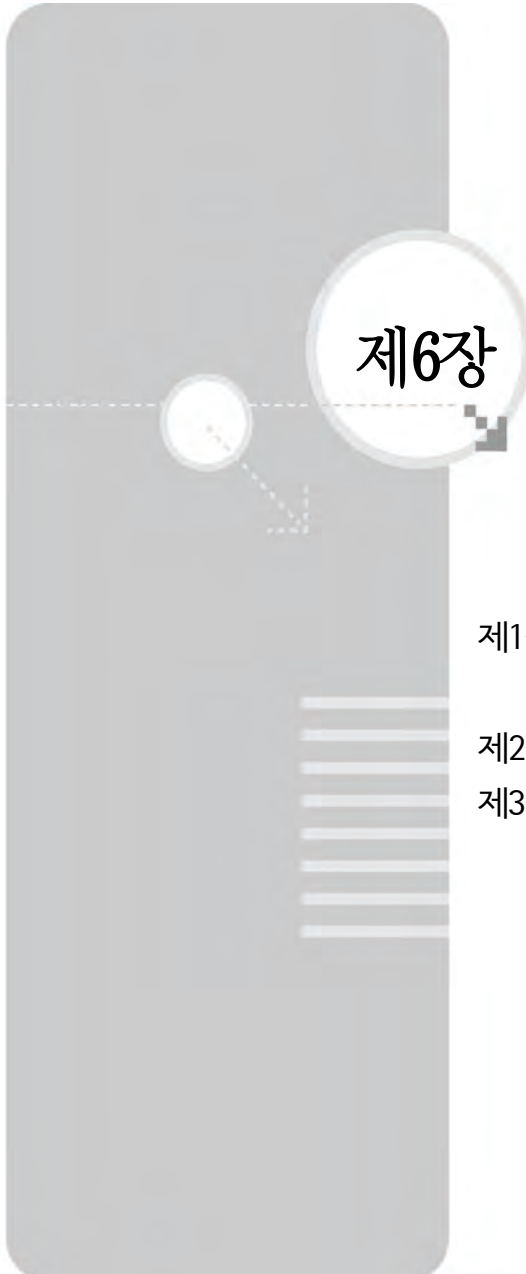


(표 5-8) GIAHS 인정기준에 의한 노토반도 사례의 특징 요약

구분	기준	노토반도
I. 시스템의 고유특성	1. 현저한 특징	· 전통예능: 기리코축제, 아에노고또 · 사토야마(2차림, 농장, 초지, 농경지, 저수지, 운하로 구성된 육지의 지속가능한 생태시스템) · 사토우미(해안, 바위, 조습지, 해조류서식지 등으로 구성된 해안의 지속가능한 생태시스템) · 사토야마, 사토우미 유지를 통한 생물다양성 수호 · 하자호시, 해녀의 물질 등 전통적 농림어업 계승 · 300여 종의 철새 서식
	2. 지속성의 역사	· 사토야마, 사토우미 · 전통예능의 지속성
	3. 세계적중요성	-
II. 정황성	1. 대표성	-
	2. 외부의 위협	-
	3. 정책 및 개발적용성	· 향토산업의 발굴 및 육성
III. 프로젝트 수행성	1. 프로젝트통합성	· FAO, 농림수산성, 국제연합대학, 가나자와대학과 연계협력 활동
	2. 공동편드의능력	-
	3. 프로젝트 접근성	· 생물다양성조약 제10회 체결국회의에서 사토야마이니셔티브 추진(2010년) · 국제연합대학 주최의 사토야마와 세계농업유산워크숍(2010년)

제4절 시사점

- 세계 중요 농업유산제도의 의의는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통적 농업에 대한 재발견, 재평가라 할 수 있다. 2002년에 도입되어 2012년 11월 현재 19곳이 인정되었고 31곳이 후보지로 등록되어 있어 점점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인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지역만의 전통적 농업시스템과 그것과 어우러진 생활시스템을 계승, 유지하고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 지역의 지형, 기후, 풍토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희귀성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통적 농업·생활시스템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간의 먹을거리에 대한 지속성 확보차원에서 작물의 토착종(재래종)을 오랜 역사 동안 보전해 왔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 할 수 있다.
- 최근 들어 인정된 일본의 두 지역의 경우는, 아프리카, 남미, 중국지역과는 달리 전통적 농법, 생물다양성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농업유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계몽,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 행정, 지역대학 등 관련 주체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지역주민 정서 등 유사한 면이 많은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인정받기 위해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다른 유산(문화적 유산, 자연유산 등)과 달리 실제적으로 농업활동, 농촌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승,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역주민과, 행정 공무원 등 관련주체자들은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훌륭한 유산자원들을 발굴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을 준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제6장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 방안

제1절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
기본개요

제2절 농어업유산의 관리·활용방안

제3절 농어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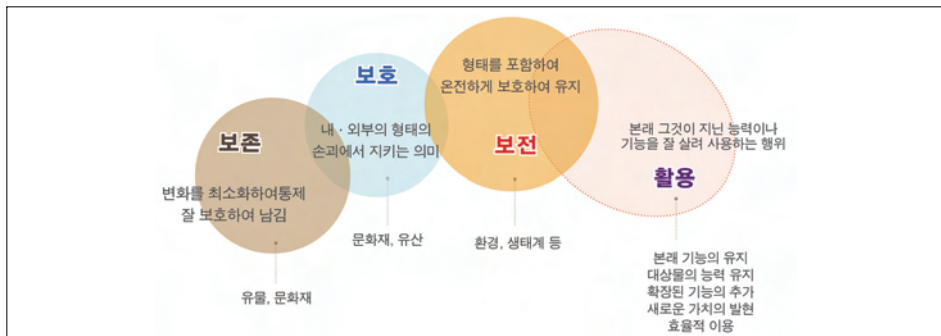
제6장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 방안

제1절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 기본개요

1.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의 개념과 필요성

가. 관리 및 활용의 개념

- 관리(管理)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다양한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그 운영을 지도·조정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을 의미한다. 관리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 활동, 통제이며 이 요소들의 반복적 순환활동(Management Cycle)에 의해 운영된다.
- 활용(活用)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그것이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려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활용은 기본적으로 대상물의 능력이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능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이와 같은 개념은 어떤 시기의 현존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통제하는 보존(保存, Preservation), 내·외부의 형태가 손괴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의미의 보호(保護, Protection), 내·외부의 형태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안전하게 잘 살핀다는 보전(保全, Conservation)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림 6-1> 관리·활용의 개념

나. 관리 및 활용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유산의 실태조사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인정 사례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농어업유산 제도 도입에 따른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활용 시스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첫째,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유산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농어업유산은 유·무형 문화재와 달리 농어촌지역의 생업수단이자 생활문화와 밀착하고 있어 그동안 유산으로서의 가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왔다. 더불어 농어업 인구의 감소, 농어업 생산방식의 현대화로 인해 전통방식의 유형적 농어업양식과 농어촌 생활양식의 전승의 위협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둘째, 농어업유산의 관리·활용은 국가차원의 정책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인 농어업유산 보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어업유산의 지정, 관리, 활용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부재하여 지속적인 제도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유산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의 지정기준, 현황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마련, 보존 및 활용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자치단체의 농어업유산 관리·활용에 준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한다.
- 셋째,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은 보존적 관리(보호·보존)와 더불어 활용적 관리(연계·활용) 영역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 검토한 타부처 및 기관(문화재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의 유산관리·활용은 주로 기초조사 및 연구, 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등을 토대로 주로 개발·훼손을 방지하는 보존적 관리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유산은 생산활동을 수반한 작동하는 유산으로서 보존적 관리보다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드러내는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제도와 차별적으로 농어업유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 넷째, 농어업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과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중심, 주민중심의 관리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문화이자 농경시스템인 농어업유산은 지역의 주민조직, 단체(조합 등)와 긴밀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농어업유산의 관리와

지속적인 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내부 운영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의 주요항목

가. 주요항목의 전제조건

- 농어업유산 관리를 위한 세부항목은 여섯 가지 대분류 항목(관리주체 역할, 지정기준, 농어업유산 관리범위(지구지정), 규제지침, 지원방안, 활용방안)을 통해 세부적으로 도출되었다.
- 관리주체는 농어업유산제도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해당 지역의 농어업유산의 등재와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농어업유산의 지정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자문기구, 관리·활용의 위탁기구로서 전문가 지원이 있다. 또한 농어업유산의 실질적 관리운영 주체는 협약을 통해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정기준은 농어업유산으로 신청된 대상 중에 유산의 가치성(대표성, 희소성), 파트너십, 효과성 측면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의 심의에 의해 선정한다. 농어업유산제도 도입 초기에는 유산가치가 높은 유형별 대표 5개소 내외 유산을 선정, 시범운영함으로써 단계별 관리시스템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관리범위는 농어업유산의 점적·면적·입체적 관리의 효율성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유산과 주변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되, 유형의 농어업유산의 규모와 성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규모(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0년 이후 세계농업유산(GIAHS)의 인정 경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유산의 지정범위가 유형의 단일 농어업유산을 점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경작지, 전통농법, 전통축제, 주민활동과 파트너십, 생물다양성 등 유·무형의 농어업 자원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기준을 준용토록 한다.
- 일반적인 규제지침으로는 농어업유산 지구 및 주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허가 및 신고행위를 두며, 등재된 농어업유산의 지속적인 관리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두어 일회성 사업지원을 방지한다.

- 지원방안으로는 농어업유산의 등재 이후 기본계획수립, 이후 예산을 반영한 실행계획수립과 소규모 주민연구 활동지원, 생물다양성을 증대를 위한 농법개발 및 직불금 지원, 조사 등을 지원한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지원을 포괄한다.
- 활용방안에서는 농어업유산의 생산 작물의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국내외 교류활동(체험 및 축제, 유산보존운동), 농어업유산의 관광적 활용을 위한 유산투어, 공정여행, 농업학습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주요항목의 세부내용

(표 6-1)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의 주요항목 도출

구분			세부항목	
관리 방안	관리 주체	행정	중앙	-정책수립 주체(부처)
			지자체	-지역별 계획수립 지원주체(자치단체)
		전문 가	자문기능	-심의위원회(지정심사 및 평가), 자문기구(학회, 연구원 등)
			위탁기능	-농어업유산 전문성을 갖춘 관리·활용 위탁 전문업체
	주민	협의체	-주민참여 관리 및 실행주체로서 주민협의체 구성	
	관리 범위	핵심지역	-농어업유산 지정구역으로 관리 / 보조금 지원	
		주변지역	-농어업유산 완충구역으로 관리 / 활용사업 지원	
관리 분야	모니터링	-농어업유산 관리·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주민협정	-농어업유산의 자율관리 협약(주민+행정+전문가)		
지원 방안	지정 지원	지정초기 지원	-지정절차 (신청절차 및 요건검토)	
		3년차 사업지원	-단계별 예산지원 및 사업화 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장기사업 지원	-부문별 장기 활용사업 활성화 지원 (관광, 교류, 홍보 등)	
	주민 활동	농어업유산	-농어업유산 주민학습 활동, 발굴 및 조사	
		영농활동	-경작지속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생물 다양 성	농법개발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농법개발 (기술 및 지식체계)	
		인증지원	-친환경농법 인증에 따른 직불금 지원제도	
		활동지원	-생물다양성 조사활동	
	복원	원형복원	-훼손된 농어업유산의 복원	
		활용복원	-휴경지 등 미활용 농어업유산의 경관활용	
	계획	기본계획	-농어업유산 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행계획	-농어업유산 관리·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국외	GIAHS 인정준비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준비 지원 -학술적, 행정적, 인적 네트워크 포괄지원 포함	
교류	파트너십	-농어업유산 관련기관(단체 또는 협회) 협력체계 지원		
활용 방안	생산 작물	-농어업유산 친환경 생산 작물 브랜드 개발		
	교류협력	-농어업유산 국내 도시민 교류활동 (모내기, 가을걷이 체험, 농어업유산 축제, 유산보존 운동 등)		
		-농어업유산 국제교류 추진		
농업관광	-농어업유산 관광상품 개발			

제2절 농어업유산의 관리·활용방안

1. 농어업유산의 관리체계 마련

가. 농어업유산 관리의 기본방향

- 지역 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농어업유산의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주민, 전문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유산의 차별성, 역사성 등 맥락적(context) 접근방법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 가지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첫째, 농어업유산의 보전을 기반으로 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어업유산은 농업자원 뿐 아니라, 농업기술(농법), 농업역사, 생물다양성, 농업문화 등 농어촌 지역의 다원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준과 원칙이 요구된다.
- 둘째, 농어업유산의 활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 추진된 문화유산과 관련된 타 부처 정책사업 및 지원제도의 운영을 살펴보면 보존 및 관리활동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키고 보존하는 관리뿐 아니라 관광, 체험, 교류, 홍보마케팅 분야의 농어업유산 활용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 셋째, 농어업유산 관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은 유희공간의 증가, 생산농가의 감소,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다소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농어업유산 지정과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활력과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나. 농어업유산 주요항목별 관리체계 마련

1) 합리적인 농어업유산 관리범위 설정을 통한 관리

(1) 역사·문화적 측면의 관리범위

- 농어업유산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농어촌지역의 역사문화 환경들이 특정 공간에 누적되어 온 것이므로, 다양한 시기의 농어업 자원, 농업기술시스템, 생물다양성, 농어업활동 등을 포괄하는 범위가 되어야 한다.

- 또한 지정된 농어업유산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범위를 위계적(Hierarchy)으로 구조화하여 관리한다. 예를 들어 농어업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관리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2) 경관적 측면의 관리범위⁴⁸⁾

- 농어업유산의 공간적 관리범위는 역사적 실체만이 아니라 면적으로 농어업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농어업유산이 입지할 수 있었던 지형적 조건으로서의 자연경관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해 공간범위를 설정한다.
- 별도의 농어업유산 관리를 위한 지정범위를 면적제한으로 두지 않으며 유형물로서 농어업유산 자원과 더불어 농법, 농경문화, 전통축제, 기타 전통방식의 농어업환경 등을 포함한 문화적 경관 일체를 관리범위로 본다.
- 관리범위는 농어업유산 안에서 밖을 보는 경관과 밖에서 농어업유산을 보는 경관으로 구분하여 마을전체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농어업유산과 인공건조물, 농어업유산과 가로경관, 농어업유산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적 네트워크 조성이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

(3) 지역활성화 측면의 관리범위

- 농어업유산 지역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삶터이자 일터로서 농어업유산의 고유가치 보전과 더불어 생활문화환경·행태 등과 연계하여 이를 지역활성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범위를 설정한다.
- 농어업유산이 지속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매력을 갖출 수 있어야 농어업유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내발적 지역가꾸기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이는 농어업유산이 독립적인 객체로서 지역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공간과 행태가 상호 조화된 유기체적인 생명력을 가진

48) 고도보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문화재청, 2007, p.106인용

농어업유산 조성을 의미하며, 조성된 농어업유산이 지역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공간관리 측면의 관리범위 설정이다.

2) 체계적인 기록화·정보화기반 구축을 통한 농어업유산 관리

(1) 농어업유산의 과학적 조사연구 추진

- 조사연구는 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해당 지역 주민협의회, 행정,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와 다양한 고증자료를 활용하여 농어업유산의 분포범위와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 특히 농어업유산 관련 농업기술(농법)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자료 구축, 생물다양성 조사, 농어업유산의 역사·문화적 고증을 분석하고 증명하는 일련의 조사·연구를 포함한다.

(2) 농어업유산의 목록작성 지원을 통한 기록화

- 농어업유산의 목록작성은 조사연구 활동에 의해 도출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분포하는 유산의 종류 및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된 세부내용들을 유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토록 한다.
- 조사연구와 기록화에 의해 구축된 자료는 농어업유산의 지정과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외 시간적·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노후 및 훼손된 유산을 복원 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농어업유산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 농어업유산의 기록화와 더불어 노후/손상 자료의 복원·보존 및 디지털 작업을 실시하여 농어업유산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도를 높이고, 이를 일반대중의 농어업유산 관리사업 참여 및 인식제고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구축된 농어업유산 디지털콘텐츠는 관련 보고서 작성, 홍보 리플렛, 보도자료 작성, 관광상품 개발 등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료작성을 위해 활용토록 한다.

3) 농어업유산의 관리운영주체 구성을 통한 관리

(1) 농어업유산 담당행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유산 신청에 의한 지정을 주관하며, 농어업유산지정심의회 설치를 통해 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해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
- 또한 해당부처는 농어업유산의 현황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년1회 이상 농어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주민과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의 보존·활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행정은 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농어업유산 관련 민원 및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행정부서간 업무협조 등 농어업유산 관리계획의 집행에 따르는 일련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2) 농어업유산 주민협의회

- 「주민협의회」는 농어업유산 지역의 주민대표, 농어업유산 관리자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체로서 농어업유산의 관리운영 및 발전을 위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과 협의하도록 한다.
- 주민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발의 및 동의를 거쳐 농어업유산을 활용한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주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자율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농어업유산 전문 코디네이터(전문가 및 시민단체)

- 「농어업유산 전문 코디네이터」는 농어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관련 학회, 기관, 단체 등의 전문가그룹으로 주민협의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농어업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기록화·정보화기반

구축, 농어업유산 관리자 양성, 유산의 복원·수리 및 활용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표 6-2) 농어업유산 관리운영주체 구성 및 주요기능

관리운영주체		주요 기능
농어업 유산 담당 행정	농림수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유산 지정 및 해제 결정 • 농어업유산지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 • 농어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유산의 보존·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 • 농어업유산의 정기점검 • 농어업유산 관련 민원 및 지원신청 접수, 행정부서간 업무협조 등
↑ ↓		
농어업유산 주민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계획에 따른 주민발의 사항 논의 및 결정 •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대표로서의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공협의 • 농어업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전문 관리자 양성, 유산의 복원·수리 및 활용 등 전반적 관리활동 • 주민자율협약서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선도
↑ ↓		
농어업유산 전문가그룹 (관련학회, 기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유산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전문가그룹 • 주민협의회의 조사연구 활동 등 전문적 활동 지원 •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 관련 자문(모니터링)

4) 농어업유산관리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리

(1)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관리공동체 구성

-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에 의해 농어업유산이 내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공동체를 구조화하여 주민관리공동체(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
- 주민관리공동체는 관리자 교육을 통해 지역리더 및 주민이 적극적으로 농어업유산의 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유산

관리계획 수립 등의 실질적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농어업유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리자 전문성 강화

- 농어업유산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주민협의회는 해당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주민관리조직으로 농어업유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나 단체와의 협력·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발생하는 보존과 개발의 갈등 조정, 농어업유산과 주변 환경의 훼손 등의 문제점들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데 적극 활용한다.

(3) 외부교류 기반 확충을 통한 광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마을 등의 커뮤니티를 잇는 관계 맺기를 통해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외부교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이 농어업유산 지역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
- 또한 농어업유산의 보존·관리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을 외부 커뮤니티와 교류를 통해 공동기금 등의 형태로 일부 지원받고 농어업유산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4) 국가 간 상호 농어업유산 교류협력 확대

- 농어업유산의 보존·관리 기술 및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주요인접 국가와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국가들과 전문가 교류, 기술협력 등을 통해 농어업유산을 매개로 하는 국제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농어업유산 관리·활용에 관한 위계적 관리지침 마련

(1) 관리지역에 관한 종합적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우선 단기(3년~5년) 목표를 설정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는 농촌 및 지역계획, 농업문화유산 관리·보전 등의 전문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업유산의 기초현황(자원의 점·선·면적 분포, 인문·사회 역사, 자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존실태와 관리현황 등의 현 실태 분석을 포함하여 도출한다.
- 이를 바탕으로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비전)을 설정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담아야 한다.
- 도출된 기본계획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협의체와 계획내용을 공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담아야 하며, 이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행정-전문가-주민이 참여한 다양한 협의회, 회의, 워크숍, 설명회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소요예산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단위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 해당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시행계획은 시·도 승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2)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자율관리지킴(주민협약) 마련

-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역 주민조직인 “주민협의체”는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관리방안 및 활용사업의 주체적인 참여와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자치규약 형태로 도출한다.
- 자치규약의 제도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명시하며, 시행계획 수립이후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농어업유산과 관련된 관리·보전·활용사업에 주체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2. 농어업유산의 활용방안 제시

가. 농어업유산 활용의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첫째, 농어업유산을 매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활용주체로서, 다양한 실행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육성을 통해 유산 활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 둘째, 농어업유산과 관련된 역사, 문화, 사회적 기억(이야기) 등의 콘텐츠 발굴을 통해 이를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새로운 인문/사회적 가치로 재정립될 수 있다. 이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가치 활성화 활동, 관광프로그램 운영, 소득사업 발굴로 이어진다.
- 셋째, 농어업유산의 활용에서도 관리와 보전측면의 교류체계(네트워크)를 두어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하고, 지역과 단체와 교류하고 홍보하는 관계 형성형 활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6-2> 농어업유산의 활용 기본방향

2) 활용전략

- 첫째, 농어업유산 활용을 위한 「이해/학습」 전략을 실현한다. 농어업유산의 다양한 연계/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성숙한 인적역량과 더불어, 관련정책 및 운영관리 측면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농어업유산 공동체(주민조직)를 대상으로 기초에서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공동체 활동, 전문가 과정 등을 도입한다.
- 둘째, 농어업유산의 창조적 가치 발현을 위한 「보전/활용」 전략을 실현한다. 농어업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수준에서 확대하여 보전의 테두리 안에서 문화관광 측면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유산과 접목 가능한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역활성화 사업을 발굴토록 한다.
- 셋째,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외부로 발신하는 「교류/확산」 전략을 실현한다. 농어업유산을 지역, 국가, 세계적 수준에서 홍보마케팅하는 일환으로 주변도시, 관련단체 등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 이벤트, 팸투어를 기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림 6-3> 농어업유산의 활용전략

나. 농어업유산 활용의 실행방안 제시: 전남 완도군 청산도 사례

1) 농어업유산의 관광자원화 활용

- 농어업유산의 관광자원화는 농어업유산의 고유 가치와 특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잠재자원(자연생태자원, 경관자원, 인문·역사자원, 문화예술자원 등)과 융합하여 외부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전남 완도군 청산도는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섬 방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전통 농업분야의 체험학습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업유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왔다.
- 농어업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청산도 구들장논을 활용한 기반시설(H/W)로는 청산면 양중리 423-1번지 일원에 구들장논 체험장을 조성하여, 외부 방문객에게 구들장논의 조성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S/W)운영 사례로 가을축제 기간 내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행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 또한 타부처 사업과 연계되어 조성된 상서리 마을에 위치한 구들장논 전시관은 구들장논의 시초 마을인 덜리마을에 대한 소개, 구들장논의 모형, 구들장논의 생물다양성 지표종 긴꼬리투구새우를 전시하고 있다.

(표 6-3) 청산도의 관광자원화 활용사례

<p>농어업유산 체험 기반시설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면 양지리에 위치한 구들장논 2필지를 활용하여 전시 목적으로 조성 • 구들장논의 소개 및 스탬프 찍기 체험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축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범운영
<p>청산도 구들장논의 학습체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방식의 농어업자원 복원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슬로우 걸기 축제, 청산휴가 어울림 한마당 등의 지역축제와 연계운영
<p>농어업유산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구들장논 전시관 조성 • 구들장논의 조성원리를 설명하는 모형, 분포현황 전시 • 생물다양성 지표종 긴꼬리투구새우의 전시 및 관람
<p>구들장논 계절 체험프로그램</p>		
<p>농어업유산 전시·관람시설 조성</p>		
<p>청산도 구들장논 및 긴꼬리투구새우</p>		

2) 농어업유산 자료구축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활동

- 농어업유산 지정 이후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지역주민에 의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유산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관리·보존 전문역량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전남 완도군 청산면은 농어업유산의 가치재발견을 위한 민·관·학 공동세미나(2011년 11월)를 계기로 구들장논의 농어업유산 가치를 정립하기위한 정량적·정성적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정량적 조사활동으로 청산도 주요 농경지 분포 구간에 해당하는 5개 마을(부흥리, 양지리, 상서리, 중흥리, 청계리)의 구들장논 물리적 분포현황을 지역단체(청산농협)와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구들장논의 경작지와 휴경지 현황을 데이터화 하였다.
- 정성적 조사활동으로 행정(완도군 청산면), 지역단체(농협, 해설가모임), 주민(5개마을 이장 및 주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한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여 구들장논의 역사성, 물리적 구조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 농어업유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주민조직화는 유기농업 실현 선포식을 통해 민·관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활동 기반을 조성하였다.

(표 6-4) 구들장논 기초 자료구축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례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들장논의 농어업유산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한 기초조사 수행 • 청산농협·민간전문가 공동조사를 통해 청산도에 분포하는 구들장논 현황 파악 •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향후 관리 및 활용계획의 기초 마련
농어업유산 지역 의견교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유산의 역사성, 농법, 농업문화에 대한 지식기반을 조사하고 정리 • 경작농가 주민, 청산면사무소, 청산농협,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농어업유산 대표성, 역사성, 물리적 구조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구축함
농어업유산 주민 협의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들장논이 분포하고 있는 5개 마을의 경작농가 주민이 구성원으로 참여 • 구들장논 보전, 무농약·친환경 농업을 민·관 협약을 통해 약속 • 농어업유산 지정 이후 주민협의체 조직으로서 다양한 활동 기대
유기농업을 위한 주민조직 구성		

3)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교류·홍보활동

-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교류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가치의 외부확산 및 홍보활동이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이는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지역 내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확산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부의 전문역량을 보유한 단체 및 기관의 참여, 나아가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으로 의미가 있다.
- 구들장논을 보유한 완도군 청산면에서는 행정기관, 학계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공동 세미나를 통해 농어업유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이를 통해 농어업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 농어업유산의 외부 교류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구들장논 재발견과 전승운동」은 지역 외부 도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의미가 있는데, 1구좌 5만원의 전승운동 참여기금을 통해 구들장논 생산물(마늘, 쌀), 소식지, 청산도 숙박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다.

(표 6-5) 청산도의 교류네트워크 구축 사례

<p>농어업유산 관련 민·관 공동세미나</p> <p>청산도 구들장논 농업유산 가치의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주민, 전문가, 행정관계자 간 농어업유산의 가치 재발견 공감대 형성 • 청산도 구들장논의 유산가치를 외부관계자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향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
<p>구들장논 도시민 전승운동</p> <p>구들장논 경작활동 지원 및 생산물의 배송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면 양지리 구들장논 경작농가, 청산농협, 전문가 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한 구들장논 전승운동 • 도시민 유치를 통해 1구좌에 5만원 후원 기금을 받아 구들장논 경작 생산물(마늘, 쌀)을 두 차례 배송하였고, 구들장논의 유산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
<p>농어업유산 전문가, 주민 간 교류 증진</p> <p>구들장논 경작농민 간담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4월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 기간 중 주민·외부 전문가 공동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교류활동 수행 • 구들장논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동의 필요성 전파와 주민참여 방안 논의

4) 해외 농어업유산 선진사례 벤치마킹

- 전남 완도군 청산면은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관련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운영 중인 일본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 가능한 주요사항을 점검하였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농업유산(GIAHS)에 2011년 6월 인정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사토야마·사토우미」는 청산도와 유사하게 해안지역으로 농업과 어업의 다양한 유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 노토반도의 「사토야마·사토우미」는 오랜시간 산간지역과 해안지역에서 농경문화 및 생활문화가 접목된 양식으로 대표적인 와지마시의 다랑이논(센마이다)의 보존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다랑이논(센마이다)와 더불어 지역의 전통문화인 기리코 축제, 농업 생산물의 전통건조기법 하자보시, 옛 건축양식의 쉰나노사토, 전통 농가민박 운영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6-6) 청산도의 유휴자원 연계·활용 사례

<p>세계농업유산 탐방</p> <p>노토반도 사토야마· 사토우미 현지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6월 세계농업유산(GIAHS)로 인정된 일본 니가타현 노토반도의 사토야마 사토우미 사례 현지시찰 • 담당행정(이시카와현 창성실) 방문을 통해 농어업유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추진체계 및 운영여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토반도 와지마시 해안에 위치한 다랑이논(센마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농업경관의 활용사례 학습 • 매년 다랑이논 오너제도, 캔들축제 등의 활용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운영관리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도 느린섬여행학교(폐교→숙박시설)와 유사한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농어업유산 체험객을 위한 숙박 및 시설 기반 조성의 필요성 공유 •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주인이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모색 필요

제3절 농어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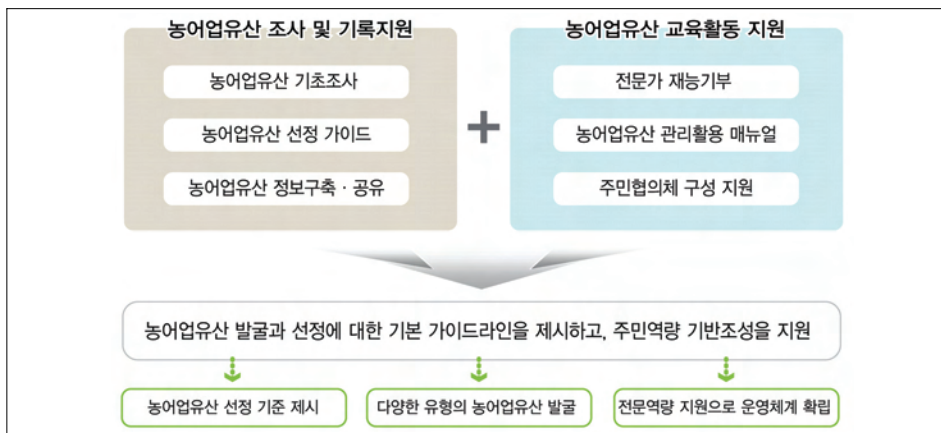
1.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사전활동 지원

가. 보전 가치가 있는 농어업유산 조사 및 기록지원

- 보전 가치가 있는 농어업유산의 지정조사 및 기록 지원을 통해 농어업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정보 구축 및 공유 기반을 조성한다.
- 농어업유산의 지정조사 및 기록을 위해 현지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유산의 지정과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교육·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나. 농어업유산의 교육 및 교류활동 지원

- 농어업유산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자원조사, 연구,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업유산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 교육은 농어업유산 관련 지역주민과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어업유산자원 조사, 연구, 홍보 등의 각 부문별 내·외부 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한다.



<그림 6-4> (예비)농어업유산 사전활동 지원

2. 농어업유산 관리활동 지원

가. 농어업유산 매입과 보전·관리를 위한 모금 사업 지원

- 유형의 농어업유산 중 절대 보존해야 하거나 복원해야할 가치가 있는 유산은 협의매수를 추진하여 공공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공익가치를 지키고, 농어업인이 유지해온 사유재산 권리를 보상한다.
- 보전가치가 있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기금 모금 활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기증에 의해 활성화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 남해군 가천 다랭이마을은 2007년부터 다랭이 한마음 나누기(트러스트)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모인 기금을 활용하여 다랭이논의 유지, 관리와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트러스트 운동은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민과 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형성을 통해 현재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함

나. 농어업유산 관리공동체 지원

- 농어업유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역사적 가치를 조사 발굴, 수집, 연구 등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지역주민 중심의 공동체조직(주민협의회) 구성과 활동을 지원한다.
- 관리공동체는 농어업유산의 가치 보존을 기본으로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주체로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육성한다.
- 농어업유산을 활용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공동체가 자원의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서울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민 욕구 및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지속가능한 주민주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씨앗기, 창업준비기, 안정기 3단계로 세분화하여 인큐베이터(지역조직전문가)를 활용해 마을공동체별 알맞은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있다.

다. 농어업유산의 기록화·정보화기반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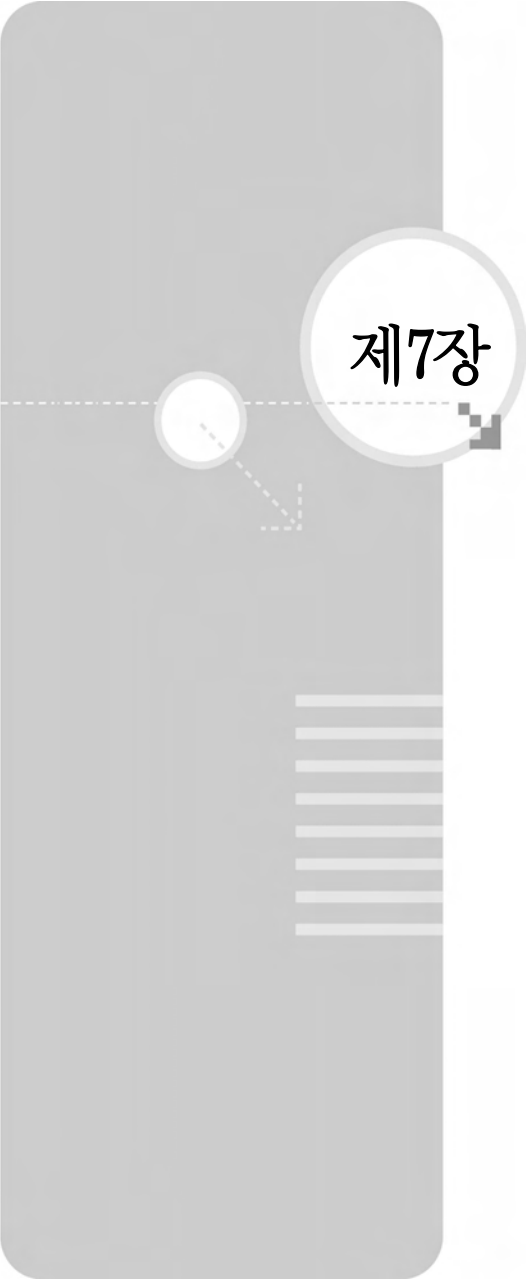
- 농어업유산에 관한 체계적인 자원조사와 기록을 통해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여 농어업유산 관련 디지털 콘텐츠 등의 가시성 있는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원한다.
- 노후 및 훼손된 농어업유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역사적 희귀자료의 확보를 지원하고, 농어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혹은 국가 차원의 농어업유산 웹사이트 개발 및 온라인 연계망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0년부터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을 비롯한 전국 국공립·사립·대학박물관들이 협력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구축하고 일반대중에게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영상, 3D, 파노라마, VR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여 서비스한다.

라. 농어업유산 소유자에 관한 보전·관리 지원

- 주민지원은 주민대표와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업유산 주민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조정하여 주민협약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의 주민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농어업유산 소유자에게는 농어업유산의 유형과 지정범위에 따라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은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 보조금의 지급비율은 사업의 구분, 종류, 범위 및 역사적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논농사직불금, 경관보전 직불제를 참고하여 농어업유산보전직불금의 지불형태를 강구한다.

○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의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단위 축제나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012년 새롭게 도입된 농어업유산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동안의 개발시대의 정책에서 변화해서 농어촌 지역 자원의 보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 농어업유산제도는 문화재청 등 기존의 유산관련 정책과는 차별화된 제도로써 그동안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어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훼손되고 사라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농어업활동과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과 육성이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다.
-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은 농림어업인이 지역사회와 문화적, 농업적 또는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이다.
- 농어업유산제도는 2012년 3월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방침과 6월에 시·군 지자체에 대한 농어업유산자원에 대한 신청을 통해 총 64개의 농어업유산자원이 신청되었고 10월에 농식품부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20개로 압축하였고, 11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20개의 유산자원에 대해 2차 현장심사를 통해 국가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농어업유산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이 11월에 공고되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⁴⁹⁾되었다.
- 농식품부에서 고시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라 2012년 12월에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을 비롯한 16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차와 2차에 걸친

49)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285호, 2012.12.6 제정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을 지정하게 된다.

- 농어업유산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농어업유산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흑룡만리 돌담밭』이 제1호와 제2호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7-1> 농어업유산 제1호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그림 7-2> 농어업유산 제2호 『제주 흑룡만리 돌담밭』

- 농어업유산은 농어촌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고유자산으로 가치가 매우 크므로 농어업유산과 지역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어업유산은 규제보다는 활용중심의 제도로 활성화시켜야 하며, 사라진 유산의 복원작업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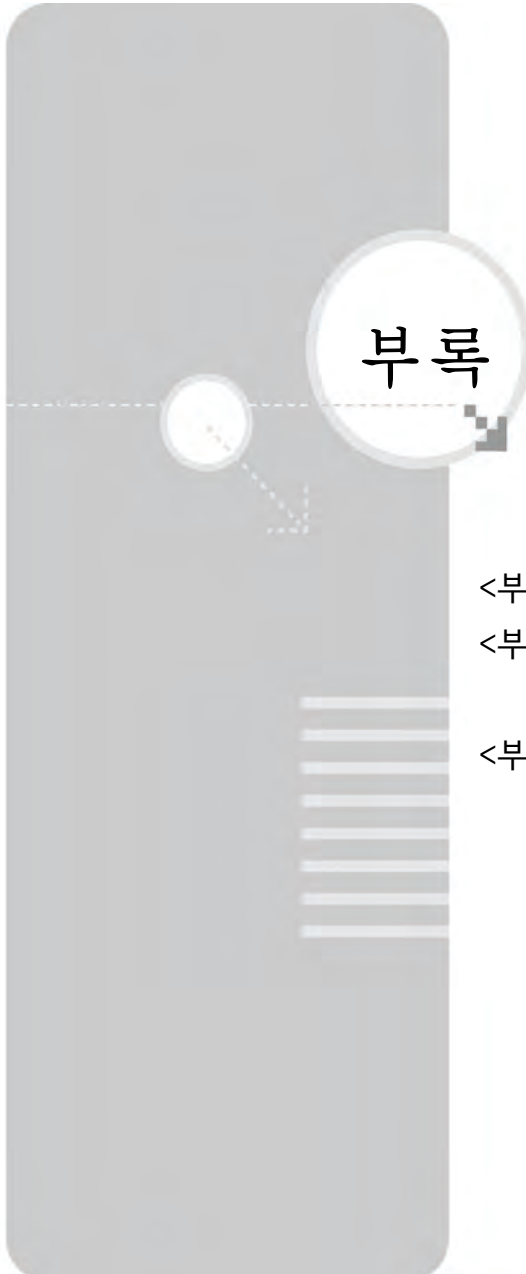
- 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FAO의 세계농업유산 등의 지정기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유산의 가치성(현저한 특징, 역사성, 대표성), 파트너십(협력가능성, 주민참여성), 효과성(지역브랜드 가치향상, 주민의 소득향상, 생물다양성 향상)의 세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 세계농업유산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유산제도가 2012년 도입되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우선적으로 농어업유산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농어업유산이 어느 정도 발굴된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유산도 포괄하여 농어업·농어촌 유산제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신청과 본 연구를 통해서 총 71개의 농어업유산이 발굴되었으나 아직 농어업유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농어업유산 후보군 중에서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유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또한 아직 미발굴된 유산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조사·발굴과 농어업유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이후 활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등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농어업활동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 현재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을 위해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될 계획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한 지역당 3년에 걸쳐 15억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어업 유산자원의 발굴 및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무엇보다도 농어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농어업유산으로 선정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유산의 복원, 주변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 정비 등을 위해 '13년부터 '19년까지 25개소에 국고 287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지만, 일률적인 예산의 지원보다는 유산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과 지원사업비의 확대 및 연계사업의 발굴도 필요하다.
- 농어업유산 지정 지역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와 연계해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유산으로 지정된 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지 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이용협약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농어업유산의 보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함께 농어업유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아직 농어업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 농어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 단계인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을 확대해서 농어업유산을 포함한 농어촌지역의 다원적 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중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유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를 통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2013년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개최 예정인 GIAHS 인터내셔널 포럼에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을 발표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후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어업유산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단체나 NPO 단체 등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농어업유산 관련 연구자와 지역 주민들의 외연확대와 공감대 형성도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두. 2012. 「농어업 유산제도의 도입」, 지역과 발전 vol.8, pp.55~58, 지역발전위원회
- 김난기. 2005. “문화유산보호에 있어서 문화적 경관의 새로운 전개”, 「건축역사연구」
- 김정섭·오현석 역. 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 김효정. 2009. “도시문화에서의 전통과 현대”,
- 오형은·오현석. 2011. “농촌자원관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초석”, 한국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2011 대안농정대토론회 자료집
- 오만근. 2005.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 체계”, 「국토논단」
- 오현석. 2002. 「OECD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출판사
- 농림수산식품부. 2010.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이야기 2」
- 농림수산식품부. 2011.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이야기 3」
- 문화재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2012년 업무보고 자료
- 예산군. 2010. 황새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
- 유학렬. 2011. “청산도 구들장논의 특징과 가치”, 청산도 구들장논의 가치 재발견과 활용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다량이논연구회·명소IMC
- 윤원근·최석인. 2012.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발굴과 보전”, 2012농업전망대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원근·최석인. 2012. “한국 농어업유산제도의 정립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제19권 제2호, 한국농촌지도학회.
- 이학수. 2009. 「실전구들&구들발명이야기」. 생각 나눔
- 정광열·조현성·김가진. 2010. “영국의 정권교체와 문화정책의 비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승구, 샤말레누카. 2008. 산악관광을 통한 지역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히말라야 지역을 중심으로, 산학경영연구, Vol.21 No.2
- 류재한. 2006. 문화자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방대의 꿩뒤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 논집 제 56집: 339-354
- 지상순 외. 2009. 「문화경제학」.
- 최석호. 2006. 관광의 세계화: 유산관광개발 한영비교사례연구, 관광학 연구, 30(3): 29-50
- 조영재 외. 2012. “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9월호. 한국농촌계획학회

- 한숙영·김사현. 2007. 유산과 유산관광의 개념에 관하여, 관광학 연구, 31(3): 209-223
- 長野縣千曲市. 2008. おぼすて棚田の文化的景観保存計劃書
- 金田章裕. 2012. 文化的 景観, 日本經濟新聞出版社
- Calvin Jones·Max Munday. 2001. Blaenavon and United Nations World Heritage Site Status; Is Conversation of Industrial Heritage a Road Economic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 CEMAT. 2003. European Rural Heritage Observation Guide
- Confer, J. C., & Kerstetter, D. L. 2000. Past perfect: Explorations of heritage tourism. Parks and Recreation, 35(2): 28-35.
- G·J Ashworth. 1994. From history to heritage: from heritage to identity: in search of concept and model. In G·J Ashworth and Larkham, P. J.(Eds), Building a New Heritage, 13-30. London: Routledge.
- G·J Ashworth. 2004. "Conservation as Preservation or as Heritage: Two Paradigms and Two Answers", in A. Cuthbert. Designing Cities: Critical Reading in Urban Desig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Huynh Hoa Thuy Tien. 2011. 베트남 호안 주민들의 관광개발 지각차이에 관한 연구, 세종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2003. Heritage Tourism Assessment & Recommendation for St. Augustine, Florida. September, 16: 6-7.
- Parviz Koochafkan and Miguel A. Altieri, Conserving Our World's Agricultural Heritage,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 Sacit Hadi Akdede·Emre Can. 2010. The Local Economic Effects of Istanbul Fener-Balat Cultural Heritage Rehabilitation Program, 재정정책논집, 제 12집 제1호, 한국재정정책학회
- Smeral, E. 1996. Importance and development of Austria's alpine tourism industry. In K.
-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WTTC). 1999. Travel and tourism's economic impact
- <http://www.moleg.go.kr>
- <http://www.fao.org/nr/giahs>
- <http://www.unesco.or.kr/heritage>



부록

- <부록1> 일본의 문화적경관
- <부록2>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례
- <부록3> 농어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285호)

<부록 1> 일본의 문화적 경관

1. 문화적 경관 이란

- 농산어촌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전통적 산업 및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하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토지이용 형태 및 고유의 풍토를 나타내는 경관으로 가치가 높은 것

2. 중요 문화적 경관 이란

- 일본의 경관계획지구 또는 경관지구 내에 있는 문화적 경관으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보존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문부과학성大臣)가 선정한 문화재를 말함

3. 선정 기준

-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생활, 생업 및 해당지역의 고유한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다음의 경관지 가운데 전형적 또는 독특한 일본 국민의 기반적 생활 및 생업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 (1) 논, 밭 등의 농경에 관한 경관지
 - (2) 목축지, 초지 등의 採草, 방목에 관한 경관지
 - (3) 用材림, 방재림 등의 산림의 이용에 관한 경관지
 - (4) 양식장, 김채취장 등 물고기 잡는 것에 관한 경관지
 - (5) 저수지, 수로, 항구 등 물의 이용에 관한 경관지
 - (6) 광산, 채석장, 공장지대 등의 채굴, 제조에 관한 경관지
 - (7) 도로, 광장 등의 유통, 왕래에 관한 경관지
 - (8) 담, 정원 등의 주거에 관한 경관지
- 상기의 제시한 경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전형적 또는 독특한 일본 국민의 기반적 생활 및 생업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4. 문화적 경관 지역의 선택 기준

- I. 농산어촌지역에 고유의 전통적 산업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독특한 토지이용의 전형적인 형태를 현저하게 나타내는 곳

- II. 농산어촌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고유의 풍토적 특색을 현저하게 나타내는 곳
- III. 농림수산업의 전통적 산업 및 생활을 나타내는 단독 또는 복수의 문화재의 주변에 전개하여 그러한 것들과 불가분의 일체적 가치를 구성하는 것
- IV. 상기의 1~3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지역의 특색을 현저하게 나타내는 곳


구분	종별	예시
I	1 수전(논) 경관	- 독특한 지형 및 기후와 관련(다랑이논, 논둑 등) -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유적과 관련된 것
	2 밭 경관	- 독특한 지형 및 기후와 관련(방풍림을 가진 밭, 계단식 밭 등) -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유적과 관련된 것 - 특정의 작물 및 독특한 경작방법과 관련 있는 것
	3 초지 경관	- 관리에 의해 유지되어온 것(방목지, 채초지 등)
	4 산림 경관	- 관리에 의해 유지되어온 것(생산림, 二次림, 방풍림, 방사림 등)
	5 어장 경관 어항 경관 해변 경관	- 독특한 지형 및 기후와 관련 - 전통적 수산업과 관련(전통어법)
	6 하천 경관 저수지 경관 호수 경관 수로 경관	- 독특한 지형 및 기후와 관련되면서 관리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저수지 등) - 전통적 어법과 관련 있는 것 - 철새, 청둥오리 무리가 살고 있는 곳의 하천경관, 수로경관 포함
	7 집락 경관	- 독특한 생업, 지형, 기후와 관련된 것(집락 방풍림, 집락의 담벽, 지붕 등)
II	1 신앙, 행락	- 생업과 관련하여 신앙의 대상이 된 산, 숲, 저수지, 폭포 등 - 생업과 관련하여 행락이 이루어진 장소의 경관
	2 전통예능 소재	- 전통시가, 그림 등 예술작품의 소재가 풍부한 농림수산업의 경관
	3 독특한 기상	- 비, 안개, 눈, 신기루 등에 의해 나타나는 계절적 독특한 경관
III	전통적 산업 및 생활을 나타내는 문화재 주변의 경관	- 농림수산업에 의해 형성된 공작물(담, 다리 등)과 어울려 전개된 경관
IV	I~III의 복합 경관	- 복수의 서로 다른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논과 수원지, 생산지와 집락 등) - 농업, 임업, 수산업의 각 경관이 조합을 이룬 경관

5. 문화적 경관 선정 사례(2012년 9월 현재 34건)

선정 명칭	분류	소재지	선정연도
아이누(アイヌ)의 전통과 근대 개척에 의한 沙流川유역의 문화적 경관	하천경관 복합경관	北海道沙流郡平取町	2007년 7월
아라가와 고원목장	초지경관	岩手県遠野市	2007년 3월
一関本寺의 농촌경관	신앙경관	岩手県一関市	2006년 7월
利根川·渡良瀬川合流域의 수변경관	하천경관	群馬県邑楽郡板倉町	2011년 9월
佐渡西三川の砂金山유래의 농산촌경관	집락경관	新潟県佐渡市	2011년 9월
성밖마을의 전통과 문화	전통예능	石川県金沢市	2010년 2월
姨捨의 다랑이 논	수전경관	長野県千曲市	2010년 2월
近江八幡의 물의 고향	수로경관	滋賀県近江八幡市	2006년 1월
西浜·知内の 수변경관	하천경관	滋賀県高島市	2008년 3월
高島市針江·霜降의 수변경관	하천경관	滋賀県高島市	2010년 8월
宇治의 문화적 경관	복합경관	京都府宇治市	2009년 2월
奥飛鳥의 문화적 경관	복합경관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	2011년 9월
檜原의 다랑이논	수전경관	徳島県勝浦郡上勝町	2010년 2월
遊子水荷浦의 다랑이밭	밭경관	愛媛県宇和島市	2007년 7월
四万十川流域의 문화적 경관 (원유역의 산촌)	복합경관	高知県高岡郡津野町	2009년 2월
四万十川流域의 문화적 경관 (상류지역의 산촌과 다랑이논)	복합경관	高知県高岡郡禰原町	2009년 2월
四万十川流域의 문화적 경관 (상류지역의 농산촌과 유통·왕래)	복합경관	高知県高岡郡中土佐町	2009년 2월
久礼항구와 漁師町의 경관	어항경관	高知県高岡郡中土佐町	2011년 2월
四万十川流域의 문화적 경관 (중류지역의 농산촌과 유통·왕래)	복합경관	高知県高岡郡四万十町	2009년 2월
四万十川流域의 문화적 경관 (하류지역의 생업과 유통·왕래)	복합경관	高知県四万十市	2009년 2월
蕨野의 다랑이논	수전경관	佐賀県唐津市	2008년 7월
佐世保市黒島の 문화적 경관	복합경관	長崎県佐世保市	2011년 9월
平戸島の 문화적 경관	복합경관	長崎県平戸市	2010년 2월
五島市久賀島の 문화적 경관	복합경관	長崎県五島市	2011년 9월
小値賀諸島の 문화적 경관	복합경관	長崎県北松浦郡小値賀町	2011년 9월
新上五島町北魚目の 문화적 경관	복합경관	長崎県南松浦郡新上五島町	2012년 1월
天草市崎津·今富의 문화적 경관	복합경관	熊本県天草市	2011년 2월
通潤用水と白糸台地の 다랑이논	수전경관	熊本県上益城郡山都町	2008년 2월
小鹿田焼의 마을	집락경관	大分県日田市	2008년 3월
田染荘小崎의 농촌경관	집락경관	大分県豊後高田市	2010년 8월
求菩提의 농촌경관	집락경관	福岡県豊前市	2012년 9월
長崎市外海の 돌담 집락경관	집락경관	長崎県長崎市	2012년 9월
新上五島町崎浦의 五島石집락경관	집락경관	長崎県南松浦郡新上五島町	2012년 9월
別府の湯けむり온천지경관	복합경관	大分県別府市	2012년 9월

<부록 2>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례

■ 일본 Sado's satoyama in harmony with Japanese crested ibis

농업유산 시스템 명칭 따오기와 공존하는 사도 시 사토야마 (Sado's satoyama in harmony with Japanese crested ibis)	
신청 기관: 사도 시(Sado City) 협력 기관: (1)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 유엔 지속가능성 및 평화 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and Peace, UNU-ISP) 유엔 고등학술연구대학 이시가와/가나자와 분과(United Nations University-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Operating Unit Ishikawa/Kanazawa, UNU-IAS OUIK) (3) 니가타 현(Niigata Prefecture) (4) 니가타 대학교(Niigata University, 사도 시와 기본 협정 체결) (5) 도쿄 농업 대학교(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사도 시와 기본 협정 체결) (6) 사도 농업협동조합(Sado Agricultural Cooperative) (7) 하모이치 농업 협동조합(Hamochi Agricultural Cooperative)	
국가/지역/위치 (지역을 표시한 지도 첨부 요망): 일본 니가타 현 사도 섬(Sado Island) 사도 시(단일 시) 동해에 면한 니가타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단일 섬	
접근방법 초고속 열차를 타고 도쿄에서 니가타까지 2시간, 니가타에서 쾌속선 이용 - 사도 시까지 65분. 니가타에서 카페리 이용 - 사도 시까지 2시간 30분	
면적: 855km ²	
농업형태: 온대 벼를 재배하는 논	
지리적 특성: 섬	
기후: 온대	

인구: 64,000명 (농민 28,000명)
주요 산업: 농업, 관광산업
원주민 인구: 없음
사도 섬은 니가타 현 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섬이다. 사도 섬의 지형은 두 개의 산지 중앙에 넓은 평야가 자리잡은 형태로, 평야·언덕·산지가 고루 분포한 다양한 지형이 특징이다. 사도 섬에는 이차림, 농장, 초지, 논, 습지, 저수지, 운하로 구성된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회생태 시스템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사토야마(<i>satoyama</i>) 지형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해변, 바위해변, 조습지, 해조류 서식지로 구성되는 해안 생태계 사토우미(<i>satoumi</i>) 지형도 분포되어 사토야마 지형과 상호작용한다. ⁵⁰⁾

이처럼 복잡한 생태계를 보유한 사토야마 지형과 사토우미 지형으로 이뤄진 사도 섬 주민들은 논과 밭에 벼·콩류·채소·감자·메밀·과일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야생식물과 버섯이 자라는 숲에는 가축을 기르며, 해안 지역에서는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한다. 사도 섬 산(産) 벼, 소고기, 감은 일본에서도 최상품으로 통할 정도다. 또한 사도 섬의 사토야마는 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키 큰 나무에 둥지를 트는 야생 따오기(wild Japanese crested ibis)의 마지막 서식처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야생 따오기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조류로 생각한다.

사도 섬에서 벼농사와 그 외 농업이 시작된 시기는 1,700여년 전인 야요이 시대(Yayoi period)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뒤 몇 세기를 거치면서 지형이 분화되었고 지형에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지역 사회를 형성했다. 가령 빗물이 바다로 빠르게 흘러나가는 지형으로 인해 항상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 1,000여개가 넘는 저수지를 조성해 물을 관리했고 구루마 모내기(Kuruma Rice Planting) 같은 지역 특유의 벼농사 방법을 개발했다. 구루마 모내기는 일본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골드 러시(gold rush)가 성행한 에도 시대(Edo period, 1603-1868)에는 식량 생산에 대한 압력이 커져서 언덕 사면에까지 논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조성된 계단식 논은 사도 섬의 풍광을 수려하게 할 뿐 아니라 따오기가 살기에 알맞은 서식처가 되었다.

50) 일본 사토야마 사토우미 평가(Japan Satoyama Satoumi Assessment)의 정의를 따름. (JSSA, October 2010)

일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도 섬에도 한 때 관습적 농업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농법이 다시 부활해 야생 따오기를 다시 불러모으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사도야마와 결부된 전통적인 생태적 지식은 근대 기술의 뒷받침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따오기가 깃들어 사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영농활동을 장려하려는 정부 시책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연구자들과 공무원들이 사도 섬 지역 사회와 협력해 더 지속가능한 농업을 향해 나아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일본 Noto's Satoyama and Satoumi

<p>농업유산 시스템 명칭 :</p> <p style="text-align: center;">노토의 숲과 해양 Noto's Satoyama and Satoumi</p>
<p>신청 기관: 농업유산 시스템 발전과 협력을 위한 노토 지역 협회(Noto Regional Association for GIAHS Promotion and Cooperation)</p>
<p>협력 기관:</p> <p>(1) 농림수산부 (2) 유엔 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유엔 지속가능성 및 평화 대학, 유엔 고등학술연구대학 이시가와/가나자와 분과 (3) 이시가와 현(Ishikawa Prefecture) (4) 가나자와 대학교(Kanazawa University)</p>
<p>국가/지역/위치 (지역을 표시한 지도 첨부 요망) 일본 이시가와 현 노토 반도(Noto Peninsula), - 동해에 면한 노토 반도에는 수주 시(Suzu City), 와지마 시(Wajima City), 나나오 시(Nanao City), 하쿠이 시(Hakui City), 노토 마을(Noto Town), 아나미주 마을(Anamizu Town), 시카 마을(Shika Town), 나가노토 마을(Nakanoto Town)이 위치하고 있다. 이 네개 시와 네개 마을은 북동쪽에 있는 나나오 시에서 남서쪽에 있는 하쿠이 시로 뻗어나가는 오우치 열곡(Ouchi Rift Valley)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다. 독특한 지리와 식생으로 유명하다.</p>
<p>접근방법 노토 반도 중심에 있는 노토 공항이나 고마츠 공항에서 열차나 자동차 이용. 서일본철도(West Japan Railway) - 가나자와와 나나오 사이를 오가는 열차 운행 노토철도(Noto Railway)-나나오와 아나미주 사이를 오가는 열차 운행 가나자와와 노토 공항을 연결하는 노토 유료도로망이 갖춰져 있고 도야마</p>



<p>현으로 이어지는 노에주 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가 지나므로 자동차 접근도 용이함.</p> <p>그 외에도 국도, 현도, 시도, 농로 등이 발달해 있음</p>
<p>면적: 1,866km²</p>
<p>농업형태: 온대 벼를 재배하는 논</p>
<p>지리적 특성: 산과 언덕이 많은 반도 지형</p>
<p>기후: 온대</p>
<p>인구: 189,000가구</p>
<p>주요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p>
<p>농업유산 시스템 요약정보 (200단어에서 300단어)</p> <p>노토 반도는 2,100여 년이 넘는 기나긴 역사와 문화를 자랑한다. 고고학 조사에 따르면 노토 반도에 최초로 밭을 딛은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활동을 했다. 노토 반도에 농업이 도입된 시기는 1,300여 년 전인 나라 시대(Nara Era)로 거슬러 올라간다.</p> <p>지난 천여 년을 거치면서 노토 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깃들여 사는 자연 환경에 맞춰 진화해왔다. 그 덕분에 오늘날 노토 반도에는 원시 애니미즘, 자원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세습되던 봉건 시대의 풍습, 서양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현대의 법과 규제가 공존하면서 자연관, 자원 이용에 관한 권리에 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신도와 불교에 바탕을 둔 전통적 관습도 여전히 노토 반도 전역에 퍼져 있는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다. (과중 축제, 추수 축제, 어부와 해변가 주민의 수호신에게 감사드리는 고유의 지역 축제인 기리코(kiriko), 노토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된 모내기 및 추수 축제인 오쿠 노토 아에노코토(Oku-noto Aenokoto) 등.)</p> <p>노토 반도는 농업 지대가 산지와 매우 가까워서 농업 활동뿐 아니라 임업 활동과 어업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형적인 일본 농촌의 축소판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인간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총체적 접근법이 주류를 이뤄왔다. 넓은 계곡 사이 사이로 언덕과 들판이 점점이 흩어져 있어 녹색 회랑을 이루고, 해안에는</p>

화산암이 흩어져 있는 전형적인 반도 지형인 노토 반도는 사토야마(이차림, 농장, 초지, 농경지, 목초지, 저수지, 운하로 구성된 육지 지형)와 사토우미(해변, 바위해변, 조습지, 해조류 서식지로 구성되는 해안 지형)로 알려진 사회생태적 시스템을 잘 관리해온 특징을 지닌다.⁵¹⁾

노토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사회들은 사토야마와 사토우미 지형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럼으로써 기후 변화의 충격에 더 잘 대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노토 반도의 생물 다양성을 수호하고자 한다.

51) 사토야마(satoyama)와 사토우미(satoumi)의 정의는 일본 사토야마 사토우미 평가의 정의를 따름. (JSSA, October 2010)

■ 페루 Andean Agriculture

국가와 지역명: 페루의 쿠스코(Cusco), 푸노(Puno)

프로젝트명: “마추픽추(Machupicchu)에서 티티카카 호수(Lake Titicaca) 까지”

신청 기관: 국가환경위원회(Consejo Nacional del Ambiente)

위치: 쿠스코: 빌카노타 계곡(Vilcanota valley)의 카르멘(Carmen), 라레스(Lares)
 푸노: 카리타마야(Caritamaya), 산 호세(San José)

농업유산 시스템 면적: 30,798 ha

재배 농작물 및 동물:

감자의 고향. 퀴노아(quinoa), 카니야(kañiwa), 칠리(chilis), 친코나 나무(chinchona tree), 코카 나무(coca shrub), 오카(oca), 올루코(olluco), 마슈아(mashwa), 아마란스(amaranth), 콩이나 루핀(lupins) 같은 콩과 작물, 아라카차 (arracacha), 야콘(yacón), 마세(mace), 차고스(chagos) 같은 근류, 소프트 콘(soft corn) 종이 이례적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

가축 : 라마, 알파카, 기니피그

카르멘:	감자(105품종), 오카(25 품종) 올루코(14 품종), 마슈아(20 품종), 마이즈(34), 퀴노아, 카니야, 루핀, 야마스(Llamas), 알프카스(Alpcas), 관련 야생 종
라레스:	감자(177 품종.), 오카(20 품종.), 올루코(11 품종), 마슈아(17 품종), 마이즈(23), 퀴노아, 카니야, 루핀, 야마스, 알프카스, 관련 야생 종
카리타야마	감자(28 품종). 쓴 감자(13 품종) 퀴노아(43 품종), 카니야(8 품종), 오카, 올루코, 야마스, 알프카스 (24색, 주요 품종 3종 (mayor breeds))
산 호세	감자(80 품종), 마슈아(14 품종), 올루코(18 품종), 카니야(12 품종) 오카(20 품종) 야마스, 알프카스

기타 동식물:

비쿠냐(Vicuña); 초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토종 조류(북아메리카 철새 다수 포함); 야생 약초, 야생 식용 작물; 야생 곡물 중

지표종:

알티플라노 고원(altipiano) 위:	라 칠리구아(La Chilligua, <i>Festuca dolicophylla</i>)
안데스산맥 지역(Inter-andian zones):	라 세바딜라(La Cebadilla, <i>Bromus unioloides</i>)
숲 경계에 있는 농경지역:	라 퀘뉴아(La Queñua, <i>Polylepis incana</i>) 엘 콜리(El Colli, <i>Buddleia coriacea</i>)
관리 잘못 야생 지표종(침입):	카닐리(Canlli, <i>Margiricarpus pinnatus</i>) 가르반실료(Garbancillo, <i>Astragalus</i> sp.) 키쿠요(Kikuyo, <i>Pennisetum clandestinum</i>)

생태계 기능:

- 물관리를 통한 기후 관리(와루 와루(waru waru), 코차스(qochas));
- 산울타리를 이용한 해충 및 질병 통제;
- 계단식 농경지를 활용한 토지저하 방지;
- 잉카 시대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관개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사용.

인종: 푸노-아이마라족(Aymara), 쿠스토-케추아족(Quechua)

사회경제적 특징 및 문화적 특징:

선정된 네 곳의 지역 사회 주민 대부분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농업으로 생산된 것은 자체적으로 모두 소비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품종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라마 털이나 수공예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토착 원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 두 곳은 공공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외딴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재배 농작물 품종의 다양성 상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근 일 이십 년 사이 재배하는 농작물 품종의 종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원인으로는 남성들의 이주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부담 가중이 지목되었다.

재배 농작물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

- 수질 오염;
- 토착 품종 대체;
-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주와 문화 소실;
- 토착 품종 종자의 저장 및 배포 문제;
- 불안한 토지사용기간 및 다양한 재배 농작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과 밀접하게 결부된 공동자산 시스템 붕괴;
-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 붕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남성의 이주로 인해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재배법에 대한 지식 소실.

시범 시스템 운영상의 주요 장애물과 활동: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페루의 안데스 산맥 남쪽으로, 잉카의 성스러운 도시 마추 픽추(Machu Picchu, 1900m)에서 시작해 빌카노타 강(Vilcanota river)을 따라 라야(Raya, 4,300m) 분수령을 통과해 3,800m 높이의 페루 고원 북쪽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에 이른다.

(거의 350km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에 걸친 시범 사업지 중에서 특별한 농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네 곳의 지역 사회가 선정되었다. 이 네 지역 사회는 서양식 농업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고대의 농업 기술이 소실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고대의 전통 농업 기술을 유지, 계승하고 있는 곳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사업은 페루 국가환경위원회 및 페루의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해 수세기에 걸쳐 그 가치를 인정받아온 고대의 농업 기술을 보존하고, 이 독창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생물학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주요 토종 작물의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다. 선정된 네 곳의 지역 사회 농민 및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지역 사회 전시회도 개최해 시장의 형평성을 강화할 것이다.

■ 칠레 Chiloé Agriculture

국가와 지역명: 칠레 로스 라고스 주(Región de Los Lagos, 10th Region)
칠로에 섬(Chiloé Island)

프로젝트명: “칠레 칠로에 다도해에 서식하는 토종 감자의 풍부한 유전자원 및 문화 유산의 유지보존 시스템(A conservation system to maintain the genetic wealth and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native potatoes of the Archipelago of Chiloé - Chile)”

신청 기관: 교육과 기술 센터(Centro de Educación y Tecnología)

위치: 칠로에 섬

농업유산 시스템 면적: 10,616 ha

재배 농작물 및 동물:

칠로에 섬은 다양한 작물의 원산지를 일컫는 바빌로프 센터 중 하나다. 칠로에 섬은 감자(*Solanum tuberosum*), 망고(*Bromus mango*), 딸기(*Fragaria chiloensis*)의 원산지이다. 약 200여 종의 토종 감자가 오늘날에도 재배되고 있으며 마늘(*Ajo chilote*)도 칠로에 섬의 화산토양에서 자라는 고유종이다. 칠로에 섬에는 카발로 칠로테(Caballo Chilote)라는 강인한 토종 말이 서식한다.

기타 동식물: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칠로에 섬을 생태계 보전이 시급한 25개 지역 중 하나로 꼽았다. 일차 온대강우림과 이차 온대강우림이 공존하는 칠로에 섬에는 인간이 1만여 년에 걸쳐 자연과 공존하면서 발전시켜온 농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조류 15종을 비롯해 매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양서류 고유종 33종(그 중 희귀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 3종), 포유류 고유종 9종(9종 모두 희귀해서 멸종위기에 처함), 멸종취약종 민물고기 4종; 야생과일나무 8종, 염료로 쓰이는 식물(dyes) 9종, 약용식물 41종 조각재료로 쓰이는 식물 5종.

지표종:

포유류:	푸두 (Pudu, <i>Pudu pudu</i>) 우일린(Huillin, <i>Lutra provocax</i>) 귀냐(Guiña, <i>Felis guigna</i>) 조로 데 칠로에(Zorro de Chiloé, <i>Pseudalopex fulvipes</i>) 모니토 델 몬테(Monito del monte, <i>Dromiciops australis</i>) 코마드레히타 트롬푸다(Comadreja trompuda, <i>Rhyncholestes raphanurus</i>) 라니타 데 다윈(Ranita de Darwin, <i>Rhinoderma darwini</i>)
조류:	디누카 데 칠로에(Diuca de Chiloé, <i>Diuca diuca chiloensis</i>) 라야디토 데 칠로에(Rayadito de Chiloé, <i>Aphrastura spinicauda fulva</i>)
나무:	시프레스(Ciprés, <i>Pilgerodendron uviferum</i>) 알레르세(Alerce, <i>Fitzroya cupresoides</i>)
관목:	무르타(Murta, <i>Ugni molinae turcz</i>) 칼라파테(Calafate, <i>Berberis buxifolia</i>) 미카이(Michay, <i>Berberis darwinii</i>)
초본:	브로모(Bromo, <i>Bromus catarticus</i>) <i>Hidrocotyle marchantioides</i>

생태계 기능:

들판의 관목과 인접한 숲이 식물의 수분(受粉)을 돕는 곤충을 보호하고 해충을 방제한다.

해초와 깨끗이 씻은 갑오징어를 이용해 토질을 향상시킨다.

인종: 우일리체(Huilliche, 원주민), 메스티제(Mestize)

사회경제적 특징 및 문화적 특징:

생산되는 농작물은 주로 자체적으로 소비되며 일부는 지역 사회에서 유통된다; 농부들은 관광산업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토착 주민인 우일리체 족은 매우 소외되어 있다. 칠로에 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사회이며 토지도 거의 보유하지 못했다.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숲을 침범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다.

메스티제 농부들은 지역 사회에 걸맞은 토착 농업 시스템을 오랜 세월 동안 발전시켜왔고, 경제·사회·문화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현금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남성들이 농업을 버리고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력은 물론이고 남성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식도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여성은 전통 농업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적소 시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재배 농작물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

주요한 충격은 목재산업, 생산량이 높은 작물 도입 및 재배, 연어 양식(수질 오염), 무분별한 관광에서 온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건설해 목재 추출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자는 제안도 있는데 이것 또한 큰 문제다.

관습적 개발 정책의 영향으로 사회와 농업분야 모두에서 수 세대에 걸쳐 형성되어온 칠로에 섬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졌다.

유전자 조작된 종자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칠로에 섬 지역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칠로에 섬의 지속가능성과 식량 안보의 중심에는 토착 종자가 있기 때문이다. 유전공학과 특허를 앞세운 산업적 농업은 칠로에 섬의 토착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의 감자를 도입해 농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의 유전자원을 통제한다.

과학자들은 토착 감자 품종이 (냉해, 가뭄, 해충 및 질병에 강하다는 이유로) 토착 품종의 개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지역 사회가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원 상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에는 농민과 소비자들 사이에 토착 감자 품종과 재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화와 구전 전통을 산업이 통제하고 독점하게 되면 칠로에 섬 사람들은 결국 그런 자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젊은이들의 이탈 및 토착 감자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전통이 소실되어가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젊은 계층이 특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우일리체 원주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어디까지인지 공식적으로 기록해두지 않아 모를뿐더러 지역 사회의 개별 구성원 중 누구도 그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땅을 보존해야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방 정부는 우일리체 원주민의

토지를 목재기업이나 관광산업에 팔아넘기거나 임대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과 거기에 결부된 문화적 전통이 소실되고 있다.

시범 시스템 운영상의 주요 장애물과 활동:

이번 사업의 목적은 칠로에 섬이 문화, 전통, 풍부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유한 곳이며 칠로에 다도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교육과 기술 센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첫 번째 활동은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고 인간 자원과 경제 자원을 추가하는 일이다. 다음 활동은 세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지역 사회에 대한 직접 활동 (문화와 토착 생물다양성 교육, 생산기술 전수 교육, 생산기술에 관련된 문화 전수 교육, 교사와 중학생 양성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개최); 생산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 유전 물질의 문화적, 농경제적, 상업적 가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연구개발 센터로서 기능하는 교육과 기술 센터를 강화해 농민에게 다양한 품종의 종자를 제공하고 재배 기술 지원.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홍보(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 토종 품종을 전국에 홍보하고 지역 사회에 정보를 제공해 다도해의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을 보존할 정치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 유도)

■ 필리핀 Ifugao Rice Terraces

국가와 지역명: 필리핀 이푸가오주(Ifugao Province)

프로젝트명: 필리핀의 농업 유산인 이푸가오 계단식 논의 보존과 적응 관리(Conservation and Adaptive Management of the Ifugao Rice Terraces)

신청기관: 자연자원과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위치: 필리핀 코르디레라스(Cordilleras)의 계단식 논(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s))

농업유산 시스템 면적: 68,416 ha

재배 농작물 및 동물:

청주를 빗을 수 있는 고품질의 전통 쌀 품종(고유종 4종);

논에 서식하는 미꾸라지(mudfish), 복족류(snails), 새우류(shrimps), 개구리(frogs)
- 일부는 고유종;

개인이 소유한 숲(이 지역 말로는 “무용(muyong)”이라 부름)에 다양한 생물 서식(264종, 대부분 토종, 고유종 47종), 나무 171종(그 중 112종을 활용), 등나무(climbing rattan) 10종, 약용식물 45종, 살충제로 쓰이는 식물 20종.

기타 동식물:

농생태계에 깃들여 사는 조류 41종, 토착 포유류 6종(유익한 쥐(rats) 6종 포함), 고유종 파충류 2종

지표종:

어류:	장어(Eel, <i>Anguilla</i> spp., <i>Pisodonopsis</i> spp.)
양서류:	나사(裸蛇, <i>Ichthyophiidae</i>) 두꺼비과(<i>Bufo</i> idae) 개구리과(<i>Rana</i> idae) 무당개구리과(<i>Discoglossidae</i>)
파충류:	비단뱀(<i>Python</i> , <i>Python reticulatus</i>)

	필리핀 코브라(Philippine Cobra, <i>Naja philippinensis</i>) 필리핀 크로커다일(Philippine crocodile, <i>Crocodylus mindorensis</i>)
저류:	Flame-breasted fruit 비둘기(Flame-breasted fruit dove, <i>Ptilinopus marchei</i>) 칼라우(Kalaw)/ 필리핀 코뿔새(Philippine hornbill, <i>Buceros hydrocorax</i>)
포유류:	야생 사슴(Wild deer, <i>Cervus marianus</i> , <i>Cervus</i> sp.) 야생돼지(Wild pigs/boar, <i>Sus philippinensis</i> , <i>Sus celebensis</i>) Striped shrew 쥐(<i>Chrotomys mindorensis</i>) Forest wild 쥐(<i>Rattus everetti</i>)

생태계 기능:

개인 소유 숲 또는 “무용(muyong)”이 부족의 노력으로 다닥다닥 붙어 조성된 한 무리의 계단식 논 머리에 올라앉아 있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무용은 식량, 약초, 땀감목재, 건축목재, 조각용 목재를 제공하고 식물의 수분(受粉)을 돕는 곤충과 포식자의 서식처가 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무용은 계단식 논에 물을 대는 일차적 물 저장고다. 계단식 논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계단식 논에서 재배되는 벼의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한다. 계단식 논이 빗물을 가두어주기 때문에 계단식 논이 없었다면 홍수가 나고 그로 인해 손실되었을 토양이 보존된다. 논은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으로도 기능하며 논 아래 위치한 마을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한다. 계단식 논에서 흘러내린 물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댐 중 하나인 마가트 댐(Magat Dam)으로 흘러 들어가 모이게 되고 마가트 댐은 센트럴 루존(Central Luzon) 인근 저지대에 관개용수를 제공한다.

인종: 이푸가오족(Ifugao, 다양한 방언을 사용함)

사회경제적 특징 및 문화적 특징:

이푸가오주 인구의 72%는 일차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과 임업 활동 대부분이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고 일부는 지역 시장에 유통된다. 현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량이 많은 작물, 단기간 재배가 가능한 계절 채소, 숲 플랜테이션으로 재배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푸가오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푸가오족은 소득 증대의 필요성이 늘어나자 숲에 바나나, 커피, 감귤 같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간작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고유한 수자원 활용 체계에 해를 입히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다.

고대의 농업 관리 시스템은 환경 및 문화와 맞물려 있었다. 문화는 자연 자원의 경계와 관리, 경제 활동의 범위를 규정했다. 추수, 청주 생산, 종교 제의의 시기는 자연과 환경에 조화를 이뤘다. 독특한 경관은 계단식 논을 일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자연 사이의 강력한 연계를 보존, 관리한 덕분이다. 경관, 벼 재배, 벼 추수는 자연과 문화를 결합시키는 현상이다. 계단식 논이 경관은 계단식 논이 자리잡은 지역의 문화적 경관이라는 맥락을 고려한 총체적인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전통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구전으로 전수되고 코르딜레라스 전역에 분포한 계단식 논을 유지하는 방법 역시 세대에서 세대로 구전으로 전수된다. 그러므로 계단식 논 역사는 주민, 문화, 신앙, 종교 제의, 전통적인 환경 및 농업관리법이 어우러진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재배 농작물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

이푸가오 계단식 논 농업유산 시스템은 총체적 농업시스템의 대표 모델이다. 이푸가오 주민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농생태계를 유지해 왔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상 깊은 계단식 논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며 장관을 이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올랐다.

이푸가오 계단식 논이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뒤에는 관광 산업이 발전했지만 농민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오히려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오르고 5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계단식 논이 모여 있는 5개 무리 중 2개의 무리가 도시화의 압력, 다른 경작지로의 전환, 인구 압력 등으로 인해 세계유산목록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변화는 계단식 논의 미래를 위협한다. 이런 변화는 소규모 단위로 물을 대는 계단식 논 전반적인 물관리 체계를 바꿔놓아 전체적인 물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계단식 논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농업시스템을 악화시킨다.

국가 식량안보 프로그램이 이 지역의 농업을 전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이푸가오 계단식 논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관개 운하 조성, 무리를 이루는 계단식 논 중 일부 포기, 토지이용계획 변경 같은 근대적 기술의 도입은 물이용 시스템의 단절을 낳고 계단식 논 토양의 물 포화도를 불균등하게 만든다. 물의 불균형이 나타나자마자 지렁이 같은 토양 생물의 자연 서식지가 영향을 받았고 (유기물이 더 많은 논 같이) 적합한 서식처를

찾아 지렁이가 이 논 저 논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렁이의 이주는 계단식 논 벽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벽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며 결국에는 논이 못쓰게 되어버린다.

비전통적 목적에 입각해 제례 절차에 대한 투자 감소, 시장 세력, 도시화, 특히 젊은이의 이주 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푸가오 젊은이 대부분이 전통적 생활 방식, 문화, 종교, 제례, 성스러운 전통을 점차 버리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이푸가오 젊은이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 일자리를 얻어 더 높은 소득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이푸가오 지역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는 형편이다.

균형 잡힌 생태계와 이푸가오의 문화유산인 계단식 논 시스템의 생명력은 근원부터 위협받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계단식 논 일부는 주거지로 바뀌어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숲인 무용도 주거 목적과 조각용 목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 벌목되고 말 것이다. 이런 토지의 용도 전환은 숲의 나무를 모두 밀어버려 계단식 논 시스템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런 행위는 물보존 시스템과 생물다양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게 될 것이다.

시범 시스템 운영상의 주요 장애물과 활동:

사업의 일반적인 목적은 농업유산 시스템, 농업 부문 생물다양성, 주변 경관을 보존하고 계단식 논 및 기타 농업유산 시스템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농산물과 기능을 증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토지와 물 보존, 자연 경관 복원 및 보존 촉진;
-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소유권 문제 및 계단식 논과 기타 세계중요 농업유산 시스템 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 쟁점 해결;
-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적응 관리에 대한 장단기 지원 제도 구축;
- 교육, 환경, 농업, 가치 재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제도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전통농업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회단체 구축;
- 생태적소의 -농업 관광 산업 개발;
- 적소 시장 및 시장 시스템 개발;
-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의 생물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기반하고 거기에 걸맞은 대안적 생활/경제 활동 촉진 및 개발;
-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이 정부 정책 의제로 채택되도록 노력;

- 필리핀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지명, 규명, 마크제정, 감독관리에 관한 정부의 지침 개발.

프로젝트 활동:

계단식 논 시스템, 생물다양성, 주변 경관을 역동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1. 토지 및 물 향상

- 토지사용기간 연장
- 관개 시스템 재구축
- 무너진 계단식 논 복원

2. 분수령 관리

- 분수령 재구축 (재조림, 식목, 묘목장 개발)
- 소규모 못/저수지 건설
- 공동 관개 시스템 적용
- 공동 토지 이용 구역 지정

3. 지역 사회를 바탕으로 한 자연자원 관리

- 유기농
- 계단식 농업 재도입
- 무양 활성화와 작물 다양화/혼농임업
- 지역 사회를 바탕으로 한 기존 단체(민중의 조직(People's Organization)과 농민협회(Farmer's Association)) 활성화

4.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존

- 멸종위기에 처한 종 포획 및 사육
- 보호구역 규정/기술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 국가통합보호구역시스템(NIPAS) 및 원주민보호법(IPRA) 58절)
- 지역 사회를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 사업 계획 개발
- 약용식물 및 기타 경제성 있는 식물 임상 시험/기록

5. 지속가능성 유지 활동으로부터 소득 창출

6. 자원 동원 및 제도화

7.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농산업 개발

- 상품 개발 및 적소 시장 개발
- 유기농업과 생산성 향상

8.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 적소의 생태-농업-관광 개발

9. 사회서비스 확충 및 개발
10. 문화적 기초 부활
11. 토착 지식 관리

■ 중국 Rice-fish Agriculture

국가와 지역명: 중국 저장성(Zhejiang province) 칭토펬현(Qingtian county)

프로젝트명: “중국의 물고기 농법 보존과 적응 관리(Conservation and adaptive management of rice-fish culture in China)”

신청기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하 국제협동조합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중국 과학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Sciences) 산하 자연문화유산센터(Center for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칭토펬현 정부

위치: 롱시안 마을(Longxian village)

농업유산 시스템 면적: 461 ha

재배 농작물 및 동물:

논(토착 쌀 품종 20종-대부분 멸종위기), 텃밭, 가축/가금류 사육;

나무와 들판 관목;

다양한 토착 채소와 과일(연근(lotus roots), 콩류 beans), 토란(taro), 가지(eggplant), 중국 자두(Chinese plum, *Prunus simoni*), 뽕나무(mulberry) 포함); 토착 잉어6종

기타 동식물:

논에 서식하는 어류, 양서류, 복족류 5종;

들 경계에서 자라는 야생 채소 7종;

숲에 서식하는 62종(그 중 21종은 인간이 섭취);

약용식물 53종;

물개구리밥 (*Azolla* ssp).

지표종:

논에 서식하는 야생 물고기(학명 불명):

야생 및 재배 녹나무(Camphor tree, *Cinnamomum camphora*)

생태계 기능:

- (물의 70%를 머금고 있는) 숲의 통합적 이용, 영양분 순환을 위한 물고기 상호작용 관리, 해충 통제, 유기폐기물로부터 질 좋은 단백질 생산;
- 물개구리밥(*Azolla*) 4종을 활용해 질소를 고정하고 물고기 먹이가 되는 단백질 확보;
- 들판의 나무와 관목을 해충 통제에 활용(해충제의 역할을 하거나 이로써 곤충의 보금자리가 됨)

인종: 한족(Han, 전통민족)

사회경제적 특징 및 문화적 특징:

룽시안 마을의 주요 농업생산물은 쌀, 물고기, 차다. 마을 주민 한 사람이 가진 농지는 평균 0.44헥타르에 불과하지만 각 농민은 벼를 재배하고 벼를 재배하는 논에 물고기를 기른다. 농업 외의 활동으로는 석각(石刻, stone carving)과 관광산업이 있는데 마을 농민이 생계에 보탬이 된다.

서양으로 이민간 마을 주민들이 송금해주는 외화가 높아져가는 현금 수요를 충족해주고 있다.

재배 농작물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

중국에서 물고기 농법을 활용하는 지역은 1959년 667,000ha에서 1986년 985,000ha, 그리고 2000년 1,532,000ha로 증가해오다가 2002년 1,480,000ha로 줄어들었다. 물고기 농법 시스템은 생산성이 높은 단일 논농사와 단일 물고기 양식 시스템의 확장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시스템의 논에서 길러지는 벼와 양식장에서 길러지는 물고기는 화학물질에 크게 의존한다(벼는 해충제, 물고기는 항생제).

식품 안전, 생태적 기능, 환경 보존은 심각하게 저평가되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벼 재배농민은 해충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순환시키기 위해 물고기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 집약적 물고기 양식은 대량으로 물고기를 생산해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지만 환경비용은 모두 외부화 된다. 지난 20년 간 중국의 물고기 생산량은 8.7배 증가했지만 물고기 값은 4.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논에서 벼만 기르는 것에 비해 벼와 물고기를 함께 기르는 매력성이 줄어들었다.

물고기 농법을 관리하려면 벼만 재배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마을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장서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2년 물고기 농법을 도입한 농민의 절반이 2003년에는 물고기 농업 대신 벼만 심거나 다른 단일 작물 재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민은 논을 갈아엎어 물고기 양식장을 만들 수 있다면 물고기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물고기 농법을 활용하는 일부 농민은 논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보다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오는 것이 낫다고 응답했다. 물고기 농법에 들어가는 추가 노동력은 물고기 농법으로 얻을 수 있는 물고기 값에 맞먹는다. 물고기가 시장에 내다팔 수 있을만한 크기로 자라려면 추수가 끝난 뒤에도 논에 물을 대 물고기를 길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 토지와 노동력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중국 농촌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게 된다.

벼만 재배하거나 물고기만 양식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탓에 통합 물고기 농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단일농업의 비용 감소는 생산량이 높은 품종을 도입하고 화학물질을 잔뜩 투입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물고기 농법을 채택해도 얻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고기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 벼만 심는 단일재배지역 농민은 모를 낸 뒤에는 논에 자주 나갈 필요가 없다. 제초제를 사용해서 잡초를 관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달 동안 농촌을 떠났다가 추수 때 돌아와 추수만 하면 된다. 벼를 단일재배해서 얻는 소득이 높고 농촌을 떠나 있는 몇 달 동안 도시로 나가 노동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은 물고기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물고기 농법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고기와 벼 선정, 벼와 물고기의 밀도 관리, 질병 통제, 물고기 먹이기 등이 필수적인 관리에 속한다. 마을의 그런데 젊은이들은 도시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물고기 농법에 관련된 기술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근대적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나 화학 살충제등이 전통 농업에서 사용하던 유기물질을 대체하면서 물고기 농법 환경을 저하시키고 있다. 근대 농업에서 사용하는 벼 품종이나 물고기 품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통 품종을 대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이 환경친화적인 농사 기술인 물고기 농법을 지속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농촌지도소는 특히 가난한 지역을 중심으로 물고기 농법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를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목표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민의 관심사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의 목적과 활동:

이 사업의 목적은 물고기 농법을 활용하는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 기술 발전을 평가하고 저장성 내에서 협력자를 찾고 홍보망을 구축해, 생계에 도움이 되며 생태와 문화를 보존하는 물고기 농법의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촉진하고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전통적인 물고기 농법의 변화 패턴 기록;
- 물고기 농법을 활용하는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 기술을 평가하고 벵농사나 물고기 양식 진흥에 특화된 정책, 제도, 기술이 무엇인지 규명;
- 지역 사회, 정부, CSO, 기타 협력자 사이에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표 마을 조성;
- 사회경제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를 규명, 홍보하고 물고기 시스템이 식품 안전, 농업생태학, 생태관광, 생태계 보존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 규명;
- 지역 사회, 지방정부, CSO, 기타 협력자가 참여해 물고기 농법을 보존하는 네트워크 구성;
-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적응 보존 사업을 지원할 중국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제도 구축;
- 중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 지명, 규명, 마크제정, 감독관리에 관한 정부의 지침 개발.

■ 알제리 Ghout System 튀니지 Gafsa System

국가와 지역명:

알제리: 므잡(Mزاب), 가르다이아(Ghardaïa)

튀니지: 가프사(Gafsa)

프로젝트명: “생물이 모여 살아가는 마그레브의 대추야자 오아시스(Date palm oases of the Maghreb: bio-intensive bounded landscapes)”

알제리: “베니-이스구엔 오아시스의 생태계 및 생활권 복원(Rehabilitation of ecosystem and livelihood functions in the Oases Béni-Isguen)”

튀니지: “가프사 오아시스의 역사와 농업의 가치 평가 및 보존(Assessing and conserving the value of the historic-agricultural landscape of the Gafsa Oases)”

활성화 담당 기관: 국제 생물다양성(Bioversity International)

위치:

알제리: 베니-이스구엔 오아시스(Béni-Isguen oases)

튀니지: 가프사 오아시스(Gafsa oases)

농업유산 시스템 면적:

알제리: 500 ha

튀니지: 700 ha

재배 농작물 및 동물:

대추야자 품종: 알제리(100품종), 튀니지(50품종).

다양한 과일(석류(pomegranates), 무화과(figs), 올리브(olives), 살구(apricots), 복숭아(peaches), 사과(apples), 포도(grapes), 감귤(citrus) 등), 곡류(cereals), 채소류(vegetables), 향신료(spices), 약용식물(medicinal species), 사료용 작물, 관상용 작물

기타 동식물:

철새(Migratory birds), 가젤(Gazelle, *Gazella cuvieri*), 아프리카 여우(Fennec, (*Vulpes zerda*))

지표종:

가젤(Gazelle, *Gazella cuvieri*)
아프리카 여우(Fennec, *Vulpes zerda*)

생태계 기능:

세 종류의 식물 생태계(대추야자; 관목과 과일 나무; 작물)는 물 보존과 미기후(微氣候) 규제에 적합한 조건을 조성한다.

중 내/중 간 상호작용 관리를 통해 해충을 방제하고 질병을 통제하며 물 안의 영양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양 저하를 줄인다.

인종:

알제리: 베르베르족(Berbères, 모자비테 족의 하위 종족(Mozabite sub-group))

튀니지: 베르베르족(Berber), 아랍족(Arabs)

사회경제적 특징 및 문화적 특징:

알제리 : 오아시스에서 나는 농업생산물은 주민들의 주요 영양공급원이자 소득원이고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일차적, 이차적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오아시스에서 나는 농업생산물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소비되며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식량 안보 수준이 높다.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움마(Aoumma) 같은 사회 제도는 오아시스 자원 시스템을 감독, 관리, 유지한다. 이 제도는 관습법 및 사회 생활과 규범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 사회에서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는 아자바스의 할카(Halqa of Azzabas) 위원회에 의해 적법성과 권위를 인정받는다.

튀니지 : 오아시스 주변에 머무는 주민들은 베르베르 원주민의 후예이거나 침략이나 이주를 통해 이곳으로 유입되어 근 천 년에 걸쳐 이 지역에 동화된 사람들이다. (19세기 말) 인산염 채취가 시작된 뒤부터는 리비아 및 알제리에서 인산염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이 대거 이주해왔다.

관개를 통한 대추야자 재배가 오아시스 지역의 주요 생계수단이고 기타 작물과 가축사육이 병행된다. 최근에는 관광산업이나 해외로 이주한 지역 주민들이 보내주는 외화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현금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뤄져오던 물관리 시스템은 물관리를 담당하는 농민협회 (Groupement d'Intérêt Collectif: GIC for water), 농업협동조합(가장 작은 행정단위를 책임지는 옴다(Omda)), 농업기술서비스, 지역 농민연맹이 도맡아 수행하게 되었다. 물관리에 관한 지역 사회 공동의 통합적이고 집합적인 접근방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연 수자원에 대한 접근과 물 사용자 간의 분쟁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가프사 시민들의 음용수 수요 증가로 인해 가프사 오아시스의 관개 시스템이 받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재배 농작물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

일반적으로 마그레브 오아시스는 근대적 관개 농업이 대수층 지하수를 마구 퍼올리는 바람에 발생한 대수층 고갈과 대추야자 수분(受粉)과 물관리를 담당하던 제도 상실, 그에 따른 전문 전통지식의 전수 단절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알제리: 다음과 같은 취약성 때문에 대추야자 오아시스가 위협받고 있다:

- (*Fusarium oxysporum* 곰팡이가 유발하는) 바유드 병(Bayoud disease) 발생율이 높아져 대추야자 고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대추야자 오아시스 인근 지역 인구가 줄어들었고 유전적 다양성도 줄어들어 생태계의 통합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 종자 선별에 관여하는 가족들이 (반드시 저장해야 할) 신선한 종자까지 음식으로 섭취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 가지치기나 식물 수분(受粉)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 또한 큰 위협에 처해 대추야자 다양성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대추야자 품종과 재배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기록 부족(우타크발라(Utaqbala)와 바바티(Babati) 지역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대추야자 품종에 대한 기록조차 없다);
- 대추야자 농장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급속한 도시화;
- 일부 대추야자 농장 포기;
- 토지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과정에서 토지분할이 진행되면서 오아시스 해체;

- 환경오염, 지하수 수위하강, 수로 변경;
- 수자원 및 수로를 유지 관리할 주체나 제도 없음.

튀니지 : 튀니지의 오아시스 지역은 탐그로우트(Tamegroute) 지역과 유사한 생태적, 사회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불어 지방 정부 당국은 기본적으로 오아시스들을 농업생산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프사 오아시스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사업은 오직 보존이라는 제한적인 관점에서만 이뤄지고 이런 관점은 오아시스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 농업 위주의 정책은 생산량 증가에 주안점을 두지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차원에서 오아시스가 직면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시범 시스템 운영상의 주요 장애물과 활동:

알제리 : 사업 목적은 대추야자 오아시스의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서로 다른 통합적 요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고유한 빗물 분배 시스템, 관개 시스템, 지하수 수위, 토지, 동식물 관리 등이 보호 대상에 속한다. 이 사업은 오아시스라는 까다로운 환경에 깃들여 있는 물, 토지, 자연 자원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의 지식과 기술을 지탱하고 새로운 농업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튀니지 : 메디나(시)와 가프사 오아시스의 문화유산 및 오아시스의 생물 다양성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게 보호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농업 활동 및 오아시스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지역 고유의 제도를 재활성화하는 것도 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다. 이 사업의 일반적인 목적은 메디나 및 지속가능한 사회-농업-생태 시스템인 오아시스를 보호해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다양한 대추야자 품종 및 과일나무와 콩과 식물은 오아시스 농업-생태계가 유지해야 할 핵심이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이해관계자와 지역 사회 주민에게 가프사 오아시스가 인류를 위한 문화 유산임을 인식시키고 보호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피부에 와 닿게 만든다.
2. 이해관계자와 지역 사회 주민에게 오아시스의 재활성화가 시급함을 인식시킨다.

3. 이해관계자와 지역 사회 주민에게 가프사의 옛 메디나를 보존하고 재활성화해야 할 시급성에 대해 인식시킨다.
4.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 및 메디나에 있는 기념물을 규명하고 보호하며 경제적 가치를 더한다.
5. 오아시스 주변 및 메디나에 사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활동을 오아시스와 메디나의 개발과 연계시킨다.
6. 오아시스와 메디나의 관광산업을 개발한다.

■ 중국 Hani Rice Terraces

a. 국가와 지역명 : 중화인민공화국 윈난성(Yunnan Province) 위안양현(Yuanyang County), 홍허현(Honghe County), 류춘현(Lvchun County), 진핑현(Jinping County)
b. 농업유산 시스템 명칭 : 하니 계단식 논(Hani Rice Terraces System)
c. 면적: 13011.57 ha
d. 소수 집단 : 하니족(Hani), 이족(Yi)
e. 신청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윈난성 홍허현 인민정부(People's Government)
f. Through NFPI 지리학과 자연자원연구소(Institute of Geographic 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Research), 중국 과학 아카데미 산하 자연과 문화 유산 센터
g. 정부 기관 및 민간 협력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중국 장시성 농업부(Agriculture Department) 중화인민공화국 윈난성 농업부(Agricultural Department) 중화인민공화국 윈난성 홍허현 하니 계단식 논 관리부(Honghe Hani Terrace Administration)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 산하 문화연구센터(Culture Research Center,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윈난성 사회과학연맹(Federation of Social Sciences)
h. 요약 (최대 200단어): 하니 계단식 논은 윈난성 남동부에 있는 홍허 하니족 이족 자치주 (Honghe Hani and Yi Autonomous Prefecture)에 위치해 있다. 하니족이 가장 많다고는 하나 다양한 소수민족이 모여 살면서 주목할만한 농업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일궈왔다. 하니 계단식 논은 1,300여 년 전부터 놀라운 경관을 지닌 이 지역에 정착한 소수민족인 하니족의 기지가 고스란히 담긴 역작이다. 계단식 논은 홍허 아일라오 산(Honghe Ailao Mountain) 남부 위안양현, 홍허현, 류춘현, 진핑현 이렇게 4개 현에 걸쳐 펼쳐져 있다.

면적은 약 70,000 ha이다. 하니 계단식 논은 중국 농민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하니 마을은 산사면에 조성되었는데 마을 위에는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고 마을 바로 아래에는 계단식 논이 자리잡고 있다. 하니 계단식 논에는 저수지가 없는데도 물이 풍부하다는 점이 경이롭다. 숲, 마을, 계단식 논, 강이 하니 계단식 논의 전형적인 생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다. 하니족, 하니족 고유의 농업 기술, 정착지 선택,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하니족의 문화적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져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 사이의 조화를 잘 보여준다.

■ 중국 Wannian Traditional Rice Culture

a. 국가와 지역명 : 중화인민공화국, 장시성(Jiangxi Province), 와니안현(wannian County)
b. 농업유산 시스템 명칭 : 쌀 경작 시스템
c. 면적 : 200 ha
d. 소수 집단: 없음
e. 신청 기관 : 장시성 와니안 카운티 인민정부
f. Through NFPI 지리학과 자연자원연구소, 중국 과학 아카데미 산하 자연과 문화 유산 센터
g. 정부 기관 및 민간 협력 기관 ①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② 중국 장시성 농업부(Agriculture Department)
h. 요약 (최대 200단어) 와니안 전통 쌀은 남북조 시대(North and South Dynasty, 420 AD - 589 AD)에 허치아오 마을(Heqiao village)에서 처음으로 재배한 원형 품종으로 역사가 매우 깊다. 공식명칭은 “위안자오(Wuyuanzao)”지만 일반적으로는 “망구(Manggu)”로 알려져 있다. 이 품종은 허치아오 마을 지역에 정착해 번성해온 고유한 품종으로 허치아오 마을의 물, 토양, 기후 조건에서만 자라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전통 쌀은 봄에 관개를 위한 차가운 물을 필요로 하는데 주변을 에워싼 숲이 토양과 물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변을 에워싼 숲과 논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혼농임업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 품종은 나쁜 토질에도 잘 적응했고 해충에도 강하기 때문에 농민은 화학 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이 조성되었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와니안 원주민은 기억할 수조차 없을 만큼 오래 전부터 전통 벼 경작법과 쌀문화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쌀 문화는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 식습관, 언어로 표현되었으며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부록 3>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고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 2012.1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어업 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이란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식량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제공, 전통문화의 보전, 환경·생태계 유지, 국민정서의 순화, 보건휴양과 학습·체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발현하는 자원을 말한다.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5. "생물다양성"이란 동식물·미생물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생물종·생물유전자·생태계의 다양성을 말한다.
6.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2장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

제3조(지정대상) ①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하 '국가농어업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어촌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어업유산으로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2. 보전·유지·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생물다양성 지역

②국가농어업유산은 일정한 형태가 있는 유형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복합된 것 또는 유형·무형적인 것과 마을·산·강 및 경관이 복합된 것을 하나의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산이 속하는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준) ①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어업유산이 차별성, 역사성 등 고유의 특성을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유산의 지역적·분야별 대표성이 있을 것
 3. 농어업유산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와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자율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을 것
 4. 건전한 미풍양속을 유지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할 것
- ②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①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가중요농어업유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농어업유산 설명서
2. 농어업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농어업유산이 소재하는 지역(행정리를 기준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행정리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리 또는 행정구역 전체) 주민의 1/2이상이 서명한 동의서 또는 주민협의회 위원 2/3이상이 서명한 동의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4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절차)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및 신청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예비조사반을 구성하여 신청한 농어업유산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농어업유산이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7조(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번호 등) ①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번호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을 분리하여 지정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순서대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0호’ 또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0호’ 표시한다.

②국가농어업유산의 명칭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기재한 명칭에 불구하고 지역명칭에 해당 국가농어업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붙여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가 명명한다.

③지역의 명칭은 국가농어업유산이 위치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하되, 신청인이 강·해역이나 마을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제9조(국가농어업유산지정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농어업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어업)유산 지정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한다.

제10조(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취소) ①제7조에 따라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자가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 중 유산의 가치성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 ②제1항제1호에 의해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주민 1/2이상이 서명한 동의서 또는 주민협의회 위원 2/3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의 국가중요(농업·어업)유산 지정취소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취소를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제3항에 따라 국가농어업유산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농어업유산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지정할 수 없다.

제3장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제11조(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설치) ①이 기준에 따른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장

- 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농어업 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
2.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국가농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4.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절차·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14조(심의절차) ① 위원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안전을 일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안전이 없을 때에는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국가농어업유산 선정심의와 관련해서 신청 유산의 적합성 및 이의신청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유산지정 심의대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유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유산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유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조사대상 지역 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해당 유산의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소집되어 활동 중인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국가농어업유산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업무협조) 위원장은 농어업 유산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농어업유산의 관리

제19조(국가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국가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농어업유산의 보전·활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둔 보전·관리방안
2. 농어촌의 활성화와 다원적자원의 가치 증진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용방안
3.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원투자방안
4. 국가농어업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협의회와의 협력방안

제21조(국가농어업유산 관리주체) ①국가농어업유산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포함된 주민협의회가 관리한다. 다만, 유산의 특성상 자율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관련 학회, 기관, 단체 등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회가 관리할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주민협회 사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여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유산의 복원 및 수리)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농어업유산을 복원·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소유자가 있을 경우)와 주민협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국가농어업유산의 복원 및 수리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유산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유산은 일률적인 복원·수리를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새로운 재료·부재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4. 유산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과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유산의 활용)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농어촌의 활성화 또는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농어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유산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유산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농어업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2.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멸실시키지 말 것
3. 국가 및 지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것
4. 소유자와 주민협의회의 동의가 있을 것

제24조(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현상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국가농어업유산의 실태조사) ①국가농어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국가농어업유산의 구조적 안정성 및 훼손여부
2. 국가농어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환경 등 주변의 변화상태
3.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의 상태
4. 기타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26조(조사결과 조치) ①시장·군수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소유자와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국가농어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

②시장·군수는 국가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현상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과 심의위원회·조사위원회의 조사·운영비용 및 국가농어업유산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국가농어업유산 관리 기록) 시장·군수는 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현황, 조사결과, 복원 및 수리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5호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제29조(신청대상) 국가농어업유산 중에서 세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사전신청절차) ①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국가농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세계중요농업유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국가농어업유산 설명서(FAO 등재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2.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해당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조사보고서
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계획서

②제1항제2호에서 정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한 평가결과
2. 해당 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 결과
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
4.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시의 경제·문화·사회적 효과
5. 기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 등은 자료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완 요청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심의절차)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심의위원회에서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심의신청 자료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2조(신청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보급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제공
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전파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상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자료수집
2. 해당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연구
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제반자료 작성 및 보완
4. 기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등재신청)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국가농어업유산에 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국가농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

전·활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85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시·군	유산자원 명칭	배점 결과							
		계	유산의 가치성			파트너십		효과성	
			역사성	대표성	특징	협력도	참여도	브랜드	활성화

<주요 항목별 세부 배점>

구 분	항목(배점)	내 용
유산의 가치성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 이상 전부터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경관(어메니티)이 수려하여 관광·휴양 상품성이 있을 것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해당되는 1~2 항목)에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이 있을 것 - 공동체의 농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 토지·수자원이용 형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파트너십	협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활동 및 참여가 있을 것
효과성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특징적인 작물이 서식할 것

< 참고 >

농어업유산 설명서

1. 농어업유산의 명칭(제목) :

2. 농어업유산의 주소 및 위치

- 위치 : 도 시·군 면 리 외 개리
- 신청대상지 위치도(1/50,000~1/25,000 지형도 등에 표시하며 A3로 작성)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대상지 위치도

* 지형도내에 해당 신청대상지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3. 농어업유산 관련 마을 및 조직

○ 인구 및 가구 현황

행정리별	인구 수(명)	가구 수(호)	농어업유산 소유자 수(명)
계			
○○면 ○○리			
○○면 △△리			

○ 농어업유산의 지역별 면적

행정리별	면 적 (km ² / ha)				
	계	답	전	임야	기타
계					
○○면 ○○리					
○○면 △△리					

4. 농어업유산 지정신청 배경

◦ 농어업 유산으로 신청한 이유 및 목적 기술

* 대상지의 현저한 특징, 역사성, 유산의 대표성, 주민과의 협의 여부(주민설명 실시 등) 등을 간략히 반페이지 정도로 작성

5. 농어업유산에 대한 설명

구 분	기 준	내 용
유산 가치	현저한 특징	
	역사성	
	대표성	
파트너십	협력가능성	
	주민참여성	
지정효과	브랜드 가치향상	
	주민의 소득향상	
	생물다양성 향상	

6. 신청대상지 전경사진



7. 기타 참고 및 증빙자료

연구 참여자

목 차	소 속	참여자	비고
1장 서론	농어촌연구원 (사)도시환경연구센터	박윤희 윤원근	
2장 농어업유산의 개념정립과 의의	(사)도시환경연구센터	최식인	
3장 농어업유산의 실태조사 및 분석	(사)도시환경연구센터	김진경	
4장 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설정 및 적용	(사)도시환경연구센터	윤원근	
5장 세계중요농업유산 해외사례 분석	(사)도시환경연구센터	유학열 이영옥	
6장 농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방안	(사)도시환경연구센터	황길식	
7장 결론 및 정책제언	농어촌연구원 (사)도시환경연구센터	박윤희 윤원근	
부록	(사)도시환경연구센터 농어촌연구원	유학열 이영옥 박윤희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농어촌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발 행	2012. 12
발행인	정 해 창
발행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0 - 1611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